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1993. 12

白 永 玉(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현재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함께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단계」인 統一國家를 성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韓半島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交流와 協力을 증진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아 통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화나 편지 한 통조차 나눌 수 없는 冷戰的 현실에서 남북한의 교류·협력문제를 풀어 나가는 동시에 민족 同質性을 회복하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海外僑胞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海外僑胞는 남북한간의 높은 불신의 벽과 敵對感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해외교포들은 분단된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잃어버렸던 민족의 同質性과 傳統을 오히려 남북한의 주민들보다 잘 보존하고 있어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그동안의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영과 번영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포정책의 基本的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통일환경조성에 중요한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現況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남북한 僑胞政策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僑胞社會의 現況

1992년 12월 31일 현재 해외교포는 139개국에 4,702,422명이 있으며 이중 95.1%인 4,478,334명이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다. 이중 40.8%가 중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에 30.2%, 일본에 14.4%의 교민이 살고 있다.

1. 國家別 現況

가. 美國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노동이민에서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이민은 1965년 미국의 移民法 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1965년 이후 미국에 이주해 간 韓人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

벽으로 주유소·세탁소·잡화점 등 勞動集約的인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대부분 LA·뉴욕 등 대도시에 정착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사회 속에 동화되지 못한 채 한인사회를 이룩하여 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미국 전역에 약 142만명의 僑胞가 살고 있으며 교포사회의 주요 현안으로는 ① 한인 업종구조 개편문제 ②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문제 ③ 2세 교육문제 ④ 한·흑갈등 등을 들 수 있다.

나. 日本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농토를 잃어 이주했거나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로 1945년 일본의 패망시에는 재일 조선인의 수가 235만명(전 일본인 7,200만의 3.28%)에 달했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귀환지연 등으로 일본에 잔류하게 된 한인들을 중심으로 재일교포사회가 형성되었다.

1992년 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의 총 수는 679,743 명이며 주요 현안으로는 ① 북한·일본 수교가 재일교포사회에 미칠 영향 ②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문제 ③ 同化問題 ④ 민족 교육문제 ⑤ 법적 지위 개선문제 ⑥ 전후 보상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다. 中國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토지약탈과 이민정책에 따라 농토를 빼앗긴 韓人 農民들 중 많은 수가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抗日鬪士들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단체를 조직한 뒤 군사학교를 세워 항일투사를 양성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동북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二重國籍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9.18사변 후 중국의 동북 지역은 완전히 日帝의 植民地가 되었으며 일제는 중국 침략과 만주건설을 위하여 많은 조선인을 만주에 집단 이주시켰다. 그뒤 일본이 패망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생계대책, 38선에 의한 분단 등으로 귀국이 중단된 잔류 조선인 150만명이 東北 3省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중교포사회의 主要 懸案으로 ① 在中僑胞의 한국방문 및 불법체류문제 ② 중국교포사회의 解體 問題 ③ 경제발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라. 獨立國家聯合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1860년 「북경조약」체결 이후 시작되었으며 1884년 朝·露국교가 수립되면서 한인의 이주는 계속 늘어났다. 1910년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韓人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22년 12월 30일 연해주가 소연방에 포함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에트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소비에트와 지역소비에트가 구성되자 한인 대부분이 시민권을 얻는 등 이에 적응해 나갔으나 1937년 金在蘇 한인교포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러한 강제이주 조치의 결과로 조국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타민족 속에 극소수의 민족으로 교포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1954년까지는 이주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뒤 1991년 구소련 해체 후의 각국의 정치·사회·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일부 지역에선 민족분규까지 일자 교포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사할린에는 일제에 징용으로 끌려와 남겨진 약 5만명의 한인들로 교포사회가 형성되었다.

독립국가연합지역 교포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① 자치주 설치 문제 ② 연해주 한국공단 설립 ③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 ④ 민족간 분규 등을 들 수 있다.

第Ⅲ章 南北韓의 僑胞政策 比較 및 評價

1. 南韓의 僑胞政策

정부는 무엇보다도 해외교포들이 居住國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한 다음 母國의 국익신장과

전통문화보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포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취한 교포정책은 (1) 교포의 거주국에서의 社會的 地位向上 支援 (2) 僑胞의 한민족성 유지 및 본국과의 紐帶強化를 위한 교육·문화 지원 (3) 교포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의 法的·制度的 改善 推進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남한의 교포정책은 북한의 교포정책과의 競爭關係 속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북한의 공세적인 교포정책에 맞서 비교적 守勢的이고 소극적인 교포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해외교포 업무가 12개 이상의 소관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소기의 국가 목적에 따른 종합적이며 일관성있는 僑胞政策의 수립과 기획 및 행정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교포들이 본국과의 관계나 현지적응 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교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海外移住를 장려하고 이주자들의 출국시까지의 수속절차상으로 간여하고 있지만, 일단 출국한 이후에는 이들의 보호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支援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北韓의 僑胞政策

북한의 교포정책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

3대 외교목표, 곧 남한혁명역량·북한혁명역량·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해외동포 사회가 橋梁的 手段으로서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크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에서 해외동포들을 그들의 공민으로 규정하는 등 정책을 세우고 이들을 親北勢力으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외형적으로 민족을 표방하면서 교포조직을 친북세력으로引入, 결속시켜 적화혁명의 지원역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포정책을 남한정부의 교포정책과 비교해 볼 때, 남한에 앞서 교포사회를 포용하는 듯한 僑胞政策을 내세우고 해외 교포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현지 교포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대남전략적 차원에서 입안·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第Ⅳ章 한민족공동체 形成과 僑胞政策

1. 基本政策

「한민족공동체」의 기본 정신은 세계의 모든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역사적·문화적 전통, 특히 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란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이민자들을 해외로의 도피자 내지는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짐스런 존재로 보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

나 우리의 民族的 力量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포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지에서 존경받는 시민을 육성한다는 점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正體感을 갖고 민족공동체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포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한민족으로서의 正體感 形成을 위한 僑胞政策

그동안 우리 정부의 교포정책은 민족 동질성 유지 문제보다는 현지 주민들과의 조화로운 삶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僑胞 育成에 교민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교포사회가 교포 2·3세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포 2세의 경우 거주국에 동화됨에 따라 모국과의 連帶性이 희박해지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등한시해 온 교포들의 同化(Assimilability)문제나 민족 동질성(Ethnic identity)유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1) 限時的인 特別委員會 設置 運營

1980년에 147만명에 불과했던 在外國民 數가 1993년에는 5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國內 人口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종합적인 교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海外 韓民族 人權委員會」構成 支援

해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해외교포들의 권익옹호 및 민족복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포들이 제의한 「해외 한민족 인권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주고 각국의 법률가, 지식인, 언론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동포들의 法的 地位向上과 권익옹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僑胞問題 全擔 政府機構(假稱 僑民廳)의 設立

현행 정부 조직법상 교포 행정의 업무와 기능이 12개 이상의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며 일관성있는 僑民 政策의 수립·기획 및 행정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僑胞社會가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정부 기능의 다원성과 비능률성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교포들의 現地 適應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과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4) 名譽市民證制度 導入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동포들에게 二重國籍

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美洲僑胞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어 전교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교포의 해외이주는 세계 이민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의 대이동으로 교포 수에서는 넷째이고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이중국적 소유자가 기회주의자로 치부되거나 국제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두통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불허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장기적 발전에 어떤 정책이 더 유리한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포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名譽市民證制度를 고려할 수 있다.

(5) 民族同質性 守護를 위한 教育政策

앞으로의 재외국민 교육은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역사관과 민족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현지사회에 접목시켜 한민족의 文化空間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傳統文化의 繼承과 保存政策

한민족으로서의 문화공간의 확대와 생존공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多民族社會에서 한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 고유문화의 전통을 살리며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文化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

(7) 「海外僑胞의 날」制定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海外移民을 송출하기 위해 綏民院을 세웠던 8월 30일을 「해외교포의 날」로 제정하여 해외교포 문예작품 공모전, 해외교포 예술제 등 각종 기념행사와 합리적인 정부의 포상제도에 따른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교포들의 祖國愛를 고취시키는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겠다.

(8) 海外僑胞會館 設立

교포와 모국과의 실질적인 紐帶강화를 위해 해외교포회관을 설립, 母國訪問이 용이치 않았던 교포들의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 교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모국의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와 연계, 모국 상품과 교포상품 상설전시장을 개설하여 상품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나. 「3段階 3基調」統一政策 支援을 위한 僑胞政策

남북한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하여 「3단계 3기조」統一政策 支援을 겨냥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속에서 살아온 교포 사회의 단합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平和統一을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환

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和解·協力段階

동서냉전체제의 종식, 한·중, 한·독립국가연합 수교 등에 의해 교포사회의 理念對立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신정부의 3단계 통일구도는 화해·협력단계를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화해·협력단계에서의 교포정책은 북한의 改革·開放을 촉진시키고 각 분야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교포들을 활용하고 교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南北聯合段階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단계로서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남북한간의 直接交流가 활성화되는 시기이므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해외 교포들도 사안별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학술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화해·협력단계에서는 海外僑胞들이 주최가 되어 남북한을 초대한다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된 각종 행사에 교포들이 참석하여 함께 민족의 同質性 回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중국·독립국가연합

의 교포 경제인들은 북한 국영기업의 공영화 및 사유화에 대하여 政策諮問을 할 수 있고, 美·日의 교포기업들은 남한의 기업들과 함께 북한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여 상품시장 개척에 일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빈부격차 등 社會問題,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등 남북한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교포들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3) 統一國家段階

통일후 사회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교포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同質性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소외감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의 再社會化 경험을 활용하여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교포 統一基金을 활용하여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펴고 교포 기업인들의 모국 人力 送出을 적극 지원한다. 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 출신 교포들의 출신지역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자본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에 僑胞 人力을 활용한다.

다. 民族의 未來를 위한 僑胞政策

21세기 민족공영을 위하여 모국과의 실질적인 紐帶를 강화하고, 해외교포들의 권익옹호 및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능동적·종합적·미래지향적인 방향과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僑胞政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僑胞들과의 役割分擔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교포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僑胞政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 후 남북한 인구 부양과 經濟成長을 위해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늘어날 것이므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移民政策을 펴야 하며 한민족공동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국의 해외교포들이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단일 조직과 複合經營戰略을 추진하여야 한다.

(2) 經濟分野에서 本國과의 紐帶強化

냉전체제 붕괴와 공산권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중국 東北 3省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과 일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기초로 이

지역에 걸친 經濟共同體(코리안 벨트)를 형성하는 노력과, 시장개척에서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포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특히 중국의 동북부지역의 僑胞들을 활용, 연해주의 나훗카 지역과 중·소 국경지대인 훈춘 아래 크나스키 일대에 적극 진출하여 한민족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블럭 구축을 추진한다.

(3) 韓民族 高速情報通信網(Information Super Highway) 建設

민족의 과학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고속 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 사업이 관계기관, 본국학자, 해외 한국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한국과학자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Network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동포 과학자들간에 학술대회 등을 통한 활발한 情報交換 通路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각국이 자신들의 과학기술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교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 산업적 적용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교환하는 등 情報通信網을 건설하는데 교포과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4) 周邊 4個國의 僑胞指導者 育成

해외 교포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법률, 언론, 정치를 연구·분석함은 물론 2세 법률, 언론, 정치지망생과 관계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워크숍 개최 및 본국의 민간단체들과 연계된 研修 등을 통하여 역량있는 指導者로 기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2. 國家別 僑胞政策

가. 美國

재미교포는 통일환경 조성과 민족번영에 중대한 역할을 할 潛在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체계적 지원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 (1) 素養教育 보완·실시
- (2) 위기센터 마련 등 自救策 支援
- (3) 二重言語 教師와 教育행정 전문가 양성
- (4) 韓人 業種의 구조개편 지원
- (5) 한민족봉사단 결성 지원
- (6) 韓人教授들의 연계활동 지원
- (7) 교포밀집지역에 韓國學 講座 支援
- (8) 기술·정보·미국정책 관련 僑胞 專門家 養成 對策

나. 日本

재일 교포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등 정치적 제요인으로 인하여 民團과 朝總聯으로 분열·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민족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북한간의 수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북한 수교가 재일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총련계 교포의 수용 등을 포함한 기존의 僑胞政策을 재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 (1) 日·北韓 修交에 대비한 교포정책 재조정
- (2) 민단과 조총련의 統合 支援
- (3) 民族差別에 대한 공동대처 지원
- (4) 소수민족 教育權 確保를 위한 대책 강구
- (5) 僑胞社會의 團합을 촉진시키는 각종 행사나 조직구성 지원
- (6) 한국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포활용방안 강구

다. 中國

在中 韓人社會 특히 연변을 비롯한 한인 집중 거주지역이 한민족공동체로서 계속 건전하게 발전·유지되어가는 것은 한민족의 生存空間이나 文化空間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재중 한인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적

극 추진하여 재중 한인사회와 한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킬 경우, 이는 재중한인사회 경제발전 전략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남한 經濟進出의 유력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東北亞 經濟圈 형성에서 한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거주지역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개혁과 적극적 개방정책에 의해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할 경우, 이것은 북한사회 변혁에도 중대한 迂迴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중한인사회의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재중 한인사회와의 건전한 연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피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延邊 自治州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정책 수립
- (2) 연구기관 설립
- (3) 南·北韓 및 中國間의 經濟增進을 위한 정책수립
- (4) 在中韓人社會의 교육·문화·연구활동 후원
- (5) 就業 및 出入國管理에 관한 정책 보완

라. 獨立國家聯合

舊蘇聯 時代에 동일 국적이었던 독립국가연합 주민들은 민족간 분규에 휩쓸리고 있으며 독립된 공화국의 지배민족으로

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소수민족에서 極少數民族으로 변화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연합교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 (1) 僑胞들의 權益保護를 위한 對策
- (2) 民族文化 維持를 위한 支援 方案
- (3)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교포밀집지역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 誘導方案 마련
- (4)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에의 참여에 현지교포 활용
- (5) 自治州 設立을 위한 한국 기업이나 단체의 진출 지원
- (6)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 支援 對策
- (7) 현지 宣敎活動에 대한 대책 수립

第V章 結 論

현정부의 「3단계 3기조」統一政策은 남북한이 서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나아가 종극적으로 平和統一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交流와 協力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교

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4개국의 우리 교포들이 남북한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살펴 보았다.

海外僑胞는 남북한의 높은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킬 수 있어 앞으로 두 체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媒介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해외교포 중 미·일 교포들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이전·시장개척 등은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民族經濟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국민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 統一過程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 통일 후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이민 1세대의 희생적인 教育熱에 힘입어 해외교포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해 있는 실정이므로 거주국에서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독립국가연합과 일본의 韓人團體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통합만 이룬다면 남북한 통일정책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정책에도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환태평양권에 민족적 공간을 교포들이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치열해질 地球村 時代의 기술·정보·경제 경쟁에 유리한 환경

을 주변 4개국에 조성해 놓고 있다. 즉 해외교포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받쳐줄 民族의 資産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교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교포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儒敎思想에 얽매어 고향을 등진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과 인권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교포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부족하여, 해외 교포들은 대부분 잊혀진 존재거나 우리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교포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僑胞社會가 모국지향적인 1세 중심의 사회에서 2세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살아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없다면, 이들이 모두 거주국의 시민으로 동화되어 힘들게 구축한 民族의 空間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포사회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자치주는 해체될 위기에 있으며, 독립국가연합의 교포들도 분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된 推進主體가 순발력 있게 대응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고 한민족의 생존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海外僑胞들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僑胞政策은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적합하고 현재의 국내의 상황에 부

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포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포를 한민족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으로 인식하고 교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교포정책의 설정에서 교포들을 居住國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점에 국한하지 말고, 한민족으로서 정체감을 갖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4개국들이 소수민족의 고유 문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동화나 다중문화 시책을 발전시켜 國際的 協力體制를 제고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외교포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본국 국민과의 일체감과 실질적인 조국애를 함양하는 길을 밝히는 것은 國力の 해외 신장은 물론 우리의 평화적 민족통일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수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民族統一 차원에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僑胞政策은 분단된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교포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과거의 분열·대립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團合과 自矜心을 불러일으킬 때이다.

또한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교포사회가 南北關係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교포들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교포 각자가 홍보 요원이 되어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투표권 행사나 정계 진출을 통해서 祖國統一에 필요한 거주국 여론 및 국제여론 조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교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의 결여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교민들이 국적있는 祖國意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연 조국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이 참된 조국애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국민은 피부로 통하는 祖國愛 심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민족의 文化空間을 확보하고 21세기 민족공영을 위하여 모국과의 실질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해외교포들의 권익 옹호 및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능동적·종합적·未來指向的인 방향과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교포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정책방향하에서, 海外僑胞들이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포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다.

과거 근시안적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國家經營에도 도움이 되는 발전적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國家別 僑胞社會 現況	6
1. 美 國	7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7
나. 僑胞社會 分布	11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16
라. 少數民族政策	26
마. 主要 懸案	30
2. 日 本	32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32
나. 僑胞社會 分布	37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43
라. 少數民族政策	53
마. 主要 懸案	58
3. 中 國	63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63
나. 僑胞社會 分布	68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75

라. 少數民族政策	83
마. 主要 懸案	85
4. 獨立國家聯合	91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91
나. 僑胞社會 分布	115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118
라. 少數民族政策	120
마. 主要 懸案	122
第 III 章 南北韓의 僑胞政策 比較 및 評價	128
1. 南韓의 僑胞政策	128
가. 基本原則	128
나. 僑胞政策機構	133
2. 南韓 僑胞政策 評價	135
가. 北韓 僑胞政策과의 競爭的 傾向	135
나. 僑胞政策의 消極的 傾向	137
다. 僑胞業務 推進의 問題點	138
라. 豫算의 不足과 效率的 政策推進方案의 缺如	139
마. 僑胞에 대한 實用的 支援의 不足	140
3. 北韓의 僑胞政策	141
가. 基本原則	141
나. 海外僑胞 親北團體現況	144
4. 北韓 僑胞政策 評價	148

第Ⅳ章 한민족공동체 形成과 僑胞政策	152
1. 基本政策	152
가. 한민족으로서의 正體感 形成을 위한 僑胞政策 ...	153
나. 「3段階 3基調」統一政策 支援을 위한 僑胞政策 ...	183
다. 民族의 未來를 위한 僑胞政策.....	200
2. 國家別 僑胞政策	208
가. 美 國.....	208
나. 日 本.....	212
다. 中 國.....	215
라. 獨立國家聯合	220
第Ⅴ章 結 論	230
參考文獻	238

第 I 章 序 論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함께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회·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民族共同體 概念에 근거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이다. 사실 화해없는 民族統一이란 생각해 볼 수도 없다.¹⁾

분단국가로서의 남북한은 冷戰的 敵對關係를 고수해 왔으며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에 의해 긴장관계에 있다. 남북한은 서로를 경쟁과 대결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주민은 자유로운 왕래는 커녕 전화나 편지조차 나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의 改革·開放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포용 수단으로 교류·협력 강화를 들고 있다.²⁾

1) 民族은 복잡한 성격을 지닌 역사적 집단으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일정한 客觀的 要素들 혈통, 언어, 관습과 전통, 종교 등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공동의 민족정신 또는 민족의식을 지니게 되고, 또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人間集團을 민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은 역사속에서 생동하는 힘을 가진 실체이므로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 없이 변화하며 자신의 正體性을 발전시켜 나간다.

2) 民族統一研究院, 「1993년도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55.

이처럼 상황과 수단의 제약과 여론의 변화라는 二重의 性格이 두드러진 현실에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교포들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³⁾

가까운 예로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華僑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대만은 상호간에 정치적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과 정책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媒介者로서 해외교포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해외교포들은 정치적 적대감을 벗어난 일종의 접촉 창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사례로 보아 南北韓關係를 개선하고 북한을 개방시켜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도 해외교포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 南北分斷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미국·일본·중국·舊소련 등에 약 5백만명에 달하는 해외교포 살고 있어 南北韓關係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 등에 있어서 교포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海外僑胞가 남북한간의 높은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3) 본 논문에서는 海外僑胞를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핏줄과 문화가 같은 동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4) 文興鎬,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58.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남한과의 直接的인 交流를 거부하는 북한도 해외교포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포들의 내왕을 선별적이거나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교포들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南北交流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교포들은 남북한 사회를 정치권력의 대결이 아닌 民族共同體的이고 中立的인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통일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일부 해외교포들은 분단된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으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잃어버렸던 민족의 同質성과 傳統을 오히려 남북한의 주민들보다 더욱 잘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존된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은 현재에는 南北交流를 위한 주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면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참된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海外僑胞들은 이산가족문제, 언어, 문화생활에서의 이질성 극복, 환경문제, 체육, 예술 및 학술교류 등 각 분야에서 통일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의 지나친 經濟的 隔差나 不均衡은 통일독일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통일 이후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바, 해외교포들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이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民族經濟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앞

으로 전개될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고리로서 東北亞 經濟協力機構가 국제적으로 중요시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의 해외교포가 밀집해 있는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민족적 경제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東北亞地域에서의 통일환경 조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 교포들의 노동력과 在美·日僑胞들의 자본과 기술을 기초로 한인들의 민족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상의 여러 상황과 정치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시각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僑胞政策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포정책은 북한의 교포정책과의 경쟁관계속에서 이루어졌고, 거주지 국적을 가진 교포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교포정책은 民族共同體 形成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에 적절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교포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機構를 만들어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위한 준비는 물론 통일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해외교포들의 거주국에서의 社會的 立地도 강화될 것이다.

참된 의미에서의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해외교포들까지도 통일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포정책은 해외교포를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질화된 민족공동체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은 식민지와 분단을 거치면서 생겨난 우리 海外僑胞들에게 진정한 통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본연구에서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交流·協力을 증진함으로써 그동안의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영과 번영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한민족공동체 形成에 기여할 수 있는 교포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 통일환경조성에 중요한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5백만 교포들의 現況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을 한민족공동체 통일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한의 僑胞政策을 비교 및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政策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國家別 僑胞社會 現況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僑胞政策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해외교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CIS)에서의 僑胞社會의 現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해외교포는 139개국에 4,702,422명이 있으며 이중 95.1%인 4,478,295명이 미국·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다. 거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 1,920,597명, 미국에 1,420,523명, 일본에 679,743명, 독립국가연합에 457,462명으로 全體 僑胞의 40.8%가 중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이 30.2%, 일본이 14.4% 순으로 되어 있다. 1991~1992년 사이의 교포수의 增減狀況을 보면 미국이 5.6%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다음이 독립국가연합으로 4.9%이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少數民族 差別政策 때문에 귀화하는 교포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表 2-1〉 참조).

〈表 2-1〉 海外同胞 現況

(1992. 12. 31. 현재)

지 역	동 포		비 율 (%)	증 감 (%)
	1991	1992		
일	695,033	679,743	14.4	-2.5
중	1,920,597	1,920,597	40.8	0.0
미	1,336,6879	1,420,523	30.2	5.6
C I S	437,000	457,462	9.7	4.7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 (서울: 외무부, 1993), p. 14.

1. 美 國

在美僑胞들은 해방 이전에는 조국독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남한정부의 경제발전, 기술개발과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였다. 미국과 함께 양측을 이루던 소련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國際社會에서 외교 및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재미교포들의 미국 내 활동이 한민족공동체 形成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미국의 僑胞社會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1) 하와이 移民時代

우리 민족이 해외에 공식적으로 集團移住를 시작한 것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노동이민에서부터였다. 1902년 5월 하와이 「사탕농장 경영자 동맹회」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자 한국에 특파원을 보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척식사업과 新文化 수입을 장려하고 날로 노골화되어 가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미국측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기대로 移民事業을 추진하였다고 한다.¹⁾

1) Illsoo Kim, *New Urban Immigra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20.

1902년 8월 20일 조선정부는 한양에 綏民院²⁾을 설립하고, 한양·인천·부산·원산 등지서 이민자를 모집하였다.³⁾ 1903~1905년 사이에 이민간 7,226명의 조선인 중 다수는 이 지역에 살던 노동자들로서 대부분 선교사들의 주선에 의해서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⁴⁾ 따라서 미국에 이주한 韓人들은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교회 중심의 이민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교포사회와는 달리 韓人教會가 중추적이고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은 日本政府가 일본 이민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막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1905년부터 중단되었다.⁵⁾ 1910년 나라를 잃게 되고 綏民院이 폐지되자 귀국길이 끊어져 유랑민이 된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게 되고 뒤이어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의 政治的 壓迫을 피해 정치 망명자 신분으로, 또한 신학문을 배워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 당시 하와이 勞動移民者나 유학생 등 美洲 거주자 중 90%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사진 결혼이 성행하여 이 시기에 천여명의 한인 처녀들이 결

2) 綏民院은 민생의 평안을 목적으로 한 官府로서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비슷한 기구였다.

3) Won Young Kim(Warren), *Koreans in America* (Seoul: Po Chin Chai, 1971), p. 10.

4) Illsoo Kim, *New Urban Immigrants*, p. 20.

5) 고성재, 「韓國移民史研究」(서울: 장문각, 1973), pp. 84~94.

혼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韓人社會에 합류하였다.⁶⁾ 그러나 1924년 개정된 미국 이민법에 의해 국가별 이주자의 인원수가 제한되면서, 한인들의 美洲 移住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국에 정착하게 된 대부분의 韓人들은 근면과 인내 그리고 높은 교육열로 다른 소수 민족보다 빠른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1930년대에는 자작농민, 소매상인, 전문직 종사자로 미대륙에도 진출하였으며, 강한 民族意識으로 민족 교육과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2) 1945~1964년 時期

해방된 1945년부터 美國 移民法이 개정된 1964년까지의 기간에는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생겨난 입양고아와 유학생들이 미국에 이주할 수 있었다.⁷⁾ 移民局 統計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64년까지 15,085명의 한인이 영주권을 획득했는데 이들을 이민 사유별로 구분하면 6,423명이 국제결혼한 사람들이며, 입양고아가 5,384명, 그리고 그 기간에 도미했던 留學生 6,000명 중 약 절반인 3,278명 등이었다.

6) Lee Houchins and Chang-su Houchins,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 ~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 (Honolulu: 1974), pp. 558~559.

7) Boc-Lim Kim,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1979). pp. 242~279; Dong-Soo Kim, "How they fared in American homes: A follow-up study of adopted Korean Children," *Children Today* 6(1977). pp. 2~31.

(3) 1965年 以後~現在

1965년 미국의 移民法 改定으로 동양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철폐되고 한인들의 본격적인 미국 이민이 시작되었다.⁸⁾ 새로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유럽인을 위주로 한 이민자 수의 國家別 差等割當制를 철폐하는 대신에 유럽 이외의 국가별 연간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2만명으로 제한하여 한인들은 연간 2만여명씩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 이후 미국에 이주해 간 한인들은 1900년대 초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비숙련공이 대부분인 초기 이주자와는 달리 60% 이상이 高等教育을 받은 도시 중산층들이었다.⁹⁾ 새 이민자들은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을 통하여 미국의 大衆文化를 접하고 미국 경제의 풍요로움에 이끌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에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言語와 文化的 障壁으로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나 전문직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래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미국에서 자신들의 教育水準에 걸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주유소·주류판매점·세탁소·잡화점·야채상·봉제공장경영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대부분 LA·뉴욕·시카고·워싱턴 등 대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8) Charles B. Keely, "Immigration policy and the new immigrants," R. Bryce-Laporte, ed.,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New Brunswick, N. J. : Transaction Book, 1980), p. 16.

9) Illsoon Kim, *New Urban Immigrants*, pp. 24~25.

이들이 大都市에 정착한 것은 미국 사회의 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대도시의 인구구조 변화는 대도시 정착을 촉진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 대도시에서는 黑白 人種葛藤이 심화되고, 1965년 LA시 왓트구역에서는 흑인 폭동이 일어나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백인(대부분 유대인)들이 교외로 빠져 나갔다. 이때 개정된 移民法으로 미국에 갓 이민온 한국인들은 범죄의 위험은 높으나 짝 임대료와 높은 수익률 등 經濟的 興件이 좋다고 판단된 이 지역에 진출하였던 것이다.¹⁰⁾

그런데 이렇게 대도시에 자리잡은 한인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한인이 영어 구사능력이 약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까닭에, 미국 主流社會나 다른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형성시키지 못하게 되어 미국사회 속에 동화되지 못한 채 韓人社會를 이룩하여 왔다. 한 예로 LA의 한인사회를 「大韓民國 羅城市」라고 칭하는 것도 별로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나. 僑胞社會 分布

(1) 居住資格別 分布

1992년 12월 31일 현재 미국 전역에 약 142만명의 교포가

10) Won Moo Huh and Kwang Chung Kim,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Cranbury, N. J. :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4), pp. 65~66.

살고 있다. 한인교포들의 地域別 分布는 LA 45만, 뉴욕 30만, 시카고 20만, 샌프란시스코 12만, 시애틀 10만, 워싱턴 D. C. 8만명 등 대부분 大都市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80% 이상이 1965년 이후 미국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25.8%인 366,244명이 미국 市民權者이며, 60.4%인 858,046명은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表 2-2〉 참조).

〈表 2-2〉 居住資格別 分布

거주자격별분포		총 수	백분율(%)
등 포 총 수		1,420,523	100.0
거주 자 격	시 민 권	366,244	25.8
	영 주 권	858,046	60.4
	기 타	196,233	13.8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145
~197에서 재구성

(2) 年齡別 分布

인구의 年齡別 分布는 〈表 2-3〉과 같으며 이중 30~39세 집단이 17.7%로 제일 높은 반면 60세 이상이 10.1%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시카고 韓人會 調査에 의하면 20~50세 그룹이 94%를 이루고 그중 31~40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그 당시 미국 이민자는 男性들 중 31~40세가 가장 많았으며, 女性들은 21~30세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20~49세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교포사회가 이민 1세 중심에서 1.5세대, 2세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表 2-3〉 年 齡 別 分 布

연 령 별	총 수	백분율(%)
1세 ~ 9세	33,221	12.0
10세 ~ 20세	46,816	17.0
20세 ~ 29세	46,276	16.7
30세 ~ 39세	48,848	17.7
40세 ~ 49세	43,245	15.6
50세 ~ 59세	28,562	10.3
60세 ~ 69세	16,514	6.0
70세 ~ 79세	8,705	3.1
80세 이상	2,985	1.0
계	275,542	100.0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145 ~ 197에서 재구성

기타 教育 水準別 分布를 보면 고졸 이상이 77.4%이며, 대졸만도 31.6%로 중국계·유럽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²⁾ 家口當 所得은 평균 18,932달러로 유럽계 이민의 평균치인 20,597달러보다는 낮으나 중국계의 15,121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¹³⁾

11) Ibid., pp. 56~57.

12) Ibid., p. 58.

13) Ibid., p. 59.

(3) 職業別 分布

1993년 통계에 의하면 재미교포의 25.7%가 商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13.3%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법조계·의료계·교육계·문예계·종교계·체육계 등 專門職에 종사하는 교포의 비율은 2.9%, 製造業에 종사하는 교포의 비율은 2.2%이다. 전체 교포들 중 40.3%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表 2-4〉 참조).

〈表 2-4〉 職業別 分布

직업별	총 수	백분율(%)
농수산업	13,379	0.9
상업	365,787	25.7
제조업	31,933	2.2
요식·숙박업	22,442	1.6
기타서비스업	189,538	13.3
법조인	2,527	0.2
의료	14,456	1.0
교육자	8,871	0.6
문예인	3,456	0.2
종교인	11,884	0.8
체육인	2,417	0.1
사무직	63,067	4.4
기술직	71,345	5.0
노동자	45,640	3.2
기타	573,781	40.3
계	1,420,523	100.0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145~197에서 재구성

(4) 僑胞業種分布 및 特性

뉴욕의 경우 한인들은 약 15,000개의 청과상과 약 3,500개의 식료품상을 경영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상의 경우 뉴욕 전체의 15%를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으며 總賣出額은 연간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¹⁴⁾

시카고 지역에는 세탁소를 자영하는 교포들이 많은데 이 지역 교포들을 상대로 한 資本出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포 중 30%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63%는 미국에서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278개 酒類商店 중 127개가 한인 소유이며, 3천여개 노점상 중 1천개가 한국교포 소유이다.¹⁵⁾

LA의 경우 그동안 이민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2세 교육과 經濟活動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으나, 최근 LA사태와 미국의 경기 침체 및 미국 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사태 이후 본국 국민과 해외교포들이 募金活動을 펴 약 4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교포들이 사업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위험지역이라 보험료가 비싸 대부분의 교포들이 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는 데다, 聯邦政府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

14) 황인석 뉴욕한인 청과상조회장측 자료.

15) *Washington Post*, June 6~7, 1992.

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될 실정에 있다고 한다. 또한 黑人暴動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부동산에 투자했던 교포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⁶⁾

한국교포들은 1960년 말 低賃金 勞動力에 의해 한국에서 생산된 가발 등의 제품을 베흐시장 등에 팔면서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즉 대부분의 교포상인들은 主流商圈(main market)의 중심부에 진출하지 못하고, 잡화를 한국으로부터 싸게 구입하여 교포나 미국내 소수 인종인 흑인과 남미인에게 다시 파는 장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값싼 중국산·인도산 제품들이 미국시장에 침투하면서 價格競爭에서 우리의 상품이 밀리게 되어 교포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교포들이 중국에 가서 상품을 구입해 올 경우에도 중국에서 華僑에게 파는 가격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값싼 물건으로 미국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高品質의 상품으로 미국 主流市場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교포들의 영세적인 사업규모와 流通構造로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¹⁷⁾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同質性を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

16) Justin D. Kim 해외교포무역인협회(OKIA)임원과의 인터뷰.

17) 김진형 LA 코리아타운 교민회장과의 인터뷰.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이룸과 동시에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海外僑胞들의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내 교포사회의 경우, 경제 및 기술을 지원하고 國際的 統一環境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① 재미교포들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기여할 意思가 있는가, ②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③ 기여할 수 있는 資源이나 技術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④ 현재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없다면, 어떠한 條件下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⑤ 미국사회에서 韓半島 統一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다면 누가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고 미국정부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移住 動機

韓人 移民史를 보면 초기 이민자들은 단순노동 취업이민자였으나, 망국민으로서 애국심이 높았다. 한일합방으로 돈을 벌어 금의환향하려던 꿈을 잃게 되자, 상해·만주·소련에 군자금을 보내는 등 抗日鬪爭을 적극 지원하였다.¹⁸⁾ 이러한 전통은 목적은 달라졌지만 현재에도 남아 있어 각종 모국 지원사업, 올림픽 성금, 민주화 투쟁성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8) Kim, Bernice Bong Hee, "The Koreans in Hawaii," *Social Science* 9 (1934), pp. 409~410. 예를 들어 이들은 1919년 국민회 중앙회 예산의 37%에 달하는 3만 6백달러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미교포를 戰爭의 공포로부터의 도피자, 국가관이 결여되고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 및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犯罪者 集團으로 보는 일부 국내인들의 부정적 시각과 일부 방송의 단견적인 보도들에 대하여, 재미교포들은 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¹⁹⁾ 사실 대부분의 교포들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平和問題研究所의 조사에 의하면 재미교포들이 생각하는 이주 동기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교육 등으로 逃避性 移民은 극히 일부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2) 統一意識

평화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과 관련된 교포들의 의식은 매우 높으며, 새 移民法 改定 以後 이민은 이민 1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70% 정도인데 나이든 사람일수록 이해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가 1991년 10월 3~7일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70.2%)와 거의 비슷한

19) 한국과 LA 한인사회 紐帶強化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66.7%가 양자간의 부정적 이미지 척결을 들고 있다. “해외교포 정책간담회,” 「교포정책자료」, 제 44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3).

20) 교포들의 해외거주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은 사람이 48%이며,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주한 사람이 27%이고 전쟁위협 때문에 정착했다는 사람은 4%이다.

수준으로, 在美僑胞들의 남한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내국 인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교포들의 統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대강 알고 있는 사람은 52%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남북한의 統一方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의 교포 중 38.6%는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19~35세 그룹에서는 12.1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66세 이상의 年齡集團에서는 26.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19~35세 연령집단에서는 13.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교포 중 나이든 교포 1세들의 祖國統一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 청소년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²¹⁾

한편 祖國統一을 위해 교포로서 남과 북을 똑같이 사랑하는 「한겨레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71%이며, 중년층·고학력일수록 이러한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²²⁾

南北韓의 體制 중 남한의 체제를 선호하는 교포들은 75%이며, 북한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13%, 양 체제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11.8%로 나타났다. 남자와 51세 이상의 집단에서 南韓體制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대학 재학생

21)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정책자료」, 제44집, pp. 11~22.

22) 위의 책, p. 66. 여기서 한겨레운동은 남북한의 장점을 보고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찾는 愛族精神으로 남과 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들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51~65세의 연령집단에서의 남한 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81.1%임에 비해, 19~35세 연령집단에서는 65.6%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체제가 똑같다고 보는 中立的인 입장의 경우, 51~65세 집단에서는 6.43%인 반면, 19~35세 그룹은 18.5%로 연령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²³⁾ 나의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 남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4.3%, 북한이 내 조국이라고 보는 사람은 2.2%, 南北韓이 모두 조국이라고 보는 사람은 30%였다.²⁴⁾

통일을 위한 교포들의 壽與度에 관한 문항에서, 기여도가 크다는 편이 61%였는데 이는 같은 연구소에서 1987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4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²⁵⁾ 이는 「7.7선언」 이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의 北韓訪問 기회가 생기고, 미국 내의 연구자료와 정보를 통하여 남북한에 대한 客觀的인 判斷이 가능해져 통일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미국교포들이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 사례 등에 대해 미국 및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韓國의 民主化에 기여하였듯이, 북한의 민주화를 유도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3) 위의 책, pp. 25~29.

24) 위의 책, pp. 57~58.

25) 위의 책, pp. 59~62.

26) 박찬웅, “해외동포사회를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 유도방안은 어떤 것인가?,”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서울: 민족통일협의회, 1991), p. 64.

對北韓投資에 대한 교포들의 반응은 북한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익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18%로 나타났다. 북한의 經濟回復을 위하여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13%에 달하고 있다.²⁷⁾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해 보면, 재미교포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며, 특히 나이든 연령층일수록 남한의 統一方案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젊은층들은 남북한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방안에 대한 認知度는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통일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매우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교포들의 지원태도를 보건대 對北韓 投資에 관심이 많고 지원의사도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僑胞團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祖國獨立運動을 위하여 미국 내의 한인단체들이 활발하게

27) 재미경제인 연합회는 재미 경제인 북한 방문 단일창구화를 위해 1991년 6월 LA에서 발족해 1991년 9월 10일 첫 단체의 북한방문을 시작으로 교포무역인들도 북한을 방문, 중개무역, 합영합자회사 설립 등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부미주편,” 「중앙일보」, 1991년 10월 5일.

활동하였고, 미국내의 교포들 사이에는 유대가 깊었다. 그러나 현재는 美洲地域에 한인회, 한인상공인회, 한인노인회, 한인기술자협회 등 1992년을 기준으로 748개의 親韓性向의 한인단체가 있으며 그 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많은 교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代表性이 적다.²⁸⁾ 한인단체는 대부분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민 1세대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수많은 단체들이 제각기 조직되어 다른 단체와 긴밀한 紐帶關係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여, LA사태의 경우 汎僑民次元에서 단결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나타내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현지 영사관이 僑胞團體를 보호·육성한다는 명분하에 교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중앙정보부는 직접적으로 교포사회를 통제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1976년 美國 하원 소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부서에서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카고·휴스턴 등 5개 도시에서 교포들의 親政府 活動을 지원해 주고, 反政府 活動을 탄압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²⁹⁾ 이와 같은 정부의 한인단체 후원과정에서 지나친 친정부 활동이 오히려 교포사회 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교포단체가 한국의 民主化 鬭爭을 지원하면서

28) 외무부, 「해외동포 단체조직현황」(서울: 외무부, 1993. 5), pp. 153~344.

29) Tad Szulc, "Inside South Korea's C.I.A.," *New York Times Magazine*, March 6, 1977, p. 50.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한국 대통령선거 이후 본국의 지역 감정이 한인단체장 선거에 작용하여 한인단체장들의 代表性이 약화된 점, 또한 단체의 지도자들이 본국 정치 지향적이라 미국 정치현실에 관심이 부족하고 타민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은 韓人團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LA사태 등에 대하여 한인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순발력있게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한인사회에 걸맞는 政治力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젊은이들 특히 1.5세 내지 2세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모임들을 조직하여 한인사회 전체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求心的 役割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³⁰⁾

그러나 교포 1.5세나 2세대들은 이민 1세와는 달리 대부분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도 미국사회에 동화되고 존경받는 시민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장한 교포 1세대처럼 本國 指向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현재의 교포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교포1.5세나 2세대들이 이민 1세대처럼 한국과 유대를 가지고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포들에게 민족의식을 보다 확고히 심어주고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 참여하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

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7), p. 54, 59.

의식을 갖게 해준다면 과거 나라를 되찾자는 일념하에 교포사회가 뭉쳤듯이 또한번 조국을 위하여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들은 미국에서 生活安定은 얻었으나 생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통자문위원 선정에서 나타난 교포들의 열띤 반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³¹⁾

현재 교포사회는 親南韓性向의 단체 이외에도 정부기관이 親北韓性向으로 분류하고 있는 8개의 단체들이 있다. 이는 1988년 「7.7선언」 이후 미국교포들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으며 북한 또한 지난 몇년간 外貨獲得을 목적으로 訪北을 대대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그 결과로 「연락책」 역할을 맡은 교포단체들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북한을 방문한 僑胞 數는 810명이며 이들을 통하여 상봉 및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는 1993년 1월 13일 현재 접수된 211건 중 45%인 94건이다.

이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으나 親北團體 중 하나로 분류되는 在美 한인청년연합을 조직한 윤한봉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1982년 LA

31) 전봉근 대통령외교안보비서관과의 인터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국이 해외공관을 통해 1,130명의 해외평통위원을 임명·발표하자 탈락된 인사들 비롯 상당수 교포들이 인선기준을 밝힐 것과 교포사회가 공인하는 덕망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한다.

32) 「시사저널」, 1993년 5월 27일, p. 10.

에 民族學校를 설립한 그는 국내외 민주화와 조국통일, 제3세계 피압박 민족간의 연대를 강조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윤한봉은 1983년 13개 지역의 청년조직을 묶어 在美 韓人青年聯合(이하 韓靑聯)을 결성하였다. 또한 미국·유럽·캐나다·호주 등의 청년조직을 규합한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의 목표는 조국의 民主化運動, 平和運動 그리고 統一運動이다.³³⁾

북한은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과 인맥이 있는 소위 親北韓人士들에게 2~3일 간격으로 「로동신문」을 발송하여 왔는데, 1992년 6월부터는 일반교포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약 4만부의 「로동신문」을 미국 전역에 보내는 등 僑胞接觸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³⁴⁾ 1993년 4월 7일 평양에서 개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안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9항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美國僑胞를 포함한 해외교포에 대한 북한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여겨진다.³⁵⁾

33) 윤한봉은 최근 귀국 후 인터뷰에서 한청련이 친북단체라는 시각에 대해서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학생축전 때도 한청련이 초청을 받았으나 남북 양쪽 정부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축전참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3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1992. 7), p. 58.

35) 김덕형, 「북한의 민족대단결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6), p. 26~27.

앞으로 미·북한과의 접촉이 늘고 북한 주민의 미국 방문이나 초청방문, 학자·학생들의 교류 및 유학이 이루어질 경우, 在美僑胞 社會는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친북한계의 확산 가능성이 있고, 둘째, 다수의 교포들이 反北韓性向을 가지고 있어 교포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그 반면에 남한의 정통성있는 文民政府時代를 맞이하여 친북한 세력들이 친한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라. 美國의 少數民族政策

(1) 美國의 反黃人種主義

미국은 原住民인 인디언을 제외하고는 세계 전역 이민은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 건국 초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없이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1819년 미국의회는 移民者들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이민선의 船主는 반드시 이민자의 성명, 연령, 국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뒤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급증한 데 반해 人力需要는 줄어들고 게다가 값싼 노동력의 中國人이 대거 유입되면서 먼저 이민은 사람들 사이에서 保護主義가 대두되었다. 1849년에는 중국인을 제외한 기타 외국인의 이민은 아무런 제한없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으로 하여 마침내 1882년에는 「중국인 이

민 금지법」을 제정해 중국계 미국이민이 중단되고 선착 이민인 유럽계 백인들의 反黃人種主義가 확산되어 갔다.³⁶⁾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미의회는 移民規制法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16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어 또는 외국어를 해득할 수 없는 자의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아시아인과 힌두교도의 입국이 제한되었다.³⁷⁾

이러한 移民政策으로 아시아계들의 미국이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국계 이민자들 중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족을 초청하지 못한 채 독신으로 들어가며 差別待遇와 低賃金에 희생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계 이민자들은 서해안에서 강제 소개되어 집단수용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이민정책은 1965년 移民法 改定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2) 옹광로政策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은 그들의 少數民族政策을 옹광로(melting pot)에 흔히 비유해 왔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치관·생활양식을 한데 합쳐 美國이라는 큰 냄비속에 녹여서 새로운 미국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미국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36) 손태근, 「 재미한국인 」 (서울: 한민족, 1988), pp. 315~316.

37) 위의 책, p. 316.

(3) 압력솥政策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미국의 少數民族政策을 압력솥(pressure pot)에 비유하는 견해도 있다. 즉 앵글로·색슨계의 백인 신교도(WASP)들이 유색인종들에게 자신들의 세력하에 복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1835년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토크빌은 이런 점에서 미국사회를 두개의 異質的인 共同體라 평했고, 1944년 스웨덴 학자 뤼르달은 미국의 黑人들은 자신들이 타고난 階級狀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⁸⁾ 1992년 미국인 학자 앤드루 해거는 미국사회에서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년에 1백만달러 씩 평생받는 것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은 지금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人種差別國家이며 소수민족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4) 샐러드 볼(salad bowl)

그러나 1965년 이민법 개정과 1968년 민권법안의 제정 이후로 有色人種의 이민 수가 늘고 있으며 인종차별의 제도적 요소가 제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少數民族政策을 샐러드 볼에 비유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 즉 마치 샐러드 볼에 섞여 있는 다양한 야채들이 다양한 맛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

38) 해외동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1992. 7), p. 55.

39) 위의 책, p. 55.

운 샐러드 맛을 내듯 白人獨走 社會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각자 자신들의 전통·문화·가치관·뿌리를 간직하면서 하나의 共同體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샐러드볼의 낙관론은 1992년 4월 21일에 일어난 LA사태로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⁴⁰⁾ 法的인 平等權을 보장받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뿌리깊은 편견과 숨겨진 차별을 겪고 있던 흑인이나 히스패닉系들이 경제적 여건 악화로 누적된 불만을 백인이 아닌 한국계를 대상으로 폭발시켰던 것이다.

이민의 꿈을 가진 세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미국에서 병든 美國社會를 접하게 된 교포들은 피해지구를 떠나서 차이나타운(China Town)처럼 완전한 韓人村을 만들자는 재구성론과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이탈하여 완전히 흩어져 살자는 分散論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코리아타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코리아타운이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逆移民을 막고 한인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LA사태 이후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상호협력하여 共同利益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40) 장태한, “흑·백 갈등의 표적될 수 없다,” 「해외동포」 (1992. 7), pp. 45~47.

마. 主要 懸案

교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파악하면 아래와 같다.

(1) 韓人 業種構造 改編問題

미국 主流市場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인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 온 세탁소·리커스토어·식품점·잡화점 등과 같은 단순 업종에서 점차 탈피해 제조업 중심의 專門業種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한인경제의 주축을 이룬 單純業種들은 남미·아프리카·베트남·중국계 초기 이민자들에게 시장을 잃어가는 상태이다. 또한 단순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포상인들은 아직도 영세하여 美國市場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인 교포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에 대한 변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韓人社會의 경제발전에 고충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 韓人社會의 政治力 伸張問題

1992년 4월 29일 LA사태 때 한인들은 LA市 당국과 경찰, 주정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백인지역에만 경비가 강화되었을 뿐 한인상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그 결과 20년간 移民生活를 통하여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고 난 뒤, 한인

교포들은 정치력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다. 미국사회에 살면서 미국의 政治過程에 참여하지 못해서 위기에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3) 2世 教育問題

재미교포 청소년들의 母國語 구사력을 보면, 의사가 약간 통하거나 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의 비율이 87%에 이른다.⁴¹⁾ 교포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단절로 인하여 청소년 非行이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서, 최근에 韓國語 教育을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하고 자신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 韓·黑葛藤⁴²⁾

지난 LA사태로 LA교포들이 억울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흔히 흑인들을 미국인구의 12%에 불과한 少數人種으로 여기지만, 미국 대도시의 빈민가에는 흑인과 멕시코인이 절대 다수를 이루며 살고 있다.

특히 1965년 로스엔젤리스 왓트지구에서 暴動이 일어난 후, 흑인들은 유대인이 떠나면 유대인 상가가 자기들의 차지가 되

41) 평화문제연구소·한미교육개발원, 「민주동포들이 보는 조국」(서울: 평화문제연구소·한미교육개발원, 1992), p. 118.

42) 교포들은 한·흑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사회의 흑인차별, 빈부의 차 등 구조적 문제에 한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흑갈등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나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한·흑갈등이라고 표현하였다.

리라 기대하였는데 때마침 이주해 온 韓人들에게 이를 빼앗겼고, 그 뒤 이민온 한인들이 黑人地域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둔 성공 사례가 매스컴을 통하여 흑인사회에 전달되자 흑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인상점주들이 흑인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地域社會 發展에는 기여하지 않고, 백인지역의 고급주택지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빈민가에 와 장사를 하면서 흑인점원을 쓰지 않는 등 흑인에 대한 差別意識을 표출함으로써, 로드니 킹 사건을 계기로 백인사회에 대한 울분을 한인들에게 터트리게 되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지적이다.⁴³⁾

2. 日 本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1) 1910年 以前

한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일본에서는 그들을 歸化人⁴⁴⁾이라 부르는데, 귀화인 중 가장 최근 사람들은 임진왜란 당시에 끌려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미 400년이 지난 지금, 일부 도예공의 후손들을 제외하

43) *LA Times*, April 29, 1992, p. 1.

44) 본래 의미는 일본에 귀속되어 천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현재는 法律用語로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는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자신들이 朝鮮人の 후예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귀화인은 거의 없다.⁴⁵⁾

(2) 1910年 以後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朝鮮人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식민정치 초기에 일제는 조선에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土地調査事業을 강행하였다.⁴⁶⁾ 그 결과 많은 한인들이 토지를 강탈당하였고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구조는 무너지게 되었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몰락한 한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 중에서 留學生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농토를 잃어 이주했거나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다.⁴⁷⁾

그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好景氣로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자 조선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이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에 뒤이은 韓國

45)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교포정책자료」, 제42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1), p. 15; Mitchell and Richard Hanks,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pp. 1~6.

46) Chong 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61), pp. 11~14.

47) Irene B. Taeuber,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Japan 1850~1950,” Simon and S. Kuznets ed., *Economic Growth*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55), p. 336.

人 大虐殺로 3만여명이 살해되자 한때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은 줄어들었다가 수 년 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1938년 4월 國家總動員令을 발표하였으며 1939년 7월에는 국민징병령을 통하여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동원하고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여성들을 정신대로 징발하였다.⁴⁸⁾ 그 결과 在日韓人 수가 급증하여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에 일본거주 조선인의 수는 2,577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5년 일본의 패망시에는 235만명(全日本人 7,200만의 3.28%)이나 되었다.⁴⁹⁾

(3) 解放 以後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대부분의 在日 朝鮮人들은 조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귀환선 사정으로 이들을 운송하는 데 한계가 있어 朝鮮人 歸還이 지연되었다. 또한 일본은 부족한 물품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일본을 떠나는 한국인에게 몸으로 운반할 수 있는 물건과 담배 3갑을 살 수 있는 현금 1천엔만을 지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귀국 후 생계대책이 막연한데다, 1945년 8월 21일 귀국선 浮島丸의 폭파사고로 4천여명의 귀환 조선인이 죽자 일본거주 한인들은 귀국을 망설이게 되었다. 해방후 韓半島 政

48) 1993년 2월 28일 서울 에메랄드호텔에서 있었던 해외교포정책간담회 중 박병윤 민단 중앙본부 민족교육위원과의 토론.

49) 김상현, 「在日韓國人」(서울: 한민족, 1988), pp. 13~18.

局이 어수선해지며 사회가 혼란해지고 유행병이 번지자 귀환 행렬은 더욱 주춤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기까지 귀국한 한국인들은 약 140만명, 일본에 남게 된 한국인의 수는 약 54만명으로 추산된다.⁵⁰⁾ 이러한 당시 상황은 在日韓國人 1世들의 일본잔류 이유에 대한 거류민단 청년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⁵¹⁾ 이처럼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대부분 歸國 意思가 있었으나 경제적 여건이나 본국사정에 의하여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50) Mitchell and Richard Hanks,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67), p. 102.

51)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歸國 의사에 관한 회답	
귀국 의사가 있었다.	67.9%
귀국 의사가 없었다.	31.1%
不明	1.4%
2) 귀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회답	
귀국후의 생활의 구상이 서지 아니한다.	62.7%
本國政情이 불안하다.	17.1%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7.6%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다.	4.4%
유행병의 발생	3.0%
남북분단	2.1%
不明	20.2%
3) 귀국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한 회답	
경제적 사정	43.0%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다.	26.5%
귀국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22.1%
일본이 좋았다.	2.9%
不明	5.5%

資料: 「통일일보」, 1983년 10월 15일.

이들이 일본에 계속 체류하게 된 데에는 일본에서 南韓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고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먼저 한번 고향을 등진 사람들을 타관 사람으로 간주하는 封建制度의 遺習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인구 과잉으로 당시의 농촌이 이농자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韓國戰爭으로 인한 민족간의 골육상잔과 고향파괴 소식을 들은 교포들은 그냥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다.⁵²⁾

1959년 12월부터 북한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전후 일본의 극심한 排他的 差別政策下에서 실업난·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일교포들에게 1958년부터 교포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제공하던 북한정부는 북한을 살기좋은 곳으로 선전하면서 北送事業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에 많은 교포들이 북한으로 갔다. 그러나 북송된 교포들의 생활 실상이 알려지고, 또한 1975년 남한정부에서 주선한 조총련계 동포성묘단의 母國訪問事業의 성과 등으로 북송 희망자가 격감하면서 1982년의 24명을 끝으로 북송은 중단되었다.⁵³⁾ 1959년 12월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 동안 北送事業에 의해 북한으로 귀환한 교포들의 수는 93,344명에 달하였다. 북송된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출신으로 노동자나 농민출신보다는 商工人이나 技術者들이 월등히 많았다. 북송된 교포들은 일본을 방문조차

52)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p. 21.

53) 위의 글, p. 93.

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이 이들의 가족인 20만명의 朝總聯系 僑胞들은 북한의 인질이 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 교포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자신의 가족이 있는 일본에 정착하여 僑胞社會를 형성하게 되었다.

나. 僑胞社會 分布

(1) 居住資格別 分布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의 총 수는 679,743명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중 76.1%가 日本 永住權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表 2-5〉 居住資格別 分布

거주자격별분포		총 수	백분율(%)
교 포 총 수		679,743	100.0
거주 자 격	시 민 권	0	0
	영 주 권	516,990	76.1
	기 타	162,753	23.9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37
~82에서 재구성

(2) 年齡別 分布

1989년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在日僑胞 1世는 12.2%에 불과하다. 87.8% 이상이 2세 이후 세대로 이

중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72%로 戰後世代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이다(〈表 2-6〉 참조).

〈表 2-6〉 年 齡 別 分 布

(1989년 현재)

연 령 별	총 수	백분율(%)
0세 ~ 4세	35,651	5.2
5세 ~ 9세	45,516	6.7
10세 ~ 14세	51,900	7.6
15세 ~ 19세	57,478	8.4
20세 ~ 24세	55,266	8.2
25세 ~ 29세	59,450	8.8
30세 ~ 34세	59,939	8.9
35세 ~ 39세	62,109	9.2
40세 ~ 44세	56,425	8.3
45세 ~ 49세	47,681	7.0
50세 ~ 54세	37,446	5.5
55세 ~ 59세	26,991	4.0
60세 ~ 64세	24,248	3.6
65세 ~ 69세	24,526	3.6
70세 ~ 74세	15,461	2.3
75세 ~ 79세	9,827	1.5
80세 이상	7,261	1.2
미확인	1	0.0
계	677,140	100.0

資料: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정책자료」, 제42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 95에서 재인용

(3) 職業別 分布

戰後 日本社會는 일본인 외에는 어떤 민족도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배타적인 분위기였으므로 재일교포들은 심한 차별과 편견을 겪었다. 그 결과, 在日韓人들은 일본인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짧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일본인에 비해 4배, 자살율이 2.5배, 범죄율이 6배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⁵⁴⁾ 최근에는 經濟大國化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변화로 화이트칼라 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교포들의 높은 교육열로 국제수준의 각종 專門家 集團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한국회사의 일본지사에는 재일교포가 채용되는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반대로 日本 有力會社는 한국지사에는 재일교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사무직 고용이 늘고 있다.⁵⁵⁾

1993년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在日僑胞들의 職業은 사무직 종사자가 제일 높은 9.1%이고 그 다음이 상업, 기타 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은 비율이나마 기술직(1.3%), 의료인(0.4%), 교육자(0.3%), 법조인(0.02%) 등이 등장하고 있다(〈表 2-7〉 참조). 그러나 기타로 분류된 62%는 대부분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교포들로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고 있다.⁵⁶⁾ 이는 아직도 많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사회의 最低邊 下位層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54)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pp. 30~56.

55) 민관식, 「在日韓國人」(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 p. 178.

56)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p. 186.

〈表 2-7〉 職業別 分布

직업별	총 수	백분율(%)
농수산업	1,561	0.2
상업	61,416	9.0
제조업	36,534	5.4
요식·숙박업	8,462	1.2
기타서비스업	44,824	6.6
법조인	145	0.02
의료	2,866	0.4
교육자	2,498	0.3
문예인	1,980	0.2
종교인	1,229	0.1
체육인	2,857	0.4
사무직	62,411	9.1
기술직	9,113	1.3
노동자	20,406	3.0
기타	423,441	62.0
계	679,743	100.0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37
~82에서 재구성

(4) 業種別 分布

在日僑胞 商工人의 경우 일반적으로 짜짚코 등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 졌다. 그러나 교포사회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교포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제일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오사카(大阪)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8〉 참조).

〈表 2-8〉 大阪地域 교포들의 業種別 分布

업종분포	백분율(%)
① 제조업	46.0
② 도·소매업(음식점, 재생자원도매)	19.0
③ 서비스업(유흥장, 오락실)	16.0
④ 건설업	7.5
⑤ 부동산업	7.1
⑥ 금융·보험업	2.5
⑦ 운수·통신업	2.1

資料: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교포정책자료」, 제42집(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 291.

도쿄(東京)의 업종 분포에서는 오오사카와 다소 달리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表 2-9〉 東京地域 僑胞들의 業種別 分布

업종분포	백분율(%)
① 서비스업(빠징고, 여관, 사우나, 세무사, 일반진료소)	30.0
② 도·소매업(중화, 한국요리, 다방, 나이트클럽, 재생자원도매)	28.0
③ 제조업	22.0
④ 금융·보험업	7.3
⑤ 부동산업	6.5
⑥ 건설업	5.3
⑦ 운수·통신	2.0

資料: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교포정책자료」, 제42집(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p. 291~292.

僑胞商工人의 業種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오오사카의 경우 46%가 제조업, 도쿄에는 22%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都小賣業에 종사하는 교포는 오오사카의 상공인 중 19%이며, 도쿄에는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포상공인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과의 經濟交流를 보다 더 긴밀히 한다면 남북한 모두 일본으로부터의 제조기술 이전과 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民族金融機關

교포 상공인들의 금융 거래를 보면 일본의 시중은행으로부터 차별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자본을 民族金融機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교포상공인들 간에는 동포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므로 금융기관이 힘을 키워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현재 민족금융기관으로는 재일 한국인 신용조합협회(약칭 韓信協)와 조총련의 신용조합(朝信協)이 있다(〈表 2-10〉 참조).

〈表 2-10〉 在日 民族金融機關

(1989. 6. 30 현재)

	한신협 산하조직	조신협 산하조직
조 합 수	39	38
점 포 수	164	175
조 합 원 수	204,694	210,558
총 액 금 고	1조 8,467억 8,900만엔	1조 6,650억 3,100만엔

資料: 민관식, 「在日本韓國人」(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 p. 278

재일교포가 밀집한 오오사카와 도쿄 지역의 예금주로는 조합원이 많으며, 조합원들 가운데는 韓信協과 朝信協 양측에 가입되어 있는 동포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재일교포사회는 조직으로는 朝總聯系와 民團系로 분열·대립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례로서, 1993년 7월 1일 한신협산하 5개 조합이 합병하여 關西興銀을 탄생시킨 바 있다.⁵⁷⁾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현재 在日僑胞 1세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2세조차 노년에 이르고 있어서, 실제로 3세와 4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므로 조국을 戶籍上으로만 인식하고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어로 생활하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일본이름(통명)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1) 民族教育 實態

재일교포의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1988년 현재 民團系 11개 교에 취학하고 있는 한국인 자녀수는 1,745명으로 총 취학자녀 수의 1.0%이고, 조총련계는 153개교의 20,562명으로 12.5%이다. 그외 교포 자녀들은 日本系 學校 42,706개교에

57) 예금량 1조 2천억엔, 1府 4廳에 걸친 전국 최초의 광역거대 신용조합이 생겼으며, 이는 보통은행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예비단계로 보고 있다. 「해외동포」(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7).

1,417,751명이 취학하고 있는데, 이는 86.5%에 이른다.⁵⁸⁾

民團系 學校에 취학율이 부진한 것은 교육재정이 빈약하여 제일 한인학교들이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의하여 正規學校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도 일본계 학교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일본어로 하고 있으므로 졸업 후에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上級學校에 진학할 수 있는 길도 막혀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계 학교에 다니는 교포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계 학교에의 높은 취학율은 3세 교포들의 日本同化現象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민족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就學兒童들의 학부모가 되는 2세들조차 한국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국에 있는 친척들과의 연락마저 거의 끊어진 상태이고, 풍속과 관습마저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3세들에 대한 民族教育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僑胞社會의 同化問題

재일교포사회는 그동안 日本國籍 取得에 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로 교포들은 일본국적을 완강히 거부해 왔으며 日本國籍 取得은 교포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교포사회의

58) 민관식, 「在日本韓國人」, p. 30.

일본국적 취득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국 지향의 강렬한 民族主義만으로는 오늘날의 교포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포 1세대들은 비록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일본을 안주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주변의 일본인과 거의 같은 成長過程을 겪은 교포 2·3세대들에게는 일본이 일시적인 임시 거주지가 아닌 영주의 땅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교포 2·3세대들은 日本國籍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게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한 在日韓人들의 일본인과의 결혼이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이다. 1955년 한인끼리의 결혼이 총교포 결혼의 66.9%이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본인인 경우가 30.5%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한인끼리의 결혼은 18.4%에 그치고 일본인과의 결혼이 81.1%로 늘어났다.⁵⁹⁾ 특히 在日僑胞 男性이 일본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는 20.4%에 불과한 반면, 재일 교포 여성이 일본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는 60.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韓國 女性은 일본에 귀화하게 되며 또한 일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경우도 그 사이에

59) 김환, “재일한국인 자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교포정책자료」, 제42집(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1), p. 97.

출생한 아이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다.⁶⁰⁾

이러한 한·일간의 결혼, 日本 國籍法의 개정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사회에서 정주하려는 3·4세대들은 1세보다 일본에의 동화나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 거부반응을 적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歸化人 數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재일 한국인이 연간 약 5천명에 달하는 등 在日 韓國人의 歸化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귀화에 대한 교포들의 자세는 달라지고 있다. 일본국적 취득시 바꾸었던 일본식 성명의 한국식 성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裁判이 늘고 있고 한국명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귀화하는 교포들도 있어 과거에 볼 수 없던 귀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시에 재일 한국인들 사이에는 參政權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재일 한국인들은 납세를 비롯한 의무는 일본인과 똑같이 이행하면서 사회보장과 참정권 등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그동안 僑胞社會는 일본사회·정치에 가능한 한 관여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재일한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參政權 取得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오오사카府 기와시 다市 의회에서는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60) 이는 1985년 1월 1일부터 과거 일본 국적법상 국적의 취득은 父系 血統主義였던 것이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新國籍法에 의하여 父-한국인, 母-일본인 사이의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만 21세에 한·일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다. 개정 「일본국적법」 제2조 및 14조.

선거 參政權과 人權保障確立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요코하마·니이가타 등 10여개의 지방의회가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지금까지 조국으로부터의 이탈 내지 도피행위로 교포들의 비난을 받던 日本國籍 取得行爲도 일방적으로 규탄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3) 祖國意識 및 統一意識

통일이 되면 故國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동화하여 귀화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사회의 차별과 멸시와 싸우면서 재일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는 교포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교포 1세대들은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本國指向의 강한 의지를 가진 반면에 2세 이후의 교포 대부분은 그들의 생활 터전인 일본에서 韓民族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²⁾

그러나 이들의 조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20대에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日本 新聞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한국 신문이었다. 일본 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은 젊은 층에서 높았고, 韓國 新聞에 의존하는 경향은

61) 「中央日報」, 1993년 10월 13일.

62) 정대균, “변화하는 재일교포사회,” 「日本評論」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91. 9), pp. 227~242.

중·장년층에서 높았다.⁶³⁾

재일교포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조국의 분단, 민족의 분열로 인하여 民團과 朝總聯의 대립·투쟁을 경험한 재일교포들은 이로 인하여 조국분단의 비애를 더 한층 느꼈기 때문에 “통일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統一의 展望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4%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設問調查에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 쌍방이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응답도 상당수(17.7%) 있었다.⁶⁴⁾

이러한 결과는 在日僑胞들이 지금까지의 남북 쌍방의 회담이나 노력들이 단순한 정치적 이용물, 즉 국내 정치용이나 해외 홍보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민단과 조총련의 대립을 경험한 데서 오는 懷疑的 反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僑胞團體 現況

在日僑胞 社會에는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민단)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가 조직되어 있다.

63) 민관식, 「在日本韓國人」, pp. 230~249.

64) 위의 책, p. 310.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내에는 300여개의 한국인 自治團體가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서로 규합하여 1945년 10월 15일 재일본 조선인 연맹(朝聯)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족하였다.⁶⁵⁾

朝聯은 동포의 귀국알선, 생활상담, 국어강습 등 교포사회 문제해결에 노력하고자 했으나, 일본 공산당원인 김천해가 최고고문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左傾化되었다.⁶⁶⁾ 朝聯이 좌경화되자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1946년 10월 3일 「재일본 조선인 거류민단」을 결성하였다.⁶⁷⁾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재일본 조선인 거류민단」은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民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재일교포의 단체로서 재발족하였다.⁶⁸⁾ 민단은 한·일 국교정상화 촉구 등 韓日 國交正常化를 통한 생활안정에 노력했으며 재일교포 북송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단은 일본내에서 한국의 체제 및 통일정책을 대변해 왔으며 서울 올림픽을 위하여 募金運動을 전개하여 90억엔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하였다.⁶⁹⁾

한편 朝聯은 폭력적 불법사건으로 1949년 9월 일본정부에

65) 백경남, “조총련의 노선과 활동,” 「안보」(서울: 동국대학교, 1990), pp. 191~195.

66) 위의 책, pp. 191~200.

67) 김상현, 「在日韓國人」, p. 92.

68)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p. 92.

69)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의해 해산되고, 1951년 1월 「재일본조총련·민족전선」(民戰)으로 재결성되었다.⁷⁰⁾ 그러나 1954년 4월 제네바회의를 계기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면서 재일교포를 北韓公民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정책을 표명하였다. 그후 1955년 5월 民戰이 해산되고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朝總聯)가 결성되었다. 이런 경위로 일본내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으로 대별되는 2개의 在日僑胞組織이 결성된 것이다.⁷¹⁾

조총련은 결성대회 이래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민족권리옹호 그리고 법적 지위향상 등을 주요 활동방침으로 채택해 왔다. 1957년 4월부터 시작된 북한에서의 教育支援資金의 송금에 의하여 교육사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1957~1984년까지 375억엔이 송금되었다.⁷²⁾ 조총련은 1959년부터 在日僑胞北送事業을 추진하였으며 1963년 10월 9일 제정된 북한의 국적법에서 “재일동포 등의 해외동포는 북한의 공민”이라고 규정한 것을 계기로 조국왕래자유 및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다.⁷³⁾

1975년부터 朝總聯은 재일교포 권익옹호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아동수당지급 및 국민연금 지급, 공

70) Swearingen Rodgen and Paul Langer, *Red Flag in Japan: International Communism in Action 1919-195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2), p. 181.

71) Yi, Yu-gan, *A Fifty-year History of the Koreans in Japan* (Tokyo: Shin-kibussan Kabushikigaisha Shuppanbu, 1960), p. 137.

72) 김상현, 「在日韓國人」, pp. 18~23.

73) 大陸研究所, 「북한법령집」, 제1권 (서울: 大陸研究所, 1990), p. 174.

공주택 입주 등에 있어서의 차별철폐운동 등에 참가하였다. 또한 지문날인제도 폐지,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의무 폐지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총련의 활동은 북한에 대한 支援活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총련의 對北韓 支援活動은 먼저 김일성의 주체사상 전파와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정치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바, 1970년대 일본 각계 각층에 주체사상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있는 團體들을 지원해 왔다.⁷⁴⁾

또한 북한에 대한 經濟的 支援은 조총련의 중요한 북한지원사업의 하나이다. 조총련은 김일성 생일, 북한창건기념일, 조총련 결성 기념일 등에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7월 平壤祝祭를 지원하기 위하여 104억엔 상당의 현금, 설비기증 및 조총련 인력동원 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금운동 외에 朝總聯은 북한의 합영법(1984)제정 이후 1986년 8월 「조선국제 합영 총회사」를 설립하고 교포 상공인과 북송 교포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合營投資를 적극 권유하여 현재까지 약 60~70건(투자총액 300억엔)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은 과학기술, 국방, 외교 등에 관련된 각종 샘플 2만여점, 과학기술도서 10만권 등을 수집하고 과학기술자 80여명을 입북시켜 技術移轉을 꾀하고 있다.⁷⁵⁾

74) 유석렬, 「남북한관계론」(서울: 정음사, 1990), p. 53.

75) 全賢俊 외, 「北韓의 對南動向分析」(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41~42.

한편 과거 1950년도에는 재일교포 중 朝總聯系가 90%였으나 제3공화국의 해외교포단체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민단체력이 확장되어 民團系가 조총련계를 능가하게 되었다. 그후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성묘단)을 계기로 민단체의 교포가 월등하게 많아졌다.

현재 일본의 70만 교포 중 ① 大韓民國의 국적을 갖는 교포가 약 53.8%이며,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海外公民인 사람들이 35.4%, ③ 한반도의 두 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0.8%(약 75,000명)로 볼 수 있다.⁷⁶⁾

그러나 현재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민단체와 조총련계의 조직활동을 제외하면 南北對決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민단체의 금융기관과 조총련계의 금융기관을 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一般僑胞들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국분단으로 인한 理念對立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데 주역을 하였던 1세들이 사라져 가고 태어날 때부터 조국이 분단된 것을 알고 일본에서 성장한 2, 3세들이 늘어나 이들을 중심으로 한 在日僑胞 社會는 바뀌어 가는 중이다.⁷⁷⁾

76) “해외교포정책간담회,” 「교포정책자료」, 제44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p. 37.

77) 「東亞日報」, 1985년 12월 14일.

라. 少數民族政策

日本은 1억 2천 5백만 국민이 모두 같은 민족에 속하는 독특한 국가라는 허구에 집착하고 있다.⁷⁸⁾ 일본은 아이누족, 오키나와인, 한국계 등을 소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들 少數民族에 대하여 다른 일본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소수민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재일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일본의 單一民族 國家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분산정책·추방정책·동화정책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分散政策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은 分散政策을 썼다. 이는 남북이 분단된 것을 계기로 분열된 민단과 조총련이라는 두 단체를 서로 대립하도록 조장해 민족 내부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分散政策은 과거 식민지 시절 조선인과 조선인, 조선인과 중국·소련·일본인과의 대립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또 조선인 사회가 형성되는 곳은 어디든 協和會를 조직하여 친일파와 반일파로 대립시켰던 정책과 같다.

더욱이 당시 재일교포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이 南北韓 政

78) Newsweek, May 3, 1993, pp. 8~13.

府 指向的이라 남북한의 정치적·사회적 동향에 따라 대립하였는데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僑胞社會의 分裂을 조장하였다.

(2) 追放政策

일본은 분산정책 이후 追放政策을 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포복송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60만명의 재일교포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민족차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북한은 教育費 送金으로 교포사회의 호감을 산 뒤,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북한을 ‘지상의 낙원’으로 선전하며 교포 복송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일본정부 및 언론 등은 人道主義를 내세워 재일교포들의 북한 귀환을 부추겼다.

(3) 同化政策

위의 분산정책, 추방정책과 병행하여 쓴 정책이 同化政策이다. 분산정책, 추방정책을 소극적인 민족통합정책으로 본다면 동화정책은 민족적 차별을 혹독하게 하여 소수민족들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드는 積極的인 少數民族 統合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소수민족들을 자신들의 문화 속에 통합시켜 왔다.

일본사회에서는 少數民族 出身으로 알려지게 되면 파혼과 취업기회 박탈을 비롯하여 주택·교육·사회보장 등에서 여러가지 차별이 뒤따른다. 특히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의 差別政策은 전세계의 한인교포들이 겪은 민족적 차별 중에서도 혹독한

것에 속한다. 주택·취업·교육·사회보장 등에서의 차별 등 在日僑胞가 일본사회에서 겪는 두껍고 구조적인 차별이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귀화를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歸化制度는 귀화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등 민족의 특성을 희생하고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동화를 요구한다.

이렇듯 일본의 귀화제도는 少數民族 不認定政策에서 출발하여 말살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귀화하여 모든 권익을 얻고 韓國系 日本人으로서 편히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소수민족에게 살지 못하도록 서러움을 주고, 그것이 싫으면 귀화하라”고 하는 日本政策下에서 귀화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민단사람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⁷⁹⁾ 日本 社會에서 숨기지 않고 다른 민족 출신자로 살아 가려면 취직, 결혼, 사회생활의 여러 면에서 끝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재일교포들에 대한 일본의 법, 제도, 정책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는 經濟大國化에 따른 일본의 국제화로 일본정부가 세계인권규약과 난민조약에 가입한 뒤 국내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재일교포단체들이 1970년대부터 일본내에서 전개하기 시작한 權益伸張運動의 결과이기도 하다.

79) 박성우, “김영삼 대통령께 거는 해외동포의 기대는 무엇인가?,” 「교포정책자료」, 제44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p. 19.

앞으로도 일본의 세계화 추세로 差別的인 制度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사회의 재일한인에 대한 민족적인 편견, 특히 재일교포가 민족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單一民族國家觀과 皇國史觀을 감안할 때 일본의 동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在日韓人の 法的 地位

일본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된 在日韓人の 法的 地位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는 1945년 패전 후부터 1952년 연합국과의 평화조약 발효 전까지 한국인의 일본국적을 허용하였으나 出入國管理法令上으로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52년 4월 28일 평화조약 발효일을 기점으로 평화조약 제 2조 a항에 의거하여 在日韓國人の 일본국적이 취소되었다.⁸⁰⁾ 이러한 재일 한국인의 국적취소 조치와 함께, 같은 날 在日韓國人の 일본체류상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의거한 외무성 관계 제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호)이 공포·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교포들에게는 불분명하고 임시적인 滯留資格이 주어졌다.

그후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간 재일한국인의 법적

80) 김상현, 「在日韓國人」, p. 330.

지위협정에 의거하여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한인과 韓日法的 地位協定 발효 후 5년 이내 출생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영주허가가 부여됨으로써 이들은 한·일간 합의에 의해 일본체류를 보장받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協定 永住權을 받은 사람은 신청기간이 지난 1974년 현재 342,366명으로서 전체의 55.7%에 달하고 있다. 이 協定永住許可者는 한국적임을 신청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한국적이 아닌 外國人登錄證上 「조선인」으로 볼 수 있다.⁸¹⁾

민단과 조총련은 1978년부터 出入國管理令에 규정하고 있는 재입국 허가제도, 잠재 거주자(밀입국자) 처우규정 및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지문날인제도 등을 人權輕視制度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등록증의 간편화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실현시켰다. 그뒤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조약」(1979) 및 「난민조약」(1981)에의 가입을 계기로 協定永住許可者를 제외한 법률 제126호 해당자 및 그 직계비속 및 대만출신자의 법적 지위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명분하에서 「출입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1)에 의해 출입국관리령을 개정하고 특례영주허가 및 영주허가 요건을 완화한 簡易永住許可制度를 설정했다.⁸²⁾

81) 위의 책, p. 336.

82) 위의 책, pp. 368~372.

마. 主要 懸案

재일교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主要 懸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北韓·日本 修交가 在日僑胞 社會에 미칠 影響

(가) 北韓·日本 修交

아직 수교협상이 재개되거나 수교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北韓·日本間 修交도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일본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 내에 북한 대사관이 설치되고 南北韓의 勢力이 경합될 것인 바,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민단계와 조총련계의 교포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 朝總聯系 僑胞의 國籍問題

북한·일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재일교포들은 북한국적을 원할 경우 北韓國籍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35.5%에 달하는 조총련계 교포들이 전부 北韓國籍을 취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북한국적을 획득한 경우 일본에서 북한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북한의 관리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일부 朝總聯系 在日僑胞의 경우 북한국적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일본으로 귀화하든가, 한국국적을 택하든지 아니면 無國籍者가 되는 방법

을 고려할 것이다.⁸³⁾

(다) 朝總聯 財産問題

최근 북한은 북한·일본 수교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주로 일본에 거주하는 北韓公民들의 공적 재산(토지, 건물)을 국유화하는 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총련 소유의 재산은 土地와 建物を 합쳐 약 5,200억엔(약 43.5억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은 일본이 북한에 지불하게 될 보상액과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하겠다.⁸⁴⁾ 그러나 日·北韓 修交 이후 북한이 조총련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조총련의 반발과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조총련의 분열 위기 및 와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北韓·日本 修交에 따른 兩國의 經濟關係

북한이 對日修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보상과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일본간의 경제교류 중 貿易·合作投資 등을 살펴보면 북한·일본간 무역의 70~80%는 조총련계와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이며 북한의 合營法 實施 이후 북한에 투자한 투자가들의 대부분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교포들이다. 따라서 북한정부

83) 1972년 일본이 중국과 수교한 후 많은 수의 在日中國人들이 귀환한 사례가 있다.

8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해외교포정책 간담회(에메럴드호텔, 1993. 2. 28).

는 일·북한간의 수교가 성립되어 經濟開放을 제한적으로라도 확대한다면,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 진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 民團과 朝總聯의 統合問題

在日僑胞 社會에는 그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주소는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이다’라는 의식이 3세, 4세 교포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대립·대결로 일관해 왔던 민단과 조총련계의 동포들이 단합·단결해 자신들의 權益增進을 위해 나아가자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在日同胞 社會는 둘로 갈라져 대립을 계속함으로써 일본인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멸시와 차별의 구실을 주어 왔다. 이런 이유로 ‘南韓과北韓’에 예속되었던 두 단체가 재일교포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재일교포 사회는 일본과 북한의 國交正常化 후 민단 對 조총련의 이데올로기 대결을 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족공동운명체로서 단결을 도모하여 民族力量을 키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同化問題

재일교포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일본에 살면서

韓民族으로서의 矜持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일본의 법률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되고, 재일한국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민족적 특성을 유지하며 市民權을 얻는 길이 있다면 재일한국인들은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同化政策은 소수민족들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교포 1세대들은 법과 제도상으로 일본인에 비해 많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民族主體性을 확보하기 위해 재일한국인으로서 영주권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교포 3, 4세대에 와서는 차츰 귀화하는 교포들이 늘고 있고 일본인과의 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同化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국의 문화를 흡수하는 것과 타종족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僑胞社會에 위기감까지 일고 있다.

한편 일본이 經濟大國化 되어감에 따라 ‘국제감각’의 결여라는 비판을 받고 일본 사회가 점차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적인 것을 확실적으로 강요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어서 在日韓國人들이 한국인으로서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환경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교포들이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民族主體性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회의 한민족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 同化僑胞 數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교포 사회에서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4) 民族教育問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在日韓國人の 취학 적령아 100명 중 약 13명만이 각각 민단계와 조총련계 민족학교에 취학하고 있다. 이중 절대 다수가 朝總聯系 學校로 민족교육면에서 조총련의 영향이 매우 큰 반면 민단계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教育內容을 보면 일본학교에서는 동화교육, 민단계에서는 남한 찬양교육, 조총련계에서는 북한 찬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在日僑胞 子女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원만한 인간교육,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포 2세들은 조국과 민족을 하나로 파악하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祖國統一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조국의 분단으로 야기된 모순이 재일교포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教育에서의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5) 法的 地位 改善問題

재일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指紋捺印制度는 1994년 1월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사진, 서명, 가족사항을 등록만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직종에 한하여 韓人 公務員을 채용하고, 학교 교사로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參政權은 아직도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참정권의 미부여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개선될 점이 많은 바, 예

를 들면 老人年金은 일본인에 준해서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철폐되지 않은 차별조항이 360여가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⁸⁵⁾

(6) 戰後 補償問題

1965년 韓日協定이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가 임시조치법으로 내국인에게는 보상을 하였으나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징용당했던 在日韓人들의 법적 지위 문제 및 미불임금 지불청구소송 문제, 정신대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3. 中 國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1) 封禁令 時期

清朝 以前 중국의 동북부지구는 만주족과 몽고 계통의 민족이 유목·어로 및 수렵을 하는 활동장소였으나, 동북의 남부지구는 일찍부터 漢族들의 개간으로 농업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청나라 초기에는 이곳을 소위 만주족의 발상지라고 하여 1668년부터 「封禁政策」을 써서 기타 민족의 이주를 금하였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豆滿江 左岸에 아침에 건

85) 박병윤, “남북 화해·교류합의서 발효를 맞이하여 남북의 교류·통일은 제일동포부터,” 「해외동포」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8), pp. 9~13.

너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남몰래 건너 가거나 봄에 와서 씨 뿌리고 가을에 와서 걷어가는 일을 반복하였으면서도 동북 땅에 정착하지는 못했다.⁸⁶⁾ 청나라에서 不法 越江者를 붙잡기만 하면 다시 쫓아내거나 심한 경우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 북방은 워낙 경작지가 적고 땅이 척박한 데다가 해마다 심한 自然災害가 들었다. 특히 己巳年(1869년) 飢饉에 빠진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의 농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中國 東北땅에 잠입할 수밖에 없었다.⁸⁷⁾

이들이 처음 정착한 지역은 몰래 숨어들어 자리잡았던 까닭에 비옥하고 살기 좋은 河口 平野 쪽이 아닌 구릉이나, 산골짜기 등이었다. 그곳에서 조선의 이주민들은 밭농사를 지었으며, 일부는 黑龍江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2) 封禁令 解除 以後

아편전쟁 이후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제국주의 세력이 동북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858년 중국과 영국은 「천진조약」을 맺어 牛莊을 상업 부두로 개방한 뒤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남부 해상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러시아도 청나

86) 심혜숙,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북한학보」, 제16집 (서울: 북한연구소, 1992), p. 154.

87) 「東亞日報」, 1992년 8월 31일.

라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리하여 滿淸 정부 통치자는 ‘移民實邊’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⁸⁸⁾ 이때 자연재해와 외국 세력들의 침략에 의해 파산당한 朝鮮 半島와 중국 산둥반도 유민들이 이 지역에 이주해 오자 청정부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변방 수비군의 軍糧問題 解決을 위해 1885년 「봉금령」 폐지를 정식으로 선포하고 이주민들의 동북 정착을 허용하였다.⁸⁹⁾ 이미 조선에서는 1883년에 서북 경략사 이윤준이 북서 6진(육진)을 시찰할 때 越江 禁止令을 폐지시켰다.⁹⁰⁾ 따라서 200여년간 봉쇄된 국경선이 열리게 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中國 東北 땅에 들어가서 개간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더욱이 淸정부가 조선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자 韓人들은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 러시아가 연변을 점령한 뒤에도 조선 정부는 조선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윤범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朝鮮人 移民事業을 수행하였다.⁹¹⁾

그후 만주지역의 철로 건설로 인한 노동자들의 흡인과 인구의 이동이 더욱 빈번하고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 시기부터 대지나 구릉에 자리 잡았던 조선인들이 水田開發로 땅도 비옥하고 灌溉 條件이 좋

88) 심혜숙,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pp. 152~153.

89) 조인제, “中國속의 韓人流移民略史,” 「교포정책자료」, 제21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4), p. 10.

90) 심혜숙,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p. 156.

91) 위의 글, pp. 156~157.

은 평원으로 이주하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인 수도 증가하였고, 상품교역·철로부설노역 등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3) 韓日合邦 以後

1910년 한일합방 이후 韓人들의 중국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는 바, 이는 일본의 대륙정책 및 이를 위한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토지약탈과 이민정책에 따라 東洋拓植株式會社の 경우 1910년부터 1925년까지 16차에 걸쳐 일본인 3만여명을 한반도에 이주시켰고, 그 결과 농토를 빼앗긴 韓人 農民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⁹²⁾ 또한 나라를 잃게되자 抗日闘士들도 건너가 산골에 자리잡고 항일단체를 조직한 뒤 군사학교를 세워 항일투사를 양성하였다. 예를 들면 1920년에 汪淸縣 이란구에 400여명, 汪淸縣 봉오동에 300명, 명월구 일대에 300여명의 항일무장대가 있었다.⁹³⁾

1930년 이후 在滿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1국 1당' 원칙에 의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중국 공산당은 동북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二重國籍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었다.⁹⁴⁾

92) 「한국일보」, 1992년 8월 30일.

93) 현규환, 「韓國流移民史(上)」(서울: 홍사단, 1980), p. 45.

94) 劑俊修, “조선족 인민들 속에서,” 「연변당사 자료통신」, 제1집 (연변: 1987), p. 48.

1931년 9.18사변 후 중국의 동북 지역은 완전히 日帝의 植民地가 되었으며 일제는 중국 침략과 만주건설을 위하여 많은 조선인을 만주에 집단 이주시켰다. 이를테면 만봉 철도선의 개통으로 경상남도의 농민들이 직접 遼寧省 興京縣으로 이주해 간 것과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延邊 安圖縣 茂朱屯로 이사해간 것 등이 좋은 예이다.

日帝는 대륙침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이민을 보내 만주 각지에 정착시켰으며, 이들 조선인들의 在滿 抗日 武裝鬪爭勢力과의 연계를 감시하는 동시에 조선족 착취의 기재로 이용하기 위한 「집단부락」과 「안전농촌」을 만들었다. 특히 1941년 일제가 太平洋戰爭을 발동한 후 「출하세」, 「양식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자 연변의 농민들은 흑룡강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黑龍江省 내의 조선인 인구는 1930년의 4만 4,463명에서 1940년에는 15만 3,35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집단부락과 안전농촌은 결과적으로 朝鮮族 集居現象을 강화하고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감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4) 1945年 以後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독립하자 獨立運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조국에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만주에서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 등 약 50만명이 韓半島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생계대책, 사회적

혼란, 38선에 의한 분단 등으로 교포들의 귀국이 중단되었으며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된 잔류 한인 150만명이 東北 3省에 집단으로 거주하며 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나. 僑胞社會 分布

(1) 中國內 民族 分布

중국은 한족, 몽고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무이족, 조선족, 만주족 등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多民族 國家이다.

1990년 중국의 전국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총인구는 11억 3,368만 2,501명이며 이중 漢族이 10억 4,248만 2,187명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며, 기타 55개의 민족인구는 9억 1,200만 314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8.1%에 불과하여 漢族 以外の 모든 민족들을 소수민족이라 하고 있다.⁹⁵⁾ 이중 在中 韓人僑胞(조선족)들은 192만여명으로 소수민족 중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며, 97%가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吉林省에 110만명(61%), 黑龍江省에 45만명(24%), 遼寧省에 23만명(12%)이 있다(<表 2-11> 참조).⁹⁶⁾

95) 최창래·주성화, 「연변인구통계: 자료회편」(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0).

96) 고현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조선족,” 「해외동포」(서울: 1993. 4), p. 17.

〈表 2-11〉 朝鮮族 人口分布 地域比例 統計

	총인구	길 립	(길립)연변	흑룡강	요 녕	내몽골	기 타
53년	1,120,405	756,026 67.48%	551,025 49.18%	231,510 20.66%	132,869 11.86%		
64년	1,339,569	886,627 64.69%	623,136 46.52%	307,591 22.96%	146,513 10.94%	18,838 1.41%	
82년	1,785,204	1,104,074 62.54%	754,567 42.77%	431,664 24.45%	198,252 11.23%	17,580 1.00%	13,654 0.79%
90년	1,920,597	1,161,964 61.54%	830,000 39.50%	452,396 23.56%	230,398 12.00%	22,641 1.18%	33,216 1.73%

資料: 김병호, “중국 조선족의 인구발전과 분포변화의 추세,” 「동아연구」(서울: 서강대동아연구소, 1992. 12), p. 248.

또한 이들을 국내 연고지와 관련하여 中國內 分布를 살펴 보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함경도 사람들은 가까운 연변·목단강 지역에, 평안도 사람들은 단동·심양지역에 정착하였고, 그 뒤를 따른 전라도·경상도 등 남쪽 이민들은 더 북쪽으로 들어가 할빈·阿城·상지·오상 지역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豆滿江·鴨綠江에 가까울수록 북한지역 출신이 많이 살고, 멀어질수록 남한 출신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수적으로 보면 함경도가 고향인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중국교포의 대부분이 北韓地域 出身이라고 할 수 있다.⁹⁷⁾

97) 「서울신문」, 1992년 10월 16일.

(2) 延邊 朝鮮族 自治州內的 朝鮮族 分布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在中僑胞들은 교포들의 집거구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조선족 자치주 1개, 자치현 1개, 자치향이 21개 있다. 延邊 朝鮮族 自治州는 한반도의 약 1/5정도의 크기로 1992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구는 2,091,260명이고, 그중 朝鮮族은 84만 5,999명으로 자치족 전체인구의 40.45%를 점하며, 漢族은 118만 6,058명으로 56.72%를 점하고 있다.⁹⁸⁾ 조선족 자치주 설립 당시에는 조선족 인구가 과반수(62%)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그 구성비가 역전되어 지금은 漢族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表 2-12〉 참조).

이러한 변화는 1958년 10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敦化縣(인구 50만중 조선족은 40%)을 귀속시킴으로써 연변자치주에 漢族의 유입이 급속히 늘었고, 또한 1962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과 1967년을 전후해 문화혁명 초기의 중국 조선족의 불안심리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중국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⁹⁹⁾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현재 延吉, 圖門, 敦化, 龍井, 琿春 등 5개 市와 和龍, 汪清, 安圖 등 3개 縣으로 편성되어 있다.

98) 「한국일보」, 1993년 1월 16일.

99) 연변당사학회 편, 「연변40년기사 1949~1989」(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89), p. 136;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表 2-12〉 延邊地區 人口의 民族別 比率變化

(단위: %, 괄호속은 인구수)

	1949년	1957년	1965년	1975년	1985년	1988년	1992년
조선족	63.36	59.10	47.32	42.24	40.53	40.70 (815,212)	40.45 (845,999)
한족	34.57	39.10	50.84	55.94	57.37	56.65 (1,134,746)	56.72 (1,134,058)
만족	1.80	1.54	1.52	1.48	1.76	2.30	
회족	0.26	0.25	0.29	0.30	0.30	0.30	
몽골족	0.01	0.01	0.02	0.03	0.03	0.04	
기타			0.01	0.01	0.01	0.0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03,043)	(2,091,260)

資料: 김응렬, “동북 삼성 조선족의 가족 구조,” 김영모 편, 「중국조선족사 회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p. 98; “중국 조선족,” 「한국일보」, 1993년 1월 16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분포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북한과 國境을 접하고 있는 연길 29만 3,622명, 도문 83만명, 돈화 23만 900명, 용릉 19만 2,000명, 훈춘시 8만 2,890명, 화룡현 14만 2,500명, 황청현 8만 9,620명 및 안도현 5만 2,900명이다.¹⁰⁰⁾

100) 박두복, 「중국내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p. 28.

이와 같이 연변을 중심으로 在中僑胞들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온 데는 한인들의 민족의식·짧은 이민사·소수 민족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自力更生 政策으로 지역간의 교류와 주민의 지역 이동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민족적 특성을 고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재중교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集居區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 延邊 朝鮮族의 教育水準 및 就業構造

在中僑胞들의 문화수준과 교육수준은 중국사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2-13〉 참조). 이는 우리 교포들이 교육열의가 높아 이민 초기부터 民族學校를 설립하였으며 중국에서 제일 먼저 9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 현재 조선족 소학교(국민학교) 1,363개, 중등학교 288개로 학생 총수는 35만 5천명이며 조선족 아동 85% 이상이 民族學校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있다. 1949년 4월 현지 교포들이 민족대학인 연변대학을 자력으로 세움으로써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民族教育體系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지식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技術教育은 빈약한 편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韓民族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 문화교육수준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취업구조를 보면 농·임·목·어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7.59%로 중국 전체의 평균

〈表 2-13〉 教育水準 比較

(단위: %)

	조 선 족	중국평균
대 졸	1.66	0.5
대 재	0.52	0.18
고 졸	20.42	7.78
중 졸	34.16	20.03
소 학교졸업	31.70	39.94
문맹이나 반문맹	11.54	31.57

資料: 김광세·박양춘, “中國朝鮮族 人口發展, 人口構成及其特徵,” 「朝鮮族 研究論總(二)」(연길: 연변대학민족연구소, 1989), pp. 252~253.

수준(71.98%)보다 낮은 반면, 專門 技術職에 종사하는 비율은 15.4%로 중국 평균 7.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앙 국가기관·중국공산당·각급 대학단체·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朝鮮族은 27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의사·교원·경제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으나 이에 비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人材는 부족한 편이다.¹⁰¹⁾ 최근 들어 서비스업, 무역, 비즈니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이 늘고 있다. 특히 韓·中 修交 이후 양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韓人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가족위주의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이며 중

101) 김광세·박양춘, “中國朝鮮族 人口發展, 人口構成及其特徵,” 「朝鮮族 研究論總(二)」(연길: 연변대학민족연구소, 1989), pp. 252~253; 심혜숙,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pp. 253~254.

국인 사업가들과의 교류에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많은 韓人들은 전통적으로 장사꾼에 대한 경멸의식이 있어서 선뜻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 個人事業을 시작한 경우에도 시장경제, 경영,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民族的인 經濟力을 형성치 못하고 있다.

또한 1978년 이후 중국이 閉鎖的 自力更生政策에서 탈피,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에 따라 중국사회의 유동성은 늘게 되고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東北 3省 地域 한인들의 타지역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991년 중국 省別 所得分布를 보면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1인당 GNP가 300달러 이하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요녕성의 1인당 GNP는 301~400달러로 중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¹⁰²⁾ 따라서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을 가진 在中僑胞들의 도시 진출과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흑룡강성의 한 농촌의 경우 160가구 중 1992년 8월 현재 농사를 짓는 가구는 25%인 40가구이며 마을 전체 논답의 2/3가 漢族에게 팔리는 등 韓人農村社會가 고령화되고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¹⁰³⁾

102) 「中央日報」, 1993년 9월 14일.

103) 「한국일보」, 1992년 9월 19일.

다. 僑胞性向 및 僑胞社會 實態

(1) 民族意識

移住 1·2世들은 만주를 개척했다는 강한 자부심과 항일투쟁 등으로 한민족이라는 뿌리 의식이 강하며 이러한 민족의식은 재중 한인사회의 民族共同體 形成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5년 중국 동북 각 지역의 항일인사들이 동북 조선족 거주지에 삼의, 정의, 신민 등 3부를 설치하여 일정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自治政策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항일투쟁을 벌였다. 그 당시 조선족의 반일 감정은 매우 강했는데 이는 만주 이주 전이나 이주 후의 비참한 생활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植民地 政策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에 거주하던 조선족의 95% 이상이 항일투쟁에 나섰으며, 연변지구의 항일열사만도 2,700명에 달했다. 이러한 抗日鬪爭活動에 대하여 재중한인들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⁰⁴⁾

또한 이들은 中國 內戰時期에는 중국 해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연변 6개현에서 중공군 참가자는 51만명에 달했는데 이중 85%가 조선족이었다. 해방후 中國僑胞社會가 분열되지 않고 모두 중공군에 합세하게 된 것은 중국에 남아있던 한인들 대부분이 소작농민들이었고 농민들에게는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共產黨의 政策

104)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이 주효하였기 때문이다. 혁명후 농민들이 바라던 대로 농토를 무상으로 배분받게 되었으며 배분의 전제로 中國國籍을 요구하자 중국 조선족의 99% 이상이 중국으로 귀화하게 되었다.

그후 1949년 중공정권 수립 이후 이러한 공로와 중국의少數民族政策에 의해 자치기관을 설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학교, 언론사, 방송사, 출판사를 설립하여 韓民族의 傳統文化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로써 재중교포들은 자신들이 조선족임을 자랑스러워 하며 ‘우리’라는 共同體 意識이 다른 어느 해외교포들보다도 각별하다. 또한 민족언어와 사회관습을 지키고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줄다리기, 그네뛰기 등 고유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민족고유의 노래와 춤을 즐기는 풍습과 전통을 지켜가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타민족과의 결혼을 피함으로써 民族的 同質性을 유지하여 왔다. 그동안 서구문화로 인해 많이 변화된 우리 문화와 비교해 볼 때 남한에서는 이미 변질되고 사라졌는데 재중 한인들은 이주 당시의 한반도 문화 특히 下層文化를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다른 지역의 교포와 마찬가지로 在中韓人들의 강렬한 민족의식은 이민세대가 3, 4, 5세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母國人과 중국교포 간의 불신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 二重 正體性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토지를 주고 자치권을 행사하게 해 준 中國政府에 대해서 중국 조선족은 상당수가 「조국은 중국, 고국은 조선(남북한)」이라는 2重 國家意識을 갖게 되었다. 중국 교포들의 의식에는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조국은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

이러한 二重 正體性은 중국사회에서의 조선족이 갖는 특수한 위치에서 일부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고 越境民族이며 그들을 가난과 지주의 착취에서 구해준 것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믿기 때문에 중국정부에 충성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여건은 朝鮮族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국정부에 충성하는 태도를 갖도록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中國僑胞를 보는 시각에 많은 혼란이 생겨 중국교포를 중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가 우리 국민으로 보려는 견해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두 見解는 다 각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¹⁰⁵⁾

105) 「한국일보」, 1992년 9월 5일.

(가) 中國僑胞들을 中國人으로 보는 見解

중국교포들이 자신들을 ‘우리 중국인’이라고 칭하고 교포라고 불리우는데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중국을 조국이라고 보는 二重 正體性에 따라서 재중교포를 중국 국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견해이다. 中國을 祖國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 입장과 문화혁명 당시 소수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면도 있다. 특히 文化革命을 겪으면서 남을 믿지않고, 남의 눈치를 보고,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중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한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강한 民族的 自負心이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 中國僑胞를 우리 國民으로 보는 見解

또한 민족적인 면만 보아서 中國僑胞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려는 견해도 위험하다. 중국교포들을 우리의 국민으로 여길 때 舊소련 해체후 민족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진 중국 당국을 자극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우리 국토에서 함께 살 수 없는 中國僑胞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僑胞들은 자신들을 중국에 시집간 딸로 비유하여 시집간 중국의 법을 잘 지키며 시집사람으로 여기게 행동하되 친정인 한국은 잊어서는 안되고 또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中國僑胞를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펴 중국에 영향력있는 민족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문화적 지원을 하되, 중국당국과 漢族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3) 統一意識

한국일보사가 韓·中修交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40주년을 맞아 20세 이상의 중국 조선족 1백명(남자 49 여자 51)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 100%가 朝鮮族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역시 100%가 南北統一을 원한다고 밝히고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5%가 10년내로 전망했다.¹⁰⁶⁾

朝鮮族 3世代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이 고향이지만 1, 2세대의 경우 대부분이 한반도가 고향이며 한반도가 통일되면 더 부강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중국사회에서의 지위도 향상되리라 생각하기에 祖國의 統一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 이후 경제를 비롯한 당면 생활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포들이 현시점에서 통일에 커다란 영향력을

106) “조선족임이 자랑스럽다,” 「해외동포」(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1), pp. 68~69.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現地 專門家의 견해이다.¹⁰⁷⁾

따라서 이들이 삶의 여유를 갖게 될 때 民族統一에 대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현지 전문가는 중국교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思考의 整備을 위한 7~8년 가량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¹⁰⁸⁾

(4) 中國 韓人僑胞들의 南北韓訪問과 南北韓에 대한 認識

(가) 南韓

남한으로의 방문이 실현되기 이전 在中韓人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訪問 以後 남한에 대해 매우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조국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自矜心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남한에 가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에 대해 51%가 부정, 18%가 무응답 또는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否定의 주된 이유는 남한의 제도와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중국이 좋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많았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교포들의 永住歸國意思是 13%에 불과하며 이들의 남한에 대한 희망은 남북통일을 이룰 것과 세계의 강국이 되어줄 것 및 남한방문을 쉽게 해줄 것 등

107)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108)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이다. 그러나 南韓政府는 중국교포들의 영주 귀국을 허용하면 대거 귀국하리라고 가정하고 있어 무국적의 교포인 경우 在外 國民登錄을 필하면 남한 국민이 되므로 영구 귀국할 수 있어야 하는 데도 독립유공자에 한하여 국적 회복과 영주 귀국을 허용하고 있어 中國僑胞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제 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사라진 대신 中國僑胞들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남한에서 온 방문자들이 중국교포들의 물질적 욕구를 높이고 과소비를 부추겼다고 한다. 在中僑胞들의 모국방문 소감 변화를 보면 “어마어마 하더라”(1985), “서울사람은 정말 깝쟁이들이야”(1989), “한국사람들 혼내줘야겠어”(1992)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¹⁰⁹⁾ 이는 교포들이 母國訪問에 걸었던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많은 중국교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교류도 활발해지나 南韓訪問 후에는 불만을 느끼는 수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나) 北韓

1·2世代 在中韓人들의 고향이 대부분 북쪽인 까닭에 1·2세대 뿐만 아니라 3세대들도 심정적으로는 북한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중한일들은 朝鮮語 文法은 물론 문학, 예술, 의식주 등 생활양식에서 북한 것을 답습하였다. 중국교포

109) 립 연 외, 「서울바람」(서울: 박물서관, 1992).

들의 북한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8.15광복 이후 1949년까지는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했고¹¹⁰⁾ 韓國戰爭이 끝난 1953년부터 자유로운 왕래가 재개되었다. 1962년을 전후한 중국의 자연재해와 3대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중국내의 생활이 피폐해짐에 따라 中國僑胞들이 당시 생활수준이 중국보다 훨씬 높은 북한으로 이주하였다.¹¹¹⁾ 그러나 1966년 5월 이후부터는 문화혁명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왕래가 중단되었으며 1978년 5월 朱恩來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교류가 재개되었다. 이 당시의 교류는 중국에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문화혁명기, 1957년 당파투쟁기에 北韓으로 건너가 가정을 이룬 뒤 재차 중국으로 건너온 ‘교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본격적인 民間次元의 왕래가 이루어져 거의 모든 조선족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¹¹²⁾ 이 시기는 중국의 개혁·개방 붐과 시세차익을 통해 이득을 남기는 소위 ‘보따리 장사’에 의한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民間次元의 북한과의 교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소강상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측 세관의 통제강화, 둘째, 북한을 상대로 한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한국과의 接觸 擴大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110) 연변당사학회 편, 「연변40년기사 1949~1989」, p. 3~5.

111)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112) 「한국일보」, 1993년 2월 6일.

방문했던 교포들은 북한의 식량난, 통신, 교통, 정치적 긴장감과 부자유 등을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지적했고 북한에 대한 희망은 개혁·개방을 통한 經濟發展과 南北統一로 집약되었다.

1980년 초까지 재중한국인들은 북한 사람에 대해 강한 民族的 同質意識을 느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재중한국인들의 남한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남한 사람에 대해 民族的 同質性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국교포들의 남북한에 대한 인식은 중립적이며 중국교포들 중에는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많아 남북한관계의 仲介者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라. 少數民族政策

중국의 少數民族政策은 민족자치로 대변되는 우대정치이고, 그 주요 내용은 중국 정부가 정치·경제분야에서 보다는 文化的인 自治(언어, 종교, 풍습등)를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¹¹³⁾ 그러나 소수민족의 정치활동과 충성을 동원하는 통합을 위해서 多元主義 接近策 또는 同化政策을 택하고 있다. 多元主義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며, 同化政策은 소수민족을 다수민족의 특성에 흡수시키는 곧 소수민족의 집단으로서의 존재를 없애

113) 최의철, 「중국교포사회와의 교류 및 지원방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9), p. 18.

는 것을 뜻한다.¹¹⁴⁾

현재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해서 多元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의 문화혁명시 조선족 민족지도자를 처형하고, 民族語 지도기관·연구기관을 해체하고, 민족잡지 등을 폐간하였다.¹¹⁵⁾ 또한 한인교포들은 조선족 자치지역에서의 각급 정부와 인민단체의 二重言語制度는 폐지하고 漢語만 사용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동화정책이 강요되었던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는 조선족만이 겪었던 경험이 아니라 중국내 소수민족들이 다 겪었던 것이었는데 그후 중국 정부는 문화혁명시 야기되었던 중국 정부와 漢族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불신감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漢族들의 저항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개발 및 자원개발 문제 등이 민족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아직 民族問題는 티베트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수민족의 자치요구에 中央政府의 政策이 부응하지 못할 때는 위의 갈등 요인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少數民族政策에서 자치의 개념은 「모든 민

114) 박두복, 「중국내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p. 60.

115) 연변당사학회 편, 「연변40년기사 1949~1989」, pp. 233~346.

족은 중국의 공민」이라는 대전제가 바탕이 된 것으로서 자결권을 갖는 主權自治가 아니라 중국정부로부터 위임된 제한된 업무를 관할하는 行政自治의 성격을 띠고 있다.¹¹⁶⁾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치에서는 民族自治가 민족독립이나 분리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해가는 데는 분명하고 엄격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마. 主要 懸案

(1) 在中僑胞의 韓國訪問 및 不法滯留問題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자, 在中僑胞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고 싶어하며 방한하지 못한 교포들은 의기소침해지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또한 中國政府에서도 예전과 달리 한국에 1년 내지 1년반 정도 체류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외국을 나가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韓國의 경우는 쉽게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1984년 한국 방문이 시작된 후 1984년부터 1992년 10월까지 在中 韓國僑胞 26만 6천명이 입국했다. 1992년 6월 한약재 파동 등 사회문제로 남한정부가 입국요건을 강화하여, 현재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1992년 8월 실시한 不法滯留 外國人 자진신고 기간 중 약 2만 2천명의

116) Thomas Heberer,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r Assimilation* (Armonk: An East Gate Book M. E. Sharpe Inc., 1989), pp. 40~43.

중국교포가 신고하였고 현재에도 매주 1~2천명이 인천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¹¹⁷⁾ 따라서 이들의 불법체류 및 취업, 한약재 판매 등이 계속 社會問題로 남아 있다.

(2) 民族教育問題

(가) 朝鮮語教育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심하던 시절에도 민족의 언어를 지켰던 중국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二重言語(조선어, 한어) 사용집단으로서 二重言語 교육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다.

1952년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후 한글 전용을 선포하고, 교과서에 한자폐지를 결정하였으며 1954년 공포된 중국헌법에 의하여 조선어가 延邊 公用語로 채택됨으로써 조선어 사용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했다.¹¹⁸⁾ 그후 1962년 朱恩來가 “중국의 조선말은 평양말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시하여 중국 한인들의 말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6년 文化革命 期間에 조선어 연구와 교육이 중단되었고 그 여파로 1980년 7월 연변의 4개 조선족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韓國語로 편

117) 「한국일보」, 1992년 12월 12일; 김호순, “해륙풍에 실린 조선족의 눈물: 중국 한인사회를 뒤흔든 방한 열풍 취재기,” 「세계와 나」(서울: 세계일보사, 1991), pp. 162~177.

118) 「한국일보」, 1992년 10월 31일.

지를 제대로 못쓰는 학생이 30%에 달했다.¹¹⁹⁾ 뿐만 아니라 1957년 이전에는 모든 학교와 적지 않은 기관과 공장에서 조선어를 주로 사용했었으나, 「문화혁명」기간 중 漢語만을 사용한 후 지금도 농촌, 중·소학교, 조선어문연구기관, 조선말언론기관을 제외하면 모두 漢語를 주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조선족 자치주내 민족인구 구성비율이 1952년 62%에서 1992년 40.6%로 감소되었고, ② 조선족의 漢語 구사 수준이 높아져 일상 생활에 한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③ 연변을 제외한 도시에서 조선족이 모여 사는 集居地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변동에 따라 재중교포들의 교육조건, 특히 母國語 教育條件이 한족들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우선 재중 한인사회에는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教職에서 이탈하여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¹²⁰⁾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진출한 在中僑胞들의 대다수는 20~40대로 대도시에서 유흥음식업소나 관광여행사 등에 취업하고 있고 자녀들을 漢族學校에 보내고 있어 2세들이 모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사회의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119) 조성일, “중국조선족의 이중언어생활과 교육,” 「교포정책자료」, 제43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 21.

120) 연변자치주내 계동현의 중·소학교에서는 1991년초부터 1992년 10월까지 28명의 교원이 교직을 버리고 남방경제특구로 가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992년 10월 10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英語教育까지 하다보니 세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어,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민족어를 배우지 못했던 세대처럼 지금 자라는 세대들도 母國語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¹²¹⁾

(나) 民族教育 興件

중국에서의 民族教育이란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소수민족이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재중 한인사회의 民族教育은 교육이념이나 내용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語文 教科書는 조선어로 편찬되어 있으나 주제나 표현 방식은 당연히 중국 사회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특히 歷史 教科書의 경우, 중국의 교과서를 대부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중 한인교포들의 교육 내용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한 예로 朝鮮史를 1957년까지 가르쳤는데 문화혁명시기에 이것이 제외되었으며, 지금은 세계사 등 아시아사 부분에서 조금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학교 및 중학교용 「中國朝鮮史」를 관계기관에서 집필하고 있다고 한다.

121) 흑룡강성 하얼빈 제2조선중의 조선어문 담당교원 최송원씨는 우리말 가르치가 외국어 가르치는 결과와 같다고 말하며 4백명 중 70%가 전혀 우리말을 모르고 학생들이 우리말로 물어보면 중국어로 답한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2년 10월 10일.

중국정부는 최근 국가의 전면 지원에 의한 教育政策에서 탈피, 각급 사립학교의 설립 허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변자치주에 공과대학이 한국민간단체 및 해외교포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技術大學의 교육제도가 미국 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있어, 졸업 후 중국기업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¹²²⁾

(다) 民族文化 研究支援

民族文化 復元과 관련하여 역사문물·민속유물 등의 발굴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학계에서 발해사·간도 연구 등 과거 단절된 상황에서 중단되었던 연구와 학술활동 등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渤海史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와 중국의 입장간에 미묘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해사 연구를 中國史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재중 한인사회의 이민 3·4세대의 역사관을 동요시킬 수 있어서 중국정부나 중국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 및 자료발굴을 위한 在中韓人들의 참여가 문제되고 있다.

(3) 中國僑胞社會의 解體 問題

延邊 朝鮮族 自治州를 중심으로 한 재중한인사회의 공동체 유지와 발전이 어려워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

122) 임희준 민족학연구실장과의 인터뷰.

로의 중국 사회변동에 따라 우수한 韓人 人材의 유출현상이나 중국사회로의 동화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내 다른 민족에 비해 在中韓人들의 교육·문화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연변 등 한인 집중 거주지역이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계속 낙후될 경우, 타지역으로의 移住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조선족들의 이농, 도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민족문화의 근거지였던 朝鮮族 居住 農村社會는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우리말과 글, 그리고 문화의 보급원인 朝鮮族 學校들의 폐교가 잇따르고 있어 조선족 문화쇠퇴 내지 단절현상이 우려된다. 또한 최근 들어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로 진출한 在中韓人들의 혼인문제, 민족동화문제, 민족불화, 자녀교육문제, 생활보장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4) 經濟發展問題

1993년 중국의 都·農間 所得隔差는 약 2.7배이고, 농촌 지역의 소득증가율은 도시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사실 도·농간 소득격차는 근대화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겪는 통과의례라 볼 수 있는데도 중국에서는 社會不安 要因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개발이 늦은 농촌지역이 대부분 소수민족 거주지역이어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民族問題와 결합되어 상승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 교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중국 평균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던 韓人들이 경제혼란과 심각한 빈부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豆滿江地域 開發事業을 추진중인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고·일본 등과 협력하여, 吉林省內 두만강 삼각주지역의 3백km² 면적에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로 상업, 금융, 무역, 정보,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는 現代的 都市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최근 화교들도 동북 3성에 진출하여 각종사업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교포들은 그동안 지켜온 우리 민족의 空間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의하여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¹²³⁾

4. 獨立國家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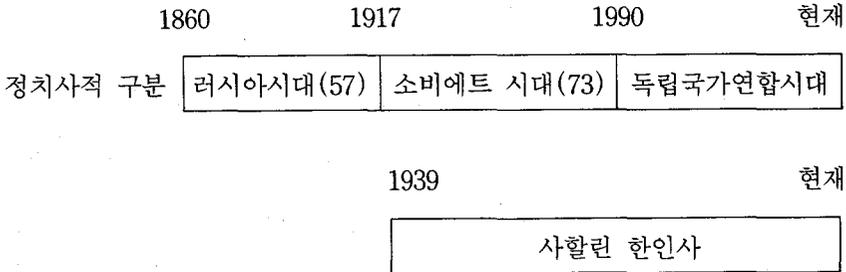
가. 僑胞社會 形成過程

독립국가연합 韓人僑胞의¹²⁴⁾ 歷史는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130년에 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지역의 韓族

123) 「세계일보」, 1993년 8월 12일.

124) 蘇聯邦이 해체되기 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한글출판물(레닌기치)에서는 중앙아시아 한인들을 “소련조선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본고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국가연합 한인교포로 한다.

〈그림 1〉 蘇聯 韓族史의 時代(段階) 區分



史는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을 기준으로 韓族 러시아時代 57년사(1860~1917)와 한족 소비에트시대 73년사(1917~1990) 및 그 후 독립국가연합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전혀 다른 동기, 즉 일본의 한국청년 強制徵用政策의 결과로 생긴 사할린 한족의 역사를 덧붙여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시기 구분은 〈그림 1〉과 같다.¹²⁵⁾

(1) 러시아 時代

帝政 러시아는 1856년 「애훈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차지하였고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한인들의 沿海州¹²⁶⁾ 移住는 이들 조약 체결 이후인 1863년 겨울, 조선인 농민 14가구가 노보고르드

125) 정태수, “러시아의 在蘇韓人政策과 蘇聯韓族의 民族文化權,” 「교포정책자료」, 제40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 110.

126) 연해주라함은 아무르강을 경계로 우수르강과 태평양연안 사이의 땅을 보통 일컫는다. 또한 이 주변의 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해 “원동”이라는 명칭이 중앙아시아 한인들 사이에 사용된다.

에 정착한 것이 효서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¹²⁷⁾ 러시아 측은 초기 韓族 移住를 환영하였다. 사실 제정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의 광대한 새 영토에 러시아 식민을 위하여 1850년대 말부터 러시아인의 東方移住政策을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러시아 측은 한인 농부의 근면성을 알게 되고 한인들이 凍土 開墾農業을 일으켜 곡식과 채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韓人 移民을 환영하였다. 실제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석탄산업 노동자 중 74%, 채금산업 노동자 중 37%가 한인이었다.¹²⁸⁾

1884년 朝·露間 國交가 수립되면서 노령 한인의 신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조·러 수호통상조약(1884. 6. 25)의 체결에 이은 「한인이주조약」과 각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露領 韓人은 3종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처우를 받았다. 즉 1884년 6월 25일 이전의 노령 어주 한인은 第1種이라 하여 러시아 국적을 부여받고 러시아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토지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의 이주자는 第2種이라 하여 재류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여권을 소지할 의무를 부과받았다. 그리고 단순히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한인은 第3種이라 하여 매년 5 루블씩의 旅券稅를 납부케 되었다.¹²⁹⁾ 이때부터 러시아 내의

127)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 21.

128) 벨라 박, “在露 韓人의 運命,” 「세계 속의 한민족」(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 45.

129) 김승화, 「소비에트 한인사 개관」(알마아타: 1965), p. 55.

한인사회는 지주와 조작농 등 계층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30년 프로토타비아 혁명의 일환으로 地主를 추방할 때 한인지주들도 러시아의 각지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다.¹³⁰⁾

조약체결 이후 不法移住者에 대한 규제가 심했으나 한인의 이주는 계속 늘어났고 1910년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러시아 市民權을 취득하는 한인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초기 한인에 대한 러시아의 통치제도는 老翁制度가 근간을 이루었다. 이 제도는 중국의 村制에 준해 러시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주민 자치제도로써 러시아 관헌은 치안업무를 한인촌의 차치에 맡겼다. 즉 일차적으로 都老翁에게 한인 향에 대한 형벌권을 위임하고 도노야는 村老翁에게 징벌집행권을 위임하여 한인사회의 질서를 차차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1910년에는 남부 우수리 지방에서만 104개에 달하는 韓人部落이 형성되었고 이 부락들에서는 한인에 의한 부분자치가 실시되었다.¹³¹⁾ 조선에서 애국지사들이 러시아로 망명해 오면서 在러시아 韓人社會에 대한 문화계몽사업이 활발해져 한인들은 민족적 긍지와 고유한 풍습을 지키며 살아왔다. 예

130) 이광규, 「재소환인탐방기」, 『교포정책자료』, 제43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p. 73. 1905년에는 小作農이 조선인의 30% 정도였으나, 1910년에는 70%, 1917년에는 거의 90%에 달했다. 이들은 조선인 부농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러시아노동자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 같은 내부 분열과 민족적 차별은 제정러시아의 對韓人政策이기도 하였다.

131) 벨라 박, “재러 한인운명,” p. 45.

를들면 이 당시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자치촌인 ‘新韓村’에는 교포들이 계동학교를 비롯한 한글학교를 세우고 해로신문·대동공보 등의 한글신문과 대한정교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초기 自治組織은 1918년 일본군의 시베리아침공 당시 까지 지속되었다.¹³²⁾

(2) 소비에트 時代

(가) 沿海州 時代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은 韓人社會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17년 전까지의 러시아의 한인들 대부분은 조국독립운동에 관심이 높았고 조선인프로레타리아는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기에 10月革命에 참여한 한인의 수는 극히 적었다.¹³³⁾ 그 후 1918년 4월 이동휘 등 한인들이 하바롭스크에 모여 韓人社會黨을 구성하는 등 한인사회에도 공산주의 조직이 생겨났으나 밖으로부터의 테러, 내부분열 등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¹³⁴⁾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 당시 일본·영국·미국·이탈리아 등 聯合國은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여 시베리아에 출병하였다. 이때 제4차 극동소비에트 총회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을

132) 현규환, “재소 한국인의 사적고찰,” 「교포정책자료」, 제13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2), pp. 155~156.

133) 미쯔베이 쯔모피예비치 지음, 이준성 옮김,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서울: 역사비평사, 1990), p. 63.

134)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 (서울: 공보부, 1968), pp. 17~19.

채택하여 모든 외국인 거주민도 土地所有權과 土地分配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소작을 위한 토지임대는 금지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받게 된 韓人들은 자발적으로 신생 소비에트 공화국의 방어를 위해 빨치산 운동에 참가하고 그때까지 미흡했던 한인사회의 共產主義 組織을 강화해 나갔다.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을 강점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블쉐비키군이 니콜라예프스크항을 공격하여 일인들을 살해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니콜라예프스크항의 공격에 韓人들이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한촌을 파괴하고 한인 3백명을 체포하여 국민학교 건물에 가두어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한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였다.¹³⁵⁾ 1918년부터 1922년까지 10,000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일본 및 백군에 대항하여 투쟁을 벌이다 희생당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소련의 영토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1921년 自由市事件이 발생하였다. 극동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인부대들이 자유시 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들을 재편성하던 중에 자유부대·사하린부대·독립군간의 충돌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소련군은 韓人部隊를 포위하고 사살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망하였다.¹³⁶⁾

135) 미쯔베이 쯔모피예비치,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p. 76.

136)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pp. 38~40. 자유시(Svobodnyj) 사변은 흑하사변이라고도 불리운다. 1920~1921년 많은 독립투사들은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만주로부터 시베리아로 넘어갔다. 러시아 공산정권은 이들을

1922년 12월 30일 연해주가 소련방에 포함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에트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소비에트와 지역소비에트가 구성되자 1925년 한인 대부분이 市民權을 얻는 등 이에 적응해 나갔다.¹³⁷⁾

한인들의 自治單位로는 제일 먼저 농촌소비에트 조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927년 10월에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해삼위, 아무르, 하바로프스크 등 세 지역에서 순수 한인 소비에트가 135개, 다른 민족과의 혼성 소비에트가 35개로 집계되었다.¹³⁸⁾

한인 소비에트를 포함해 한인의 민족구역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부츠크(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당시의 행정부)의 1927년 8월 29일 결정이었다.¹³⁹⁾ 決定事項 제1항은 “농촌소비에트를 작은 단위로 세분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한

환영했는데, 그들의 속셈은 독립국을 白軍 및 日本과의 싸움에 이용하고 한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나중에 그들의 전위부대로 이용하자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獨立軍과 極東共和國 사이에 독립군에게 군사양성에 필요한 원조를 준다는 협약이 1921년 2월 성립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22일 갑자기 자유시에 있는 대한독립군에게 즉시 무기를 내놓으라는 통고가 왔다. 이는 레닌이 지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다(『세계일보』, 1993. 8. 24. p. 4). 독립군 측은 러시아측과 교섭을 하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독립군 측은 무장 항거해 참변을 빚어냈다. 러시아측은 대부대로 공격해 와 독립군 측은 전사자 3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여명, 포로 917명의 희생자를 내고 나머지는 북만주로 돌아 왔다. 이 사건이 자유시사변인데, 그 발단을 自由大隊와 사카린부대 사이의 충돌로 보고 있다.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 p. 19.

137)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p. 43.

138) “소련, 연해주에 한인 ‘민족구역’ 인정,” 『시사저널』, 1993. 10. 28, p. 83.

139) 『시사저널』, 1993. 10. 28, p. 83.

인들의 민족적, 행정적 단위(농촌 소비에트나 구역집행위원회)를 조성할 필요성을 직시해, 그들의 고유언어로 사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 사항을 근거로 民族區域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1928년 8, 9월경이다.¹⁴⁰⁾ 1927년 10월 1일부터 1928년 10월 1일까지 조사한 「極東地域 少數民族들의 關係에 대한 報告」에 의하면 극동지방에는 155개의 완전한 민족적 소비에트가 있으며 이중 137개가 高麗人들의 것이고 3개의 민족구역집행위원회 중 1개가 고려인들 것이다.¹⁴¹⁾ 1935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극동 연해주에 존재하고 있는 民族區域 81개 중 2개 구역은 고려인의 민족구역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1928년 포시에트지역에 형성된 것이고, 또 하나는 1935년 수찬지역에 형성된 것이다.¹⁴²⁾

재소 한인사회가 民族的 自治區域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한인들에 의한 최초의 자치공화국 건설운동이 1923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봄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재러·재만·재일·재미 그리고 한국내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망라된 國民大會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연해주에서의 자치공화국 건립운동이 태동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고려공산당 당수 李東輝 등 在蘇韓人들은 소비에트 공화국연방 헌법의 “지방주민 6할의

140) 남, 스페틀라나 박사와의 인터뷰.

141) 「시사저널」, 1993. 10. 28, p. 83.

142) 남, 스페틀라나 박사와의 인터뷰.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공화국을 조직하여 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자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해주 지역을 선택하여 한인 중심의 새 自治共和國을 만들기로 하였다.¹⁴³⁾ 이들은 자치공화국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방 유지의 찬성을 얻고 위원을 선정하고 우선 정부 당국의 內意를 살펴 보았으나 정부에서는 러시아령 한인은 아직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공화국 설립을 거절하였다. 당시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 대부분이 文盲者였을 뿐 아니라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소비에트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고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적었던 것이 거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在蘇 韓人들은 분석하였다.

그뒤 1928년 비로비잔(Birobidzhan)에 유태인 자치구를 수립한다는 소련정부의 결정에 자극받은 한인들은 일본·조선·미국 등지의 동포들에게 檄文을 보내고 그해 3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70~80명의 대표들이 모여 고려공화국 籌備委員會를 열어 협의한 결과 극동고려인공화국(Far East Korean People's Republic) 건설 請願書를 제출했다. 첫번째 자치주 설립 신청시와는 달리 러시아 혁명기에 러시아인 다음가는 전투공적을 이룩했기에 소비에트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유태인 못지않게 自治州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143) 허진·이 브라디미르, “소련속의 한인들--비극의 재생 1,” 『안전보장』(서울: 시사, 1990), pp. 74~77.

였다.¹⁴⁴⁾ 그러나 1929년 8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는 또다시 거절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 자치구의 꿈은 깨어진 채 아시아의 한인들은 380여개의 韓人學校를 개설하고 4개의 한인극장과 7종의 한인신문 및 잡지를 간행하는 등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1924년 레닌 사망 이후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이 중앙에서부터 레닌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 중반에는 極東地方에도 정치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35~1937년 사이에 9천명 이상의 한인들이 숙청되었다.

(나) 中央아시아 時代

1937년 9월부터 12월까지 극동 러시아 연혹룡강 지방에 살고 있던 약 18만명(20만명 설도 있다)의 在蘇 한인교포들은 강제로 중앙아시아 불모지 10여개 지역에 분산·배치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¹⁴⁵⁾에서 밝혀진 強制措置의 사유는 첫째, 극동러시아령의 한인은 러시아 동방의 안전보장에 해로운 존재, 즉 일본이 한인을 對蘇 첩보원으로 활용할 소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한 러·일간의 분쟁 소지 등을 안고 있는 존재라는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지도층의 인식이 동기가 되었다고

144) M.A. 베르시즈, 「10월혁명 10주년과 소비에트 고려민족」(블라디보스토크: 1927), p. 46.

145) “발굴비사, 한·러관계 1세기,” 「한국일보」, 1992. 11. 1; “한·러 근대사비사,” 「동아일보」, 1993. 1. 20.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이 분야의 구소련 정부문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곧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오리라 본다.

볼 수 있다. 특히 1931년 滿洲事變 이후 극동정세는 매우 긴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재러한인들의 이주 77년사를 통해 볼 때 고국에서 먼 곳은 同化가 잘 진행되나 고국에 가까울수록 동화속도가 느려 한인의 露化政策 수행상 원격지에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해주 중심으로 「고려공화국」 자치운동 선례도 있는데 만약 연해주에서 자치령이 생기거나 나아가 獨立國으로 발전하는 경우 블라디보스톡항을 비롯한 소련의 태평양 출구를 봉쇄당할 뿐 아니라 韓·中·日·러 등 4국의 요충지에 통제 불가능한 독립국 또는 준독립국이 생긴다는 것은 소련의 큰 불이익이므로, 소련 韓族自治의 영토를 없애야 한다는 데 착안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한인을 10여 지역에 분산 배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부분은 최근에 또 다시 일고 있는 연해주 자치주 설립 움직임에 중요한 示唆點을 남기고 있다.

넷째, 재소 한인들의 성공적인 연해주지역 농장건설의 경험을 살려 중앙아시아 荒蕪地 開發에 활용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한인들은 초원과 습윤지에서는 쌀농사를, 사막과 황무지에서는 밭농사를 성공시켜 集團農場 開拓과 농업기술개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한인들의 強制移住 조치의 결과로 소련정부는 그들의 전통

적 한인정책이었던 러시아화 정책, 분할·분산 통치책, 러시아인에 의한 태평양 연안 점유정책, 대일본 분쟁예방정책, 少數民族自治 沮止政策, 미개간지 개척정책, 본국과의 격리 정책 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소련 한인교포들은 강제이주로 인해 의식주의 기초 생활은 겨우 해결되었으나 민족문화의 독창성 및 民族的 自意識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조국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전통적 민족문화의 교류와 공급의 기회를 잃고 타민족속에 극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교포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1954년까지는 이주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었다.¹⁴⁶⁾

강제이주 당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現地人들로부터 생존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그후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현지인들과 상호보완적인 協助體制를 유지하면서 살아 왔다. 한인들은 고유의 근면성으로 이곳에서도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벼 재배기술을 전파하여 地域 經濟發展에 기여한 공로로 한인들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던 농장의 수가 30개나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정부의 결정으로 벼를 재배하던 평야에

146) 예를 들면 카자흐인들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한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음으로써 생업을 둘러싼 충돌보다 민족간 기능적 분화와 협조를 이룩할 수 있었다. 정태수, “러시아의 在蘇韓人政策과 소련韓族의 民族文化權,” pp. 134~141.

목화를 과중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벼 및 야채농사를 짓는 등 소련의 전지역으로 분산되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한인들은 토지를 임대하여 季節農事를 지으며 이동하였다.¹⁴⁷⁾

그러나 한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教育熱이 높아 많은 한인들이 구소련 해체 전까지는 각공화국의 정계, 관계, 문화계, 경제계에 진출하였으며, 최근에 와서 한인교포들에 대한 居住制限이 풀리면서 젊은 세대의 도시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로써 농장의 수가 30개로부터 3개로 급격히 줄어들고 그나마 유지되던 韓人社會가 해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연방의 붕괴를 맞게 되었다. 소연방 하에 각 공화국에 흩어져 살던 한인 교포들은 독립된 각기 다른 共和國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3) 獨立國家聯合時代

해방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냉전체제의 장벽으로 한국정부 및 사회는 재러 한인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기울여 오지 못하다가 구소련과의 修交 이후에야 비로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1년 구소련 해체 후의 CIS 내에는 약 458,000명의 한인교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147) 이들은 잦은 이동으로 대부분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수는 한인 젊은이들 가운데 60~70%에 달한다고 한다. 벨라 박, “재러 한인의 운명,” p. 49.

는 우즈베키스탄 198,000명, 러시아 109,563명, 카자흐스탄 105,000명, 키르기스탄 19,000명, 타지키스탄 13,000명, 우크라이나 9,000명, 투르크메니스탄 2,900명, 벨라루스 950명이다.¹⁴⁸⁾ 특히 독립 이후의 중앙아시아 각국에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선 民族紛糾까지 일고 있어 이 지역의 소수민족인 한인교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독립국가연합 중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공화국을 중심으로 교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총면적 44,000km²에 약 2천만명의 인구를 지닌 중앙아시아의 多民族 國家이다. 민족 구성은 우즈베크인이 71%로 대다수이며 그 이외 100여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한 한인과 그 후손은 전체 인구의 약 1.1% 수준인 20만명 정도에 이르며 이중 2/3가 타쉬켄트나 인접지역에 살고 있다.¹⁴⁹⁾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1991년 8월 구소련의 해체 이전에 이미 독립을 선포하였다. 풍부한 부존 자원과 목화재배 및 방대한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지닌 자원부국이며 市場經濟로의

148)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5), p. 289.

149) 이부영·안무혁, “중앙아시아 한인사회 실태조사 보고서”(국회외무통일위원회 제출보고서, 1993. 6. 9), pp. 8~9.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과거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지역으로 향후 동서양 문물교환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2년 1월 29일 한국과 공식적인 修交를 체결하였다. 한국정부는 한국대사관을 1993년 안에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는 한국교육원을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한인사회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다민족국가인 만큼 공식적으로 民族和合政策을 표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인구 구성비율에서 안정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들의 文化活動 및 民族言語教育을 장려하면서도 방송, 공문서 작성 및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우즈베키스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少數民族들의 다른 국가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150)

현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분류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民族問題’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런 만큼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

150) 위의 보고서, pp. 11~12.

화해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攻勢的 民族主義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인들은 한인들을 필요로 하나 높은 교육률로 한인들이 사회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 경쟁대상으로 경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인구의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宣敎活動을 펴는 한인교회 활동과 연관하여 종교적 갈등이 민족간의 분규로 비화될 위험도 있다.

강제 이주당한 제1세대 한인들이 현지 정착에 급급했고 또한 수십년간 강력한 러시아 同化政策의 결과로 다른 독립국가 연합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한인들 특히 2~3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상실한 상태이다.¹⁵¹⁾ 이들은 民族意識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일방적으로 북한과 교류했던 만큼 북한을 다녀온 교포들이 많았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92년 5월 타쉬켄트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후 親韓 교포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려인 문화협회」, 「청춘 가무단」, 「신생 가무단」 등을 비롯한 많은 韓人團體가 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친한 성향의 단체들은 자격을 갖춘 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뚜렷

151) 이종훈, “동북아지역의 교포현황과 정책과제,” 「東北亞 經濟圈과 韓民族」 (서울: 경실련, 1993. 7), p. 22.

한 사업이 없이 한국을 향한 창구 역할만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아소크」와 「범민련」 등 親北性向의 단체들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주간통일」이란 잡지와 「로동신문」의 배포 및 북한초청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⁵²⁾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현재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장학관 1명과 현지채용 교사요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원은 약 3,7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약 58개교의 한글학교 또는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¹⁵³⁾

正規課程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내 타슈켄트주에 13개를 포함한 24개 국민학교에서 2,665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1985년부터 타슈켄트 국립사범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양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¹⁵⁴⁾ 그러나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어의 공용어 채택과 관련하여 한인들이 우선적으로 당면한 우즈베키스탄어 습득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우즈베키스탄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韓國語 教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등이 교육원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 교포들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152) 김영웅 在蘇고려인협회회장과 인터뷰.

153) 안무혁·이부영, 앞의 보고서, p. 38.

154) U.N. 압둘라예보, “진보와 상호이익에 복무하는 교육,” 「在蘇韓人들 教育 現況과 政策」(북한연구학회·광주일보사 주최 특별초청강연, 1991), p. 3.

데, 모국어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및 활동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現地進出 상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993년 5월 대우그룹이 우즈베키스탄 화학공업성과의 합의로 타쉬켄트에 4천 2백만달러 규모의 전자제품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1994년 말 가동 예정으로 있다. 또한 우즈베크-대우 자동차 合作會社를 설립하여 1995년 말까지 연간 5만대 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있다.¹⁵⁵⁾ 대우그룹은 이들 공장의 설립 후 한인을 포함한 1,200명 규모의 우즈베크 노동자들을 매년 한국으로 파견하여 자체 技術研修教育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현지 생산공장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과 이익배당을 가져올 수 있는 대우 현지법인과 같은 접근이 현지 정부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好評과 기대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한인들의 지위향상과 모국어 교육열도 기대되고 있다.

(나) 러시아

러시아에는 하바로프스크에 약 2만명, 블라디보스톡에 약 1만 8천명, 모스크바에 약 5천명, 레닌그라드에 2천명 그리고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약 2만 3천명의 韓人僑胞들이 살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의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155) 안무혁·이부영, 앞의 보고서, pp. 24~25.

가 보장되어 도시로의 이주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인들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라 교육기관과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1989년 통계에 의하면 교포는 107,000명으로 러시아 전체인구 147,022,000명의 0.1%에 해당한다.¹⁵⁶⁾

1993년 4월 러시아 최고회의에서 통과된 「고려인 명예회복 결의안」은 1937년 스탈린의 韓人強制移住政策을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인들의 명예회복 및 ‘자유로운 민족발전 권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決議案은 강제이주로 구소련 내 각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그 후손들이 언제든지 러시아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거주지로 재이주한 한인들에게 안정된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토지 및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⁷⁾

그러나 러시아정부나 지방정부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의 결의안 실현에 필요한 政策的 與件이나 財政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CIS국가들과의 진지한 업무 협조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유사시 한인들의 러시아 國籍回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될 수 있으나 한인들이 러시아에 재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연해주 지역에 「高麗人 自治州」를 설정한다는 안이

156)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1. 12), p. 37.

157) 김영웅 재소고려인협회회장과과의 인터뷰.

「재 CIS고려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내 일각에서도 한국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주 성립문제는 과거 연해주시대 자치주 설립 추진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한국 정부간의 미묘한 外交問題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해주 지방 정부는 러시아 중앙정부와는 달리 추방한인 재이주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카자흐스탄공화국

한반도의 12배 정도되는 272만[㎡] 면적을 지닌 카자흐스탄은 1,7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카자흐인 42%, 러시아인 38%, 독일인 6%, 우크라이나인 5% 등의 민족구성 비율을 보이는 多民族國家이다. 카자흐스탄 내 한인교포들의 수는 약 105,000명 정도인데 전체 공화국민 중 0.6%이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약 1만 6천명 정도가 수도인 알마아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들은 대부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다.¹⁵⁸⁾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지대로 東西 文物交流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풍부한 부존자원은 향후 카자스흐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는 독립을 선언한 후인 1992년 1월 정식 수교를 맺었다. 한국

158) 안무혁·이부영, 앞의 보고서, p. 8.

대사관은 1993년 6월에 개설되었으며 1991년 8월 개설한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4월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二重的 民族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소수민족 문화활동, 언어교육 및 언론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체 인구 구성에서 42% 정도에 불과한 카자흐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몽고 지역에 거주하는 15만명 정도의 카자흐인들 중 5만명을 작년에 이주시킨 사실이나 현재 러시아어와 병용하고 있는 카자흐어를 3년내에 전면적인 公用語로 채택하려는 정책 등으로 미루어 카자흐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⁹⁾

따라서 민족간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民族紛糾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한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며, 교육수준이 높아 專門職 종사자가 많고, 한인들의 도시거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한인교포들의 생활상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 한인들은 북한지역 출신들이 많으며, 구소련의 강력한 러시아 同化政策으로 대부분 한국어를 구사

159) 위의 보고서, p. 11.

하지 못하고, 한국전통문화를 잊어가고 있는 점에서도 구소련 다른 공화국들의 교포 실태와 같다.

이들 한인들은 民族的 連帶感은 지니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자신들이 속한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한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북한의 지원을 받는 ASOK의 활동이 두드러진다.¹⁶⁰⁾

수도인 알마아타에는 韓人들이 운영하는 조선극장과 고려인 문화협회가 있으며, 특히 전체 CIS국가들에 배포되는 유일한 한글신문인 「고려일보」가 발행되고 있다. 고려일보는 開放政策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카자흐스탄 공산당 기관지인 「레닌기치」로 발간되었으며 1991년 1월 「고려일보」로 개칭하여 발행하고 있으나 현재 財政難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1991년 8월에 개설되어 정부과건 교사와 2명의 현지교사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부설 한글학교 운영 및 관내 20개 한글학교의 5,000여 수강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경로대회·민속경연대회·각종 국경일 행사·성인합창단 운영·무궁화 무용단 후원 등의 다양한 민속행사 및 文化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저하게 부족한 인력과 재정, 교육기자재, 그리고 PC 및 차량 등 업무장비의 부족으로 現地教育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⁶¹⁾

160) “재소 한인단체의 분열과 반목: 고려인협회-아소크,” 「해외동포」(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1), pp. 45~47; 김영웅 재소고려인협회회장과과의 인터뷰.

161) 안무혁·이부영, 앞의 보고서, p. 15.

이에 이곳 한인교회들이 선교활동 외에 자체 한글학교의 운영과 각종 자선 및 사회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교회들에 대해 각 교파들간의 지나친 布教 競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카자흐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활약하였던 재미교포 방찬영 교수는 1992년 1월 The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라는 교육기관을 개설하여 市場經濟를 운영할 수 있도록 카자흐 경제 엘리트들을 양성하고 있다.¹⁶²⁾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틸보네식당」(대표 민봉식)이 진출하여 요식업과 TV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봉제공장 및 의류상점이 진출해 있다.¹⁶³⁾

(4) 사할린지역 僑胞社會 形成過程

연해주 및 극동지역으로 한인들의 移住가 시작되면서 사할린에도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기 시작한 한인들의 수가 1934년에 약 6천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뒤 1939~1945년 8월까지 약 5만명의 韓人들이 징용되어 사할린에 끌려갔다.

162) 위의 보고서, p. 16.

163) Ibid.

1945년 해방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38만명이었고 한인은 4만 3천명에 달했는데, 일본 패망 후 美·蘇 양국은 1946년 12월 「소련지구인양에 관한 미·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인 29만 2천 5백명을 일본으로 귀환시켰으며, 1956년 10월 19일 「日·蘇平和宣言」이 채택되어 한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을 동반가족으로 하는 약 700여명의 한인이 일본으로 귀환하였다.¹⁶⁴⁾

그러나 일본과 소련의 협정이나 합의가 사할린 거주 고려인의 귀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구소련 체제하에서 일부는 구소련 국민, 일부는 無國籍者 및 북한 국적자로서 살게 되었다. 무국적자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강제징용된 사람으로 거주 이전, 직업선택 등에 不利益을 당하면서도 고국에 돌아오고자 무국적자로 남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냉전체제하에서 소련과의 접촉이 용이치 않았던 점도 있긴 했지만 일본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들의 歸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 않았다.¹⁶⁵⁾

164) 김연수, “사할린 同胞의 移住史,” 「전망」 (서울: 대륙연구소, 1990. 4), pp. 42~47.

165) KBS TV에서 1993년 8월 15일 방영한 사할린의 카레츠키를 참고하였다.

나. 僑胞社會 分布

(1) 居住資格別 分布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포들은 구소련시대에는 대부분 소련국적을 갖고 있다가 소연방이 해체된 후에는 居住國 國籍을 갖게 되었다.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인교포 중 74.5%가 거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18.5%에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과 무국적인 사할린의 교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국의 국적 대신에 영주 거주할 수 있는 永住權을 가진 교포는 7.0%로 나타났다.

〈表 2-14〉 居住資格別 分布

거주자격별분포		총 수	백분율(%)
동 포 총 수		457,462	100.0
거주 자격	시민권	340,900	74.5
	영주권	32,100	7.0
	기타	84,462	18.5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289~311에서 재구성

(2) 職業別 分布

외무부 자료에 따른 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법조인·의료인·교육자 등 專門職에 속하는 사람들이 17.5%에 달하고, 농수산업에 12.0%, 노동에 5.0%, 상업에

〈表 2-15〉 職業別 分布

직업별	총수	백분율(%)
농수산업	55,200	12.0
상업	18,690	4.0
제조업	1,140	0.2
요식·숙박업	11,380	2.4
기타서비스업	11,500	2.5
법조인	485	0.2
의료	8,050	1.8
교육자	25,000	5.4
문예인	3,750	0.8
종교인	215	0.0
체육인	980	0.2
사무직	8,520	1.8
기술직	33,100	7.2
노동자	22,990	5.0
기타	256,462	56.0
계	457,462	100.0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289~311에서 재구성

4.0%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교포들(56%)의 직업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3) 年 齡 別 分 布

독립국 연합의 교포 중 68.8%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세대이며 스탈린의 同化政策 등 「러시아화」로 우리 풍속 및 언어를 잃어버린 세대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살아온 중앙아시아를 대부분 자신의 고국으로 생각하는 세대이며 教育水準이 높아 각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表 2-16〉 年 齡 別 分 布

연 령 별	총 수	백분율(%)
1세~9세	59,050	12.9
10세~20세	82,660	18.1
20세~29세	52,200	11.4
30세~39세	76,020	16.6
40세~49세	45,310	9.9
50세~59세	29,730	6.4
60세~69세	22,420	4.9
70세~79세	4,250	0.9
80세 이상	1,360	0.2
미 확 인	84,462	18.4
계	457,462	100.0

資料: 외무부, 「海外同胞現況」(서울: 외무부, 1993), pp. 289~311에서 재구성.

다. 獨立國家聯合의 僑胞性向

(1) 民族意識

제정러시아, 소연방시대에 러시아민족 중심의 동화정책 속에서 한인들은 많은 正體性的의 危機를 겪어 왔다. 구소련 하에서 재소교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구소연방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어 남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對南北韓 인식은 고르바초프의 開放政策에 의해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검열제도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온갖 국내외 정보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서울 올림픽의 현장 중계로 한국의 經濟發展 및 국민생활 수준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구소련 사회의 改革과 開放 등으로 한민족의식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민들의 관심이 재소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在蘇 僑胞들의 민족문화와 남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재소한인들은 개방정책 전까지는 구소련의 「소련국민화정책」에 의한 소수민족 문화와 예술의 말살정책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移住制限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 및 전통 계승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統一意識

구소련 한인언론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재소한인들은 조국의 統一을 바라면서도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 단지 대다수 교포들이 남북한이 모두 내 조국이라는 입장에서 平和統一과 經濟發展을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지배를 경험하여 북한 사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큰 사회적 혼란없이 脫共產主義化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도 급격한 체제 변화속에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통일이 가져올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걱정하면서 통일된 한국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따르되 함께 나누는 삶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높다고 한다.

(3) 僑胞團體

고르바초프의 민주화 정책의 결과, 結社의 自由가 허용되면서 교포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고, 이중 제일 먼저 결성된 단체가 1989년 평양축전에 참가한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에서 1989년 11월 결성된 「조국 통일축진위원회(ASOK)」이며 현재 가입회원은 10만명이다. 이 단체는 구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 藝術傳授 및 민족의식의 고취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범민련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의 운영은 북한 출신 교포들의 北韓訪問을 위하여 북한 당국이 무료로 제공하는 북한 여행권을 팔아 충당한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親北團體인 ASOK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친남한적이거나 일부 중립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1990년 5월 모스크바에서 「全蘇高麗人協會」가 결성되었다. 전소고려인협회는 구 소련의 각 지역에 약 7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구소연방의 해체로 「國際高麗人協會 總聯合會」로 명칭을 바꾸었다. 한국을 방문한 김영웅회장은 인터뷰에서 단체의 목표를 정치지향보다는 문화계몽사업에 두고 2세 이후 세대들에 대한 母國語 教育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¹⁶⁶⁾

이외에도 독립국가연합 내에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각종 교민단체가 결성되어 고려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교민단체의 결성 붐과 더불어 교민단체들간의 反目과 分裂 現象이 나타났으나 구소련 해체 후 각 공화국 교포들의 보호 및 권익을 위하여 단결된 힘을 규합하고자 최근에는 조국통일촉진위원회와 국제고려인협회 총연합회가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 少數民族政策

제정러시아는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으로

166) 외무부영사교민국, 「재소동포실태조사 출장보고서」(서울: 외무부, 1991), pp. 29~31.

로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썼다. 구소련의 레닌시대에는 民族의 自決權을 옹호했으나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계급, 국가 그리고 민족의 구별이 소멸될 것으로 보고 민족의 화합이 아닌 민족간 융합을 주장하였다.

스탈린 시대에는 經濟統合을 이유로 러시아민족의 特權을 정당화하여 러시아화(同化)를 강조하고 여러 소수민족, 고려인·독일인·타타르인 등 대략 100만명을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후루시초프 시대에는 집권 초기에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소수민족 자유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정책을 폈고, 안드로포프는 1982년 레닌의 民族政策을 지지하며 그동안 외국인 취급을 받아 온 한인·독일인·폴란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도 완전한 소련인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개혁·개방정책으로 과거 억눌린 소수민족의 정당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발틱 3국을 선두로 소련내 각 공화국들이 完全分離 獨立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소연방은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 내에는 民族紛糾가 일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 각 공화국에서는 다수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구소련연방 내 타민족의 유입에 배타적인 정책을 펴는 등 新民族主義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¹⁶⁷⁾

독립국가연합 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과거 舊蘇聯邦 내 여러 국가에 산재해 살고 있으며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가족이 각기 다른 공화국에 거주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가족들이 각기 다른 공화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타슈켄트 내전으로 15,000명의 타슈켄트 교포 중 10,000명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인근 공화국으로 피난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 구소연방 해체 후 한인교포들은 각 국가마다 다른 少數民族政策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

마. 主要 懸案

(1) 自治州 設置 問題

한인교포 30여만명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화국에는 회교도의 배타성, 잦은 민족분규, 현지어사용 의무화, 비공식 차별대우 관행 확대 경향으로 한인교포의 생활기반이 불안정하여 한인의 타지역 移住問題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회교국에 살고 있는 일부 한인들이 민족분규 등으로 거주지역에서 難民化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또한

167)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권에 우크라이나 시민임을 밝히는 字句를 넣고 있고 타 공화국으로부터의 타민족 유입을 막고 있다. 고재남, 「독립국가 연합내 고려인사회에 대한 연구」(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p. 81.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연변지역과 연해주를 잇는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연고지인 연해주에 自治州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최고회의 민족원(하원)은 3월 31일 스탈린 통치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한 한인들의 政治的 名譽 回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켰다.

同 決議案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인의 1937년 강제이주를 불법화하고 고려인의 원거주지로의 移住權利 認定 및 러시아 정부 지원 촉구, ② CIS 거주 고려인의 러시아 국적취득 허용, ③ 고려인의 民族文化 재생과 한글교육 및 문예창작 활동을 인정하고 러시아 정부의 자금지원 촉구, ④ 고려인의 정치적·법적 권리는 타민족과 同等待遇이다.¹⁶⁸⁾

최고회의는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 러시아의 한인들은 탄압 받은 민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국제고려인연합회의 金泳雄회장은 50만 한인들의 오랜 숙원인 명예회복 문제가 해결됐으며 그동안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연해주 이주가 법적으로 보장됐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이 법안에 근거, 한국전통문화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168) 서울국제안전협회, 「국제인권보」, 제 299호, 1993. 4. 6, p. 4.

말했다.

그러나 強制移住에 보상책임이 있는 러시아 정부는 비용부담, 극동지역 기존 거주민과의 마찰문제, 장기적으로 소수민족 통일주의 대두 가능성을 고려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3년 2월 7일 러시아 민족정책담당 부수상 Sergei Khakari는 현재의 상황에서 韓人自治地域 창설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타지역으로의 이주는 개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교포 중 그곳에서 태어나서 안정된 생활을 구축한 일부 교포들은 타지역 이주보다는 현 거주국에서의 생활기반 확충을 더 바라는 등 僑胞社會는 내부적으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¹⁶⁹⁾

(2) 沿海州 韓國工團 設立

러시아 정부 자체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인 자치주 설립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주를 원하는 대부분 한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 工團設立을 통한 한인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정부는 한인교포의 연해주 이주를 위해 연해주 파르티잔스크군 보스토치니야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工業團地 조성을 위한 토지를 이미 확보하였다. 이곳에 전기, 전자, 섬유,

169) 김영웅 재소고려인협회회장과와의 인터뷰.

의류, 수산물 및 목재가공업체를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단 설치에 필요한 전력, 용수, 도로 등 간접시설 구축을 위한 러시아정부의 財政支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경제사정상 어려워 공단설립은 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3) 사할린 僑胞의 母國訪問 및 永住歸國

일제 식민지하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징용당한 약 15만명의 한인 중 終戰 후 10여만명은 일본 등지로 귀향했으나 잔여 43,000여명은 소련 정부의 출국거부로 계속 잔류하였다. 그후 40여년 동안 이들의 모국방문이나 영주귀국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韓·蘇關係改善으로 소련정부가 1988년 9월 이후 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을 허용하여 정부에서는 1989년 9월 및 11월에 정부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 동 지역교포의 모국방문길을 열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및 외무부장관 회담을 통하여 한·일 양정부가 사할린교포의 母國訪問 사업을 지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가 1989년 7월 14일 「사할린 거주 한인지원 공동사업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무부에서는 1989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사업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여, 1992년의 경우 1억 2,000엔을 대한적십자사에 지불하였다.

이들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1차적으로 교포 1세 전원 약 7,000명의 모국방문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1989년 7월부터 1992년 말까지 3,741명의 방문을 지원하였고 1993년에는 1,250명을 방문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¹⁷⁰⁾

또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교포 중 無緣故 僑胞(약 150명)의 영주귀국을 우선 실시하고 국내 연고자가 있는 교포(약 6,600명, 교포1세) 30명의 永住歸國을 심사·허용하였다.

무연고 교포의 경우, 1993년 3월까지 120명이 영주귀국하여 광림교회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강원도 소재)에 살고 있다. 따라서 사할린거주 교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한 교포들의 한국생활 適應問題가 과제로 남아 있다.

(4) 民族間 紛糾

현재 CIS 거주 고려인은 높은 교육수준과 근검성으로 각 공화국내에서 환영받고 있으나, 민족간 분규는 이들에게 심각한 政治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타지스크탄 내전이 1992년 5월 발발하여 내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생활기반의 상실로 타지크스탄 교포들이 인근 지역에 대피는 하였으나 不法滯留者 신분으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피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들을 수용할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韓人難民들은 다시 타지크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0)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자료, 1993.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生計支援 및 현지 또는 러시아 연방에서의 합법적인 市民權의 획득과,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당면 과제이다.

(5) 民族教育問題

지난 수십년간에 강력한 러시아 民族同化政策의 결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한국어와 민족문화를 상실해 가고 있다. 현재 CIS지역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韓國教育院이 개설되어 한인민족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교사요원과 재정 그리고 교육기자재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글신문 발행과 한국어 방송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자격을 갖춘 人力 및 財政의 不足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第Ⅲ章 南北韓의 僑胞政策 比較 및 評價

1. 南韓의 僑胞政策

정부는 무엇보다도 해외교포들이 居住國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에 일차적 관심을 가진다.¹⁾ 따라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한 다음 母國의 국익신장과 전통문화보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포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다.

가. 基本原則

현재까지(1993.7) 정부가 취한 교포정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僑胞의 居住國에서의 社會的 地位 向上 支援

정부는 교포의 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외교교섭을 벌여 왔다. 예를 들면, 在日僑胞의 경우 지방자치제 공무원 및 교원 채용 확대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 폐지를 위한 교섭을 벌여 왔다. 또한 獨立國聯合 僑胞의 경우에는 거주국 정부와 소수민족 보호·보장을 위한 교섭을 추진해 왔으며, 러시아

1) 한승주외무부장관의 「제4차 해외 한민족 대표자회의」에서의 격려사(롯데호텔, 1993. 5. 12).

정부와는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 왔다.

교민들의 거주국에서의 안정된 정치적·사회적 생활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는 韓人 社會活動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1993년도 보조금 총액은 1,001만달러로 이중 일본에 714만달러(전체의 71.4%)를, LA사태로 심한 후유증을 앓은 LA에 119만달러(12%)를 지원하고, 기타 137개의 공관에 나머지 금액인 157만달러(15.6%)를 지원하였다.

(2) 僑胞의 韓民族性 維持 및 本國과의 紐帶強化를 위한 教育·文化 支援

첫째, 교포의 한글교육을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13개국에 19개의 한국학교를 설치하였고 16개국에 39개의 한국교육원을 설치하였다. 그 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

① 韓國學校 : 13개국 19개교에 학생 수는 3,333명이며, 교원 수는 279명이다. 일시 체류자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한국학교는 국내와의 連繫教育으로 이들이 귀국 후 국내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 영주교포 자녀들에게는 모국의 이해 교육과 현지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現地 適應 教育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학교들에 대해 교사과건(현재 48명), 운영비 보조, 교과서 등을 공급하고 있다.

〈表 3-1〉 在外國民教育機關의 設置運營概要表

구 분	한국학교 (전일제)	한글학교 (정시제)	한국교육원 (교육관)
설치기관	13개국, 19개교, 145학급 교원 279명 학생 3,333명	62개국, 917개교 교원 5,360명 학생 50,324명	19개국, 39개원 파견교원 49명 교육관 10명
교육기능	현지적응(영주 민) 모국연계(체류 민) 초·중·고등교육	국어, 국사, 한국문화 모국어해교육 유치·초·중등 교육	사회교육지원 교육기관 지도·감독 유학생 지도 관리
정부지원	교사파견과 교재공급 운영비 지원 교사 모국연수 (년 20명)	교재개발 교과서 공급 운영비 지원 교사 모국연수 (년 47명)	교육공무원파견 운영비 지원 외국인 교사연 수
국가별개요	일본: 4개학급 교원 161명 학생 1,875명 중화민국: 2개교 7학급 교원 13명 학생 147명 설립중: 모스크바	북미지역: 2개국 568개교 교원 4,299명 학생 37,645명	일본: 17개교 143강습소 학생 3,395명

資料: 교육부, 「교육백서」(서울: 교육부, 1993).

② 한글학교(定時制) : 64개국 917개교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夜間이나 週末에 운용되고 있으며, 모국어 교육과 모국의 역사, 문화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한글학교는 그 현지 교민들의 自發的 參與와 協力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정부차원에서는 교과서와 교재를 공급하는 외에 재정이 아주 어려운 일부 한글학교에 일년에 100~200달러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③ 韓國敎育院 : 19개국에 39개원으로 등록된 교민 수는 약 300만명이다. 사회교육기관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모국의 역사·문화와 母國 이해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교원을 파견(49명) 운영하고 있다.

④ 駐在 敎育館 : 3개국(미, 일, 독) 8명이며 주재국내 재외국민교육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재국과의 교육, 학술교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⑤ 土曜學校 : 정부에서는 64개국에 917개소의 토요일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교포 청소년과 민족 교육자들을 본국에 초청하여 研修를 시켜 왔다. 교재(책자 및 시청각 교재)를 일부 개발하여 보급하여 왔다. 1993년에는 6,500권의 책자 및 2,000개의 시청각 자료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교포의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에는 北京에 문화원을 설치하여 교포의 모국 전통예술 계승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교포 밀집지역에 고전문용가와

국악강사 등을 파견하여 지도하였다. 또한 교포들의 創作活動도 지원하여 왔다.

넷째, 교포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할린 교포의 모국방문을 지원하였으며 「해외동포 모국방문후원회」가 추진하는 中央亞共和國 교포들의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교포 행사를 지원하여 1993년 5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해외한민족 대표자회의를 지원하였으며, 하와이 한인 이주 90주년 행사, 대전 EXPO 「교포의 날」 행사와 세계한민족체육대회를 후원하였다.

(3) 僑胞의 不便 解消를 위한 國內의 法的·制度的 改善 推進

첫째, 국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여 달라는 교포들의 요구로 교포의 국내토지 양도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案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교포의 국내 재산의 相續時限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교포의 외화반입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우리 국적 소지자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外國人 規定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출입국 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포의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 연장을 사안별로 허용할 예정이다. 외

국연금 수혜교민으로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國內 永住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섯째, 1993년 7월 19일 자료 재외국민 정책심의위원회에 제안된 새로운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 僑胞社會의 自助·自立生活氣風 涵養 : 교포 문제를 본국의 정치 및 안보정책에 종속시키려는 종래 정책을 지양한다. 교포 자체로 해결해야 될 친목행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한다.

② 僑胞의 民族教育과 母國과의 經濟·通商分野에서의 協力關係 增進 : 경제(투자), 통상(무역)분야를 포함하여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교포 2세를 중심으로 한다.

③ 僑胞社會의 和合 指導 : 교포사회가 친한, 친북으로 양분되지 않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교포들이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및 인권 등 세계의 보편적 가치하에 성취되는 것이 당위적이라는 신념을 갖도록 계도한다.

④ 公館 中心의 僑胞行政 強化 : 교포들이 공관을 경유하지 않고 본국과 직접 접촉, 청원사항 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시정하고 교포 문제는 교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지 공관이 중심이 되어 처리토록 한다.

나. 僑胞政策機構

지금까지 교포정책의 중요 업무를 담당해 온 주된 주체는

외무부이며, 외무부 이외에도 교육부·문화부·법무부·건설부·재무부·병무청·상공자원부·내무부·노동부·통일원·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일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外務部에서는 영사교류국 재외국민 1·2과가 교포정책 일반을 포함한 지역별 교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근거한 在外國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대신 정부는 1985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11702호에 의거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 규정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는 년 2회 외무부차관 주재로 재외국민과 관련된 관계부처 관계관과 소수의 교포문제 전문가가 모여 현안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교포관련업무 중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교민행정의 원활한 수행도모는 외무부의 역할이며 무역·투자 등 경제분야에서 본국과의 유대구축문제는 상공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는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지급제도 문제, 국내재산 처분대금 반출 문제, 교포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및 거류관리문제 중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외국인의 주식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2세 이하 교포에 대한 민족성

유지문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부에서 해외취업근로자 관리문제는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 의무 문제는 건설부, 해외이주자 병역자원관리제도 문제는 병무청, 국적재취득 문제는 법무부, 교포의 국내거류관리는 내무부, 재외국민의 방북시 신고제도는 안기부에서 맡고 있다.

2.南韓 僑胞政策 評價

가. 北韓 僑胞政策과의 競爭的 傾向

남한의 교포정책은 북한의 교포정책과의 競爭關係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북한은 일본·유럽·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포섭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그동안 방치해 왔던 중국이나 구소련 교포들이 한국의 北方政策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친남한성향을 나타내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의 僑胞政策은 싫건 좋건 북한의 교포정책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일본에서의 경우, 북한은 조총련을 이룬바 남한혁명과 남북통일을 위한 해외 전초기지로 삼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親北韓 성향의 조총련과 親南韓 성향의 민단이 대립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한 정부는 전세계 한인사회 활동 보조금 중 71%를 일본 민단에 지원하였다.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제일 한인에 대한 교포정책에서 남

북한의 경쟁적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개혁과 냉전체제 붕괴 그리고 문민정부 수립에 따른 해외동포 사회의 親南韓 傾向 增加 및 이러한 경향에 대응한 북한의 포섭활동 강화와 이에 따른 교포사회의 분열조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적 교민정책은 교포사회의 분열만 지속 또는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轉向的인 政策 變化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93년도 외무부 재외국민정책 중, 교포 문제를 본국의 정치안보정책에 종속시켰던 종래 정책을 지양한다는 새로운 원칙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또한 僑胞社會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교포사회 및 교포단체의 육성은 현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정치적인 성격을 최대한 배제해야만 건전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다. 교포단체 내에서의 分極化 現象을 지양하고 소외된 인사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총화체제의 기반을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의 공세적인 교포정책에 맞서 우리 정부는 비교적 守勢的인 교포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포정책을 통일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 점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외무부의 교포정책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증과정을 거쳐 진행된 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교포정책추진에 逆機能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의 교포정책은 냉전체제 하에서의 남북한의 대립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때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세력의 무마에만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포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교포정책은 주로 일본·미국에 치중하였고, 독립국가연합·중국 등의 동포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나. 僑胞政策의 消極的 傾向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교포정책은 사실상 거주지 국적을 가진 교포를 배제하는 소극적 정책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해외교포들을 그들의 公民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교포정책은 교포들을 「다른 나라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교포정책의 대상은 在外國民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필요시에만 선별적으로 교포들을 포용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왔다.

이는 우리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교포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일부 교포들의 행동이나 해외 영사국에서 문제있는 교포들을 대하면서 얻은 固定觀念들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 교포사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교포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흔히 나오고 있

다. 교포들은 有權者가 아니고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소홀히 대해 왔다. 고국을 떠나 居住國에 정착했으니 고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조국은 국력을 배양하여야만 전체적으로 교포들의 地位向上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교포정책에 별 관심이 없었으며, 거주국에서 본국의 權威主義 政權에 대해 반발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교포인사 관리에만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포정책을 펴지 못하였다.

다. 僑胞業務 推進의 問題點

해외교포 업무가 12개 이상의 소관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소기의 국가 목적에 따른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僑民政策의 수립과 기획 및 행정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소련 지역에서의 僑胞難民들을 위한 정책들이 순발력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나라별 교포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용히 교포정책을 추진하여 自治州를 탄생시켰으나, 우리의 경우 연해주 자치주 설립 문제를 성급하게 거론부터 하면서 他民族의 反撥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만을 불러 일으키는 역효과를 내었다. 이는 그동안 교포업무가 업무량도 방대해지고 복잡해진 반면에 분산된 行政組織이 변화된 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전세계로 진출한 교포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정부의 대책기구나 정책입안자들은 아직도 現狀維持的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정책심의 위원회가 있으나 연 2회 만나고 있을 뿐이고, 유기적 협의체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중국교포의 한국국적회복문제는 한국 국적법상 타국교포와 같이 국적을 회복, 영주 귀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내무부, 법무부와 안기부의 이견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중국교포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교포의 국내불법체류문제도 법무부, 상공자원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서로 자기 부처의 의견만 제시할 뿐이어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실무담당자인 재외국민영사국장인 경우 약 일년간 근무를 하는 등, 교포담당분야의 실무자들이 循環勤務를 하므로 전문성 및 업무파악이 어려우며,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고, 각 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조정할 권한이 없으며, 인기부서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라. 豫算의 不足과 效率的 政策推進方案의 缺如

교포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經濟力의 미약함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존 예산의 불합리한 운용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본과 미국에서 많은 교포들이 居住文化에 동화되고 모국어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모국어에 대한 지원은 미국 교포에 대한 경우 한글학교 당 年 100~200달러에 불과하며, 현지사정에 맞는 教材 또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교포들에 대해서는 교포실태조차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豫算不足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의 결여로 일관된 교포정책을 확립하지 못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교포들이 「국적 있는 민족의식」을 갖지 못하여 조국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교포들이 고국에 대한 애국심과 향수는 짙으나, 적극적인 祖國觀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헌신적인 자세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마. 僑胞에 대한 實用的 支援의 不足

그동안 정부는 교포들이 본국과의 관계나 현지 적응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교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海外移住를 장려하고 이주자들의 출국시까지는 수속절차상으로 간여하고 있지만, 일단 출국한 이후에는 이들의 보호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支援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에서 교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해 나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민지도관을 상주시켜 장기간 現地適應 教育훈련을 실시하여 안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교포정책과는 매우 대조되는 점이다.

3.北韓의 僑胞政策

가. 基本原則

북한은 1955년 조총련 결성을 시발점으로 해외동포를 북한 정권 주위로 결집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북한은 조총련을 결성하고 조직 강령 제1조에 “우리는 재일 전체 동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주위에 총집결시킨다”하여 在日僑胞를 북한 정치권력하에 놓는 일을 교포정책의 기본목표로 삼았던 것이다.²⁾

이렇듯 북한의 교포정책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 3대 외교목표, 곧 남한혁명역량·북한혁명역량·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해외동포 사회가 橋梁的 手段으로서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크다고 인식 아래 추진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교포정책은 분산되어 있는 해외동포들을 조직하여 이들이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와 북한의 통일방안 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統一의 礎石이 되게 하고, 해당거주국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하도록 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외교상 북한에 유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수령님과 해외동포」 (동경: 조국사, 1992), pp. 91~93.

이는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담당비서이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기복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의장직과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한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국적법」에서 해외동포들을 그들의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교포 조항인 헌법 15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하에서의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65조에는 “해외의 모든 조선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³⁾ 라고 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으로 교포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들을 親北勢力으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일관성있는 民族教育을 실시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외교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노동당과 「정무원」의 2원적 체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내의 연락부와 통일전선부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부서들이 중심이 되어 해외 反韓團體의 조직·교포포섭·친한교포조직의 와해공작 등을 관장하였으며, 이외에도 당 조직 산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두고 있다.

3)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p. 174.

또한 북한 정부는 「정무원」 산하에 「해외동포위원회」, 「교포사업총국」 등을 설치해 해외교포들의 방북과 反韓, 親北 活動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외교나 친선단체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1956년 4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산하단체로는 각종 친선협회를 비롯하여 「김일성연구소조」, 「북한지지연대성위원회」를 두고 있다.⁴⁾

이와 같이 북한이 벌이고 있는 교민사업은 방북초청, 교포포섭 및 반한통일전선형성, 반한친북여론조성 등이다. 訪北招請은 해외에서 반한, 친북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포포섭은 反韓僑胞團體 및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⁵⁾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권 붕괴와 북방수교 이후 해외교포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해외 교포사회에서는 친북한세력화되고 친남한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외동포들에 대한 包攝活動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親北韓 同調勢力에 대한 포섭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10대강령 제9항에서 민족대단결의 방도로 「전민족적 연대성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 해외

4) 이창하, “북한의 교민정책과 대외선전활동,” 「새물결」 (서울: 자유평론사, 1988. 2), pp. 143~147.

5) 조총련에 1957~1987년사이 384억 2,950만엔을 송금하였다.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서로 연대·연합하여 大衆的인 鬪爭을 벌임으로써 반통일세력을 고립·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지며, 구체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및 「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의 조직과 활동을 고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⁶⁾

나. 海外僑胞 親北團體現況

(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범민련은 북한이 해마다 판문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범민족대회의 常設機構이다.

1989년 1월 한국내 在野勢力의 연합체로 발족된 「전민련」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제의에 호응하여, 1989년 3월 1일과 4월 7일 두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한 후, 북한은 3월 유럽과 북남미, 일본 등 3개 지역에 범민족대회 해외촉진 본부를 설치하였다.

6)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 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런합하여야 한다.” 호명길, “민족단합의 대현장(9), 민족단합을 위한 획기적인 방도,” 「로동신문」, 1993. 5. 10, 김태일·전상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21에서 재인용.

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제1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고 밀입북한 작가 황석영이 남한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범민족대회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북측대표 윤기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제의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키로 합의하였다. 90년 11월 19~20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해외동포 3자회담」에서는 중앙기구를 조직하고 「범민련」의 남·북 및 해외본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민련」 海外本部가 1990년 12월 27일 베를린에서 결성되었고 초대의장에는 윤이상(재독 작곡가)이 선출되었다. 그뒤 1992년 2월 24일 범민련 해외본부는 베를린에서 일본 東京으로 이전되었다.⁷⁾

북한은 1991년 1월 25일 「범민련 북측본부」를 결성했으며, 의장으로는 당비서겸 조평통 부위원장인 윤기복이 선출되었다. 그후 1993년 1월 의장은 백인준(범민련 부위원장 및 문예총위원장)으로 교체되었다.⁸⁾

한편, 남측본부 결성과정을 보면 1991년 1월 23일 범민족대회추진본부 주최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이루어지고, 위원장에 문익환 목사가 선출되었다. 남측본부결성 준비위원회는 1991년 2월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를 정식으로 결성키로 결정했으나, 한국정부당국의 不許措置로 아직 결성

7) 「내외통신」, 종합판 42호 (서울: 내외통신, 1991), pp. 636~655; 「내외통신」, 종합판 46호 (서울: 내외통신, 1993), pp. 530~539.

8) 「내외통신」, 종합판 42호, p. 701.

되지 않고 있다.⁹⁾

범민련은 표면적으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북측본부 의장단이 노동당 및 외곽단체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나 「범민련」의 강령에 고려연방제 실현, 韓半島 非核地帶化와 주한미군철수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실현을 위한 전위대로 보여진다.¹⁰⁾

(2)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1992년 8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범민족대회에서 결성되었다. 「범청학련」 결성 선언문은 범민족대회의 共同決議文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통일운동의 선봉대」로서의 활동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친선협회

친선협회는 해당 국가의 좌경 또는 친북인사 및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회, 성명,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을 선전함으로써 親北政策을 유도하고 있다. 1951년 6월 일·조협회의 결성을 시발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들어 급

9) 위의 책, p. 702.

10) 정상룡, “북한 통일기구 단체 및 해외친북조직,” 「통일로」, 48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993. 6), p. 33.

속히 늘어나 현재 107개국 397개에 이르고 있다.¹¹⁾

(4) 김일성연구소

이 研究所는 김일성 저작에 대한 학습과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선전과 주체사상의 해외 전파를 담당하고 있다. 김일성연구소는 1969년 4월 파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김일성노작연구소, 김일성혁명연구실, 주체사상연구소 등의 형태로 조직되었다. 현재 93개국에 877개의 연구소가 결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는 국가는 「주체사상 국제 연구소」(1970년 발족)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로 非同盟戰線에 가입한 국가들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²⁾

(5) 연대성위원회

연대성위원회는 1971년 모리셔스에서 처음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對外宣傳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1976년 이후 세계각국에 연대성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주력하여, 1990년 말 현재 73개국에 413개에 달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방지역에 중점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11) 위의 글, p. 34.

12) 위의 글, pp. 34~35.

이상에서 설명한 북한의 對外宣傳 活動組織을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表 3-2〉 北韓의 對外宣傳 活動組織

(단체수/국가수: 1992. 12. 30 현재)

지 역	단 체 명			계
	친선협회	연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아 세 아	197/14	252/7	247/10	696/20
중 동	22/13	17/8	96/11	135/14
아프리카	35/22	31/20	247/29	313/34
남 구	64/21	64/18	182/18	310/22
미 주	49/22	42/17	61/18	152/25
공 산	30/15	7/3	17/7	54/17
계	397/107	413/73	850/93	1660/132

資料: 정상룡, “북한의 통일기구, 단체 및 해외친북조직,” 「통일로」, 제 48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993. 6), pp. 28~35.

4. 北韓 僑胞政策 評價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한 工作的 次元에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교포정책을 펴왔다 할 수 있다. 북한이 교포사회에 남한보다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레닌의 전략개념에서 援用해 온 것으로 레닌은 적진에 한사람의 동조자를 심는 것은 전략상

13) 위의 글, p. 35.

일개사단의 병력과 맞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는데 북한 교포정책은 이런 레닌의 교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유럽·미국 특히 일본 등 自由民主主義 진영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포섭에 노력을 기울이며 같은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이나 구소련 교포들을 방치하다가 한국의 北方政策으로 이들 교포사회가 남한과의 접촉이 빈번해지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헌법과 국적법에 해외교포를 공민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해외교포들의 모국방문을 장려한다는 정책을 펴 외형적으로 민족을 표방하면서 교포조직을 친북세력으로引入, 결속시켜 적화혁명의 지원역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포정책은 현지 교포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대남전략적 차원에서 입안·수행되고 있다.¹⁴⁾

이러한 북한의 교포정책을 남한정부의 교포정책과 비교해 볼 때, 남한에 앞서 교포사회를 포용하는 듯한 僑胞政策을 내세우고 해외 교포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조총련 결성 당시 한덕수를 지원하여 실권을 장악케 한 뒤에 조총련에 대해 막대한 支援金을

14) 이는 1972년 6월 14일 김일성생일 축하방북단 중 조총련대표단에게 내린 김일성교시에서 조총련활동시 50% 이상을 조국통일활동에 충당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과 교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소홀한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교육원조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조총련에 대해 7석의 최고인민회의 대표원석을 할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각종 단체에 조총련을 가입시켜 一體感を 고취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1957년 남한 정부가 민단에 지원한 금액의 약 30배에 달하는 61만달러를 교육비로 조총련에 송금하고 인재양성과 훈련을 통한 조직강화를 발판으로 1959년 北送事業을 성취시키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왔다. 예컨대 전후복구사업에 기술인력이 필요해진 북한은 이를 위해 먼저 거액의 교포자녀 교육지원비를 보내고 교포사회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자, 후속사업으로 人道主義를 표방하여 교포들의 조국귀환을 환영하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재일교포의 북송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전후 일본사회에서 심한 차별대우 속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던 동포들에게는 同胞愛에 입각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민단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9만여 명이 북송선을 타게 되었다. 북송선을 탄 대부분의 재일교포들은 남한출신이었으며 기술자였으나 그뒤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남한의 조총련계 동포 성묘단의 母國訪問事業으로 북송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교포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은 필요한 人的 資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재일교포사회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교두보(인질)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조총련에 속해 있는 교포들은 북한에 친지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교포들은 對北韓 合作사업,

첨단기술정보제공, 공장·병원건설, 생필품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핵개발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教育資金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조총련계 교육사업은 급격히 진전되어 시설을 확충한 결과 일본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민족학교에 다니는 교포자녀들의 대다수가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전성기에는 5만여명의 교포학생들이 조총련계 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교육재정 지원이 절정에 달한 1974년에는 6차례에 걸쳐 39억엔이 송금되었다.¹⁵⁾ 그후 북한의 경제사정에 따른 財政支援 감소와 이념중시의 교과내용으로 졸업생들의 진로 및 일본사회 적응문제가 대두되면서 학생수가 감소하여 1992년 통계에 의하면 1만 7천명으로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나 민족언어 교육면에서는 民團보다 성과를 올렸고, 오늘날 북한체체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는 일본사회 풍조에서도 북한에 대한 교포들의 지원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과거 북한의 教育資金支援이 커다란 몫을 차지했다는 견해도 있다.¹⁶⁾

따라서 북한의 교포정책은 교포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김상현, 「在日韓國人」, pp. 182~183.

16)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

第Ⅳ章 한민족공동체 形成과 僑胞政策

1. 基本政策

「한민족공동체」의 기본 정신은 세계의 모든 韓民族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역사적 운명 및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종교·역사·생활양식 등을 공통으로 하는 하나의 民族 共同體란 의식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민족을 단결시켜 안으로 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성취하게 하며, 밖으로는 世界舞臺에서 열강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최근의 미주지역 이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행했던 과거의 歷史的 產物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치적 불행으로 인하여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비롯된 人權意識의 약화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지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해외교포들을 부담스러워 하는 풍조까지 만연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해외 이민자들을 해외로의 도피자 내지는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짐스런 존재로 보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의 民族的 力量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존재, 개척자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통일 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포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한민족으로서의 正體感 形成을 위한 僑胞政策

정부는 교포정책의 설정에서 교포들을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市民으로 육성한다는 점에 국한하지 말고, 한민족으로서 정체감을 갖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¹⁾ 그것은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4개국들이 소수 민족의 고유문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多重文化 시책을 발전시켜 국제적 협력체제를 제고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교포정책은 민족 동질성 유지 문제보다는 현지 주민들과의 조화로운 삶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僑胞 育成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美·日の 교포사회가 모국지향성이 높은 교포 1세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교포 1세들이 언어장애, 생활풍습 등의 차이로 현지 사회의 차이로 현지 사회의 적응이 부진함에 따른 부족분을

1) LA한인사회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교포들은 자신들과 내국인 상호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척결하는 것을 교포사회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 「교포정책자료」, 제44집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p. 53.

母國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채우려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 독립국연합, 일본 등지에 교포사회가 교포 2·3세 중심으로, 미국의 교포사회도 1.5·2세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교포 2세의 경우 거주국에 동화됨에 따라 모국과의 連帶性이 희박해지면서 한민족 동질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등한시해 온 교포들의 同化(Assimilability)문제나 민족 동질성(Ethnic identity)유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한민족 문화를 어떻게 거주국의 主流文化에 동화됨이 없이 자기 문화의 self-identity를 살릴 것이며, 다문화 속에서 한민족 고유 문화의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傳統文化를 문화의 요소로 활용하여 조화된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포사회는 타민족과 교류하면서 현지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民族精神과 생활감정에 알맞게 발전시켜 왔다. 중국 교포들의 민족문화 전통의 계승을 위한 노력에서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민족의 가장 진솔한 傳統藝術 양식은 성숙한 자체 문화를 가진 다른 문화 민족 사이에서도 가장 빨리 흡수될 수 있고 동시에 共感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체내의 성숙한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이질적 요소와 결합했을 때에는 그 빛을 잃지 않고 새로운 창조

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교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民族意識을 새롭게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문화활동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전수받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야 하겠다.

이제 世界市場은 제품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자국문화 선전공세를 펴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은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을 상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文化宣傳攻勢를 펴고 있다.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하루 아침에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 천년에 걸친 일본 전통문화의 산물임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포들이 한국 전통예술의 仲介者로 현지 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효과는 일본의 행사 위주의 문화정책보다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國際化時代에 걸맞는 역사관과 민족관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현지 사회에 접목시키고 독창적인 후세 교육을 실시하여 모국애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재외 국민교육의 목표는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속의 한국인 육성」에 두고 있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移民政策과 형식적이며 현상유지에 급급한 僑胞政策 등으로 재외 국민에 대한 교육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교포들은 민족 동질성을 갖지 못한 채 한국인으로서의 正體性을 잃게 되었고, 전통문화의 계승이나 민족후계자로서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다.

재외국민의 현지 교육을 위한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

는 일본에서도 민단계 교포의 자녀는 대부분 일본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의 해외 교포들은 사실상 民族教育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국내 국민교육 이상으로 재외 국민교육에도 각별한 국가적 관심과 支援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민족 후세대 육성을 토대로 해야만, 국가 발전이나 민족번영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자유 평화와 모든 인류의 福祉增進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교포 2세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치열한 國際競爭時代에 대처할 수 있는 해외 협력자를 양성하고 그로부터 국내 기업의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동포를 망라한 文化共同體를 구성하며 거주국의 정치체제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가 일체감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드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한민족의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한민족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과 국제적 文化交流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과거의 분열·대립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團합과 自矜心을 불러 일으킬 때이다. 그러므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삶 속에서 이질화된 민족성을 극복하고 民族共同體

를 형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限時的인 特別委員會 設置 運營

교포관련정책을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特別委員會를 한시적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정통성 시비 및 인권의식의 약화로 우리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僑胞政策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과거의 수세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능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80년에 147만명에 불과했던 在外國民 數는 사회주의권의 236만명까지 가산되어 1993년에는 총 해외교포수가 5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며, 國內 人口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교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 실무자, 교포 문제 연구자, 海外僑胞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해외교포들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서 시작하여 앞으로의 정책기조 및 정책 방향의 수립,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모국정부·교포단체·사회단체 간의 役割分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교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교포업무 담당 실무자들의 해외교포들에 대한 편견과 部處利己主義에서 생길 수 있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2) 「海外 韓民族 人權委員會」構成 支援

해외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해외교포들의 권익옹호 및 민족복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해외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인권문제는 개별 거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문제로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겠다. 대부분 해외교포들이 일제 하에 조국을 떠나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앞으로는 이들의 人權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교포들이 제의한 「해외 한민족 인권위원회」 구성을 지원해 주고 각국의 법률가, 지식인, 언론가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동포들의 法的地位向上과 권익옹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로 입양된 사람 등 흩어진 한민족들을 찾아내어 민족의 일원으로서 조국과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民族共同體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해외 한민족 인권위원회」 활동시 僑胞들이 거주하는 거주국 정부와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간단체의 활동이며, 최근 UN 등에서 다민족 사회내에서의 少數民族의 권익 옹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미국·일본·러시아 등에는 인권옹호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으므로 이들 단체로부터 유기적인 協助體制와 支援을 구할 수 있어서 거주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번 LA사태시에 나타난 비조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방식으로 미국측의 반발을 산 일과 같은 예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少數民族問題에 매우 민감한 중국정부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립국가연합 각지에 흩어져 있는 舊蘇僑胞들의 보호를 위해서, 재일교포들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전문가들이 포함된 人權委員會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3) 僑胞問題 全擔 政府機構(假稱 僑民廳)의 設立

현재 해외교포는 129개국에 약 500만명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교포들이 대부분 현지 국가의 國籍을 취득하거나 市民權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이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관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單一民族國家이면서도 수십년 동안 분단된 상황 속에서 살아 왔고, 경제적으로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증대와 자원확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現地僑胞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 조직법상 교포 행정의 업무와 기능이 12개 이상의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

이며 일관성 있는 僑民政策의 수립·기획 및 행정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²⁾ 여기에 중국과 독립국연합과의 수교 이후 僑胞社會가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정부 기능은 다원화되고 업무의 능률은 저하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이들 재외교민들의 現地適應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과 모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포단체, 관련 학자,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³⁾

이중 가장 구체적인 이구홍의 안을 살펴보면, 업무의 조직적 통합을 통해 해외교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관할 기능의 一元化와 效率化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의 교민처 혹은 외무부장관 소속하의 교민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

교민문제 전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2) 이종훈, 「교민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현안분석 제58호」(서울: 국회도서관, 1993. 4), pp. 11~12.

3) 독일이 내무성을 중심으로 CIS내 독일민족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사례이다.

4) 교민처(청) 안

보호조사국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감독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단체의 지도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국적·호적·병적 및 訴務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첫째,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교포들의 安全과 權益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해외동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책화하는 교민 담당 기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移民政策 전반에 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실무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교포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민전담기구의 설립으로 科學技術 정보와 經濟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교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와 경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교육문화국

1. 재외국민의 교육·장학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해외유학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과의 문화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본국유학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에 대한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외국인과의 친선교류의 관한 사항
7. 재외장학관·공보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민경제국

1. 국민의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2. 이민대상국과의 이민교섭에 관한 사항
3. 이민사업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해외취업에 관한 사항
5. 해외취업자에 대한 노동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외노무시장의 조사·개척에 관한 사항
7. 해외 취업자의 기능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외재산에 반입에 관한 사항
9. 재외국민의 경제활동육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적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국의 해외교포들이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부나 북한, 러시아 지역에서 경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吉林·延邊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동포들의 노동력과 일본 등지의 동포들이 가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미국 및 한국의 자본이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僑民廳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교포들의 문화·예술단체들과 본국의 해외 공연 기획을 연결시킨다든가 또는 현지의 우수한 예술가들을 본국과 연계·집중 지원하는 關係網을 형성하여 각 단체 간의 정보 차단에서 오는 중복되는 행사와 산만한 활동을 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해외 특히 주변 4국의 僑胞 指導者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외교포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법률, 언론, 정치를 연구·분석함은 물론 2세 법률, 언론, 정치 지망생과 관계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워크숍 개최 및 본국의 민간 단체들과 연계된 연수 등을 통하여 역량있는 指導者로 기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교포들은 인구수에 비해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지

지세력 확보나 법률적 대응 및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僑民廳과 같은 책임있는 부처의 활동과 지도를 통해 이러한 교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교포들이 거주하는 거주국의 입장에서라도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移民管理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최근 들어 줄고 있는 해외이민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舊蘇聯 해체 후 在蘇 독일인에 관한 정책을 관계국과의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민청 설치를 통한 여러가지 효과들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기관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反論이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교민청 신설안에 따른 문제점(외무부 견해)과 문제점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이미 세분화되어 수행되고 있는 각 부처의 교포 업무를 僑民廳으로 흡수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민청을 신설해도 관계 부처와 2원적 업무수행체제가 불가피하여, 국정의 非效率性을 초래할 뿐인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포업무 수행 과정을 보면 교포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재외국민국장의 임기가 짧은 데다가 循環勤務를 하기 때문에 교포정책 전반에 걸쳐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정책수행이 어려우며 타부처와의 업무 조정시에도 部處利己主義 때문에 정책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능률을 고려할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에 역행한다는 결론은 교포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이다. 기술 장벽과 선진국의 수입 제한, 과학기술 정보의 한계, 민족통일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백만 해외동포가 일궈 놓은 그 터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민족의 潛在力을 발휘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도외시한 行政 便宜主義의 산물이다.

둘째, 교민들의 대본국 기대 심리만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민청 설립건에 대하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부정적 결론(1989년 7월)이 내려졌다. 이는 그동안 교포 1세들의 지나친 母國指向性이 문제가 된 것이다. 거주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본국에 대한 관심으로 보상받으려 하며 본국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아울러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교포사회는 1세 중심에서 2세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청 설립으로 인한 교포사회의 과도한 期待心理를 염려하기보다는 교민청을 설치하여 모국과의 연대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우수한 교포 인력의 한민족동질성 유지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僑胞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본국 정부 유력자나 정치인을 통해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문제로 현

지 공관의 교민행정에 혼선은 물론 현지 교포들간에 違和感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교포 문제를 전담하는 현지 공관이나 본국 정부의 정책이 교포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一貫性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정부에서는 교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部處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민청 신설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에 교민 담당 비서관 제도를 신설(1993. 5. 12)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在外國民에 대한 보호와 관할에 관한 국가기능은 개인의 능력 및 지위의 향상과 국제 생활권의 확대 경향에 따라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민담당 비서관 임명은 僑胞社會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가질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4) 名譽市民證制 導入

1948년 世界人權宣言에 국적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사람이 모국을 떠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권리(13조), 누구도 부당하게 그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기본권리(15조), 가족이 이산되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 기본권리(16조) 등을 보장하고 있는 바, 우리 교포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⁵⁾

5) 김오동, 「재외국민 보호방안」(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88), pp. 58~64.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동포들에게 二重國籍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美 洲 僑胞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어 전교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⁶⁾ 약 5백만에 이르는 우리교포의 해외이주는 세계 이민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의 대이동으로(본국 인구의 비율과 분포국 수에서는 단연 1위이다) 교포 수에서는 華僑가 2천 2백만, 유대인이 1천 5백만, 이탈리아가 5백 5십만, 한국이 5백만으로 넷째이지만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이중국적 소유자가 기회주의자로 치부되거나 국제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두통거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불허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장기적 발전에 어떤 정책이 더 유리한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포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名譽市民證 制度를 고려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 제도는 이중국적 허용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한국 교포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비록 거주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외국인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永主權 제도처럼

6) 미국교포 중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73%에 달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나, 고학력자일수록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문제연구소·한미교육개발원, 「미주동포들이 보는 조국」, pp. 122~129.

참정권 행사만 제한할 뿐, 국내의 모든 활동은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고 해외교포들에게 여타 외국인과 법적 지위면에서 구별되는 명예시민권 명칭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명예시민증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所屬感의 強化

외국에 귀화해 살고 있더라도 명예 시민권이 허용되면 소외감 대신에 소속감을 갖게 되고 본국 뿐 아니라 타국의 한인 교포들과도 連帶意識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창출해 낼 수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소유했던 1세가 아닌 2세, 3세에게 한국에 대한 연대의식과 자기 조국이라는 所屬感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조국이라는 의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母國語教育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며 2·3세들이 모국어를 잃게 되면 한민족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 대만인 및 중국인, 폴란드인들은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자국에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自國人이 된다. 유대 민족이란 인종 또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느냐에 따른 종교적 개념이고, 중국인도 복합민족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며,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歸巢本能이 강하다. 외국에 살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조국을 방문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이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

구 정착성 이민이 아니라 歸巢 意識性 이민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국지향적 성향을 살려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명예시민증제도는 필요하다. 또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名譽市民證制度는 도입되어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험에 의하면 西獨의 국적조항이 동서독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즉 동독인이 서독에 오면 그날로 서독국민이 되어 복지혜택을 받고 서독여권을 받아 해외로 여행할 수도 있게 되어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와 통일이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高級 頭腦의 誘致

고급 두뇌들이 조국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居住國 國籍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교포들이 귀국시 거주국의 국적을 포기하면 그동안 축적한 연금 등 혜택들이 무효화되고 자녀가 거주국의 시민으로 남아 있을 경우 居住國 國籍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국발전에 공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해도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國際化時代를 맞아 국경을 초월한 인력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민족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명예 시민증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다) 經濟活動 保障

해외교포들이 조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하다.

1987년 대미수출은 183억달러이고 수입은 87억달러로 한국은 96억달러의 貿易純收益을 얻었다. 1988년에는 대미수출 214억 달러 수입 128억달러, 무역순수익 86억달러, 1989년에는 대미 수출 206억달러, 수입 159억달러로 무역순수익은 46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1987년도에 해외교포들이 송금한 액수는 15억달러, 1988년 20억달러, 1989년 30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일년 동안에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지참하고 나간 1억 5천달러의 약 20배에 달하며 이와 같은 巨額을 송금하게 된 것도 불과 10여년에 걸쳐서 이룩한 결과이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성금 중 93%가 해외교포들에 의한 것이었다.⁷⁾ 이러한 성향을 가진 교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制約을 받을 것이고 이들이 거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사업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더욱더 조국의 경제발전에 헌신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華僑들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자 그들에 의한 투자가 활발해졌고 중국에 개방의 물결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財産權 행사의 경우 이스라엘은 해외교포의 본국내 재산권 행사에 본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재산권 행사는 내국인과 같고 국내 투자를 할 경

7) 평화문제연구소·한미교육개발원, 「미주동포들이 보는 조국」, pp. 133~134.

우 稅金減免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앞으로 우리의 不動產市場도 개방될 것이므로 교포들의 국내 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고가 없어지면 자연히 조국과의 연대는 희박해지기 때문에 한국도 교포들의 名譽市民權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인정할 경우 본국에 대한 경제지원 및 북한에 개방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라) 民族空間의 擴張

지구촌 시대에 국경을 넘어 한국인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국가의 힘이 신장되며 우리 민족의 생존영역이 넓어지고 經濟圈과 文化圈도 확장된다. 이러한 민족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 居住國에서의 權利 確保

한국의 국적법은 국적을 이탈하고 싶지 않으면 거주국의 영주권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國籍法上 교포는 우리 국민이지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권리·의무행사에서 내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所得稅法에서는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는 내국민과 재외국민(국내 비거주자)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外資 導入法에서는 우리 국적 소지자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

특법에서는 국외 이주를 필한 자는 국내에서의 住民登錄을 불허한다. 증권투자에 있어 영주권자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식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다. 旅券法에서는 해외교포들의 국내체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교포의 경우 3개월간의 비자를 내주고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중국교포의 경우 1개월간의 비자를 내주고 2번 연장을 해주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연장시에는 귀국할 비행기나 선편의 티켓이 있어야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 現行法에 의하면, 교포들은 본국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차등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등대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 중 약 20%만이 美國 市民權을 보유하고 있으며(이들중 90% 이상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교포들은 미국 市民權을 취득하지 않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포들이 빨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길만이 재미교포사회의 政治力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다.

현재 교포들이 居住國 國籍을 가지고 거주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예들은 독립국가연합이나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거주국 시민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影響力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포에게 명예시민증을 허용해 주게 되면 교포들이 거주국 국적을 획득하여 거주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교포들의

권익과 조국 발전을 측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변 4국의 한민족 정치인들이 조국의 발전을 위한 協議體를 구성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아랍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대민족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이 될 것이다. 또한 4국의 정치 기구 안에 한민족이 자리잡게 되면 과거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문화와 민족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로 충분히 우리측 이해를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막대한 國庫浪費만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현지 교포 정치인들이 모국의 권익만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中間 役割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쌍방이 만족할 타협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로섬게임이 아닌 경우 교포 정치인들의 활동이 기대되며 특히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기 보다는 임박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國際 慣行에 대하여 정보가 늦은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현지 교포들의 정계진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명예시민증제도 도입시에 교포에 대한 양국의 외교 보호권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포들의 對本國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해외교포중 거주국과 모국을 자기편의주의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 民族同質性 守護를 위한 教育政策

앞으로의 재외국민 교육은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역사관과 민족관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현지사회에 접목

시켜 한민족의 文化空間을 확보하고 한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 現地 文化接邊 現象과 관련된 프로그램 開發

해외 교포들의 2세교육에 대한 기대는 모순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2세들이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2세들의 疏外現象을 염려하고 있다. 1세대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2세의 상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현지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2세의 모습이다. 이는 우리 政府의 政策과도 일치되는 바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집안 생활에서 조차 한인 2세의 일상 생활은 현지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이에 한인 부모들은 한국적인 문화와 접할 수 있는 한국학교와 韓人敎會, 한인단체 활동 등에 자녀를 참여시키지만 2세들끼리 만났을 때 이들이 자연스럽게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한국적인 행사들도 2세들의 현지 문화로의 文化接邊 과정을 상쇄시킬 만한 무게를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지의 문화접변 현상을 고려하여 韓國文化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현지 실정에 맞는 국어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 우리 전통과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 개발과 사전을 편찬하여야 한다. 그리고 二重言語와 二重文化에

중점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주 지역의 교포가 여름방학 동안에 연변에 가서 영어camp를 설치하고 중국교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자신들은 그곳에서 한인들의 고유한 生活風習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의대생 봉사단과 중국한인 의대생들이 사할린이나 기타 무의촌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프로그램 등 한국민의 세계시민화 교육 및 海外僑胞의 한민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국내 공민교육 이상으로 在外 國民教育에도 각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현지 사회에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보급하며 교포자녀들에게 조국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포사회에서 韓國學研究所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포들의 모금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국 경제단체들의 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稅金減免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나) 民族教育 育成方案

민족교육 육성방안으로 첫째, 각 지역 僑民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後世教育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먼저 교포의 거주실태, 지역 특성과 사회환경 그리고 교민들의 요구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환경 여건에 따른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유형과 내용을 검토하여 교포 자녀를 위한 教育體制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후세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확정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과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규과정 학교는 한국적인 正體性을 잃지 않으면서 현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포들이 밀집한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기 민족의 말과 문화·역사를 모르고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으며 地球村時代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민족 교육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민단학교와 LA한국국민학교·중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活性化 方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특히 타민족과의 결혼을 염려하는 교포 1세대들은 교포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가 해외의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中國 延邊의 과학기술대학 같이 국내외 동포들의 후원으로 건립되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과 산업기술훈련학교, 광주직할시의 유지들에 의해 세워진 타슈켄트 한글학교 등 民間 次元에서의 교포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타슈켄트 한글학교 같이 지역 주민에 의한 교포 교육기관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과 교포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리 국민의 世界 市民化와 현지 교포들의 민족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 차원의 각종 교육사업 지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 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생·자립적 교육기반 조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民族教育을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放送教育을 활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과 방송통신고교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고 국내의 교육교재와 Tape 또는 Video Tape를 활용한다. 현지의 실제 교육은 현지에서 유자격자를 시간강사로 확보하고 강의장은 현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2세 이하 교포에게서는 民族性 維持가 문제이므로, 이들의 민족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본국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 CIS 등 구공산권 지역 교포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글교육 등 民族教育 支援을 강화하고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설치 및 본국교사 파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포 청소년과 민족 교육자의 본국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모국 傳統文化의 계승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포 밀집지역에 고전무용가와 국악강사 등을 파견하고, 예술단 순회공연을 실시하며 문화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활동이 體系的으로 행해지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국내에 알려진 단체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초청된 인사가 계속 초청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情報交換 및 調整이 요구된다.

여섯째, 東榮장학재단처럼 국내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늘고 있으나 이러한 재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려면 상호 정보교환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支援對策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다) 統一教育의 內實化

통일을 대비해 민족교육과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內實化를 기해야 한다. 교포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교포 2·3세대로 넘어 가면서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일 의지를 교포사회에 확산시키는 教育 및 運動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교포들도 참가하는 교육기금 募金運動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교포 교육정책과 마찰할 가능성도 있으나 교재나 사전의 공동편찬 등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共同作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교포사회에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교포사회가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6) 傳統文化의 繼承과 保存政策

해외동포를 망라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며 거주국의 政治體制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서로가

일체감을 나누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드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文化政策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문화예술 수준이나 현지 교포들의 문화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정책이었으며 전문가가 아닌 實績 위주의 행정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한민족의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한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고 多民族社會에서 한민족 문화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한민족 고유문화의 전통을 살리며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文化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포 예술단체의 現況을 파악하여 문화정책 입안시 활용한다. 또한 고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교포 예술인들을 발탁하여 모국방문의 기회도 주고 국내의 藝術運動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지의 교포 전문인들에게 문화활동의 수준 등에 관한 자문을 얻어 文化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의 해외문화 투자가 해외 예술인과 교포단체의 문화계승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작가 등 교포 예술인을 활용하여 현지 청소년의 감각에 맞는 교육·문화행사 등 民族正體性 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민족문화제를 개최한다. 재일동포 밀집 지역인 오

사카 이쿠노구의 「이쿠노 민족문화제」 같은 문화제를 활성화 하여 民族的 同質性을 확인하는 민족행사를 개최한다. 이러한 문화제는 교포들의 기부금으로 치뤄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거주국 주민인 日本人들의 반발을 샀으나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이 지역의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LA한인타운에서 열리는 한국축제처럼 이러한 文化行事가 교포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7) 「海外僑胞의 날」 制定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海外移民을 송출하기 위해 綏民院을 세웠던 8월 30일을 「해외교포의 날」로 제정하여 해외교포 문예작품 공모전이나, 해외교포 예술제 등 각종 기념행사와 합리적인 정부의 포상제도에 따른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교포들의 祖國愛를 고취시키는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해외교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民族同質性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교포사회의 현황이 홍보됨으로써 교포들에 대한 내국민들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世界市民意識을 불러일으켜 최근 감소되고 있는 해외이민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 후 잉여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海外移民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이들을 기반으로 유사시 인력

송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상징적 의미와 波及效果가 큰 해외교포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海外僑胞會館 設立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포와 모국과의 실질적인 紐帶가 강화되어야 한다. 1975년 7.4공동성명 2주년을 기하여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조총련계 교포들의 성묘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후 방문단은 새로운 祖國愛를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조총련계 교포들이 민단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의 실상이 공개되자 북송 희망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북송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우와 같이, 전시용 행사보다 실제로 母國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참된 조국애를 느끼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인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 센터에서는 母國訪問에 따른 제반 편의(산업시찰, 관광, 예약, 숙박)를 제공하고 모국의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와의 연계, 모국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센터 안에 각종 전시실을 설치하여 교포 예술인들의 작품전시 및 모국 상품과 교포상품 상설전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호텔을 운영하여 본국의 연고자가 없어 母國訪問이 용이치 않았던 교포들의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 교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에만 僑胞會館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해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교포회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회관에 과학기술자협의회, 무역인협의회, 상공인협의회 등 경제인협의회, 문화인협의회, 인권협의회, 민족교육협의회 등의 교포단체들이 상주하여 각종 정보 및 현안 등을 본국과 直通 情報網(Information-Super-Highway)을 통해 교환·협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 본국의 기업인이나 관광객들도 이곳에서 제반 편의를 제공받고 교민 간의 정보교류, 문화행사, 집회를 통해 交流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정부 간행물, 민간단체 간행물, 비디오 Tape 대여 등으로 교포들이 조국의 번영과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自負心과 참여의욕을 갖도록 유도한다.

교포회관 건립은 특히 국내 연고가 없는 2·3세 교포들의 조국과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 다양한 환경과 체제 속에서 살아 온 한민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한다는 점 등 期待效果가 크므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포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資金確保가 제일 큰 문제이다. 자금조달 방안으로 해외교포 회관은 국민들의 해외교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國民誠金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는 교포사회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부족한 금액은 한국 국민성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및 회원제로 하여 기부금을 낸 교포는 회원으로 국내교포회관이나 해외교포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9) 僑胞業務 擔當者의 意識教育 實施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부 관행속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교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였기 때문에 본국과의 紐帶關係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교포들의 편의보다는 無事安逸主義나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러시아 당국이 1993년 7월 1일부터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20%씩 물리기로 결정한 후 대다수(88개국)의 국가들은 이미 상호간 협정을 통해 附加價值稅를 면제받았다.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 북한까지도 자국민을 위해 조치를 다 취해 놓았으나 한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公務員 教育을 통하여 교포사회의 커다란 불만 중에 하나인 교포업무 담당자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고 조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反韓勢力의 親韓化 등으로 교포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 「望郷의 동산」弘報 強化

「망향의 동산」을 교포사회의 영원한 정신적인 聖域으로 홍보하고 모국과의 지속적인 유대의 연결고리로서 활용한다.

유난히 歸巢本能이 강한 교포들 특히 교포 1세들에게 고국에 묻힐 수 있음을 알리고 2·3세들에게 성묘 방문 등의 기회를 만들어 모국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

나. 「3段階 3基調」統一政策 支援을 위한 僑胞政策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하여 「3단계 3기조」統一政策 支援을 겨냥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포정책은 분단된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교포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과거의 分裂·對立政策을 청산하고 민족적 단합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때이다. 그러므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속에서 살아온 교포사회의 단합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平和統一을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교포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和解·協力段階

동서냉전체제 종식, 한·중, 한·독립국가연합 수교 등에 의

하여 교포사회의 理念對立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하여 신정부의 3단계 통일구도는 화해·협력단계를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화해·협력단계에서의 교포정책은 북한의 改革·開放을 촉진시키고 각 분야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교포들을 활용하고 교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北韓의 改革·開放 促進과 南北交流 活性化를 위한 政策

1) 海外僑胞社會에서의 體制競爭 止揚

7.7특별선언(1988년), 7.20개방선언(1990년) 및 1991년 9월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海外僑胞의 訪北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일본 및 북한·미국이 수교할 경우 일본과 미국 교포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感傷的 統一論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교포들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친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남한 정부가 이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해외 교포사회는 재일교포 사회처럼 분열될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體制競爭을 지양해야 한다.⁸⁾

또한 문민정부 수립으로 반정부 인사 또는 단체의 활동 근거와 기반이 상실됨에 따라 그들의 활동도 세를 잃어가고 반

8) 김오동, 「재외국민보호방안」, p. 27.

韓的 성향을 가지고 있던 교포들도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한국에 대해 友好的인 반응을 보이는 등 교포사회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 교포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남북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남북 대립관계의 극복, 북한의 개방과 統一 韓國의 실현을 위해 해외교포들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 海外僑胞의 訪北 申告制度 改善

통일운동으로서 정당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한 민간 차원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南北交流 協力에 관한 법률 중에는 재외국민의 방북시 재외 공관장예의 신고제도 조항(제9조 제2항)과 처벌규정(제27조 제2항 제2호)이 있다. 그러나 이 신고제도는 그 준수를 강요할 수 없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교포의 訪北申告制度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나) 海外 弘報物에 있어서의 偏向性 止揚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냉전체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권 옹호 목적의 해외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가 공지사항을 교포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弘報 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다) 非政治的인 事業의 共同開發·推進

친한, 친북교포가 동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南北對峙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일본, 중국, CIS) 등에서 비정치적이고 비경쟁적이면서도 민족의 이익 또는 공통 관심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權益保護 및 和解를 위한 남북공동사업으로 첫째, 이산가족 재회를 공동지원하고, 민족교육지원을 위한 공동교재를 편찬한다. 둘째, 각 국가별로 남북공동사업을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의 남북공동사업으로는 전후보상문제 및 民族差等, 취직·취학·공무원임용·연금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들 수 있다. ② 중국에서의 남북공동사업으로는 東北3省에 남북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중국동포의 경제적 권익보호와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등을 들 수 있다. ③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남북공동사업으로는 在러시아 韓人名譽回復 決議文 이행과 민족분규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교포들의 정착 등에 대한 공동지원을 들 수 있다.

2) 僑胞를 媒介로 한 南北韓間의 信賴構築 및 交流活性化

신정부 3단계 통일과정 중 제1단계인 「화해 및 협력단계」의 설정은 현재의 남북간의 긴장과 敵對關係를 해소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간의 불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남북간의 直接交流와 協力

은 어렵다. 따라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해외교포를 통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人的 交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성과의 70~80%는 華僑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在中僑胞들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화교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中國僑胞들이 남한을 방문했으며, 또한 매년 1~2만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국경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여행이나 학자초청 등 民間交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을 완충지대로 이용했던 것처럼 연변지역을 남한과 북한의 緩衝地帶로 활용할 경우 재중교포들의 매개자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재일교포들의 북한과의 교류도 매우 활발한 편이며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송 교포들의 일본 방문과 그 가족들의 北韓訪問 등으로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북한과의 교류확대는 북한을 改革·開放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獨立國家聯合 僑胞들도 그동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북한과 교류하였는데 현재는 아쇼크를 중심으로 북한과 교류가 진행

되고 있어 이들도 남북한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僑胞들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기회는 주변 4개국 교민 중 제일 적으나 재미교포의 북한방문과 북한 축구팀, 북한 학자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는 바, 북한과 미국의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교포들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포들의 인적 교류가 남북간 信賴造成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센터를 연변과 연해주, 일본 등지에 설립하고 남북한 도시와 교포 집중거주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맺어 주민들의 相互訪問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文化交流

교포들의 문화·예술·체육단체들과 南北韓의 예술가들의 교류 및 해외공연을 후원하여 경축행사, 문화행사, 학술대회, 체육대회 등을 공동 개최하고 文化交流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의 경우 문화행사를 위해 남북의 직접 방문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제3국에서의 교류만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타슈켄트 국립사범대의 경우 한국교수와 북한교수가 나란히 한국어를 강의함으로써 學問的 交流 및 국어의 이질화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포사회를 통한 남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포들은 남북간의 접촉마당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간의 접촉마당을 통하여 이질화되고 양립된 남북한 문화의 공통적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民族文化의 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학문, 예술, 체육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류를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民間部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단체간의 개별적이고 방만한 활동을 민족문화 창조로 유도하는 정부의 調整作業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교류는 비정치적·비이념적 분야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다) 經濟交流

남북의 직접 경제교류가 부진한 상태에서 제3국을 통한 경제교류를 촉진시킴으로 남북의 經濟力을 높여주고 경제구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하는데 교포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 사업을 해 온 재일 교포들의 경험 및 북한과 접촉이 많은 중국 교포들이 북한 인사들과 맺어 온 개인적 신뢰 등은 「和解·協力段階」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在日 僑胞社會는 그동안 상당한 부를 지닌 東京과 大阪 지역의 교포들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에 많은 경제지원을 하였

다.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조국에 대한 經濟支援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접목시켜 南北經濟交流의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在中僑胞들은 우리 기업의 北韓 進出이나 중국을 거친 迂廻 輸出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포들이 대북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포 인사와 북한 인사와의 개인적 신뢰를 통한 남북 인사간의 신뢰구축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東北 3省은 남한·북한·러시아 연해주지역을 연결하는 한인경제블럭 형성의 중심적 거점으로 통일과 통일 후 우리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在美僑胞들은 자본·판매력·현지시장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국경제 발전에 주변 4개국 중 제일 많은 지원을 하였다. 앞으로도 미국의 교포들은 통일비용 및 북한의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潛在力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포들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일본과 미국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경제력, 소련·중국·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기술 등이 합쳐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合作事業을 통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과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장확보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연고권을 활용한다면 현존하는 초국가적 거대 기업이 가진 世界性을 확보할 수 있으

므로 대북한 개방효과 및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져 서방의 기업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교포 經濟人들의 역할을 모으는 정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라) 技術交流

인적 왕래와 비정치분야의 交流·協力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적교류 및 문화·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미칠 波及效果를 우려하여 북한이 교류에 소극적일 때에는 특히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비정치적인 과학·기술분야의 교류에 교포 인력을 활용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북한은 1992년 10월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에서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合作을 장려하였다. 미국에 있는 교포 학자들은 한국에 새로운 연구소가 생길 때마다 모국에 와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8,000명의 재미교포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신소재·컴퓨터 관련기술·생명공학 등 최신 高級情報 제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기독교 의사단체에서는 1993년 8월 평양 제3인민병원의 설립을 집중 지원키로 하고 최첨단 의료기재와 각 전문분야의 수술장비 등을 마련하여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재미교포 과학자들의 북한방문은 활성화될 것이며 이러한 人的 交流와 情報交流가 북한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차츰 이들을 매개로 하여 남북한 기술인력 교류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일본의 교포 과학자들은 재미교포 과학자들처럼 組織化되지 못하였으나 약 900명의 교포 학자들이 중요한 기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제조기술 분야의 교포들은 남북한의 技術移轉에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 민간계와 조총련계 교포들이 통합된다면 남북한 기술개발에 막강한 지원을 할 것이다.

구소련의 在蘇韓人들을 통해서 북한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구소련의 방위산업체와 관련된 새로운 尖端技術의 이전과 기초과학 연구 등에 남북한 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연변에 새로 설립된 공과대학과 같은 민족대학을 통하여 최신 기술, 정보 등을 교환한다면 在中僑胞들은 북한에 대한 이전자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거 해외공관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文化行事를 추진하던 교포단체들이 정책변경과 해외공관장이 바뀔에 따라 행사를 중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신뢰구축의 매개자로 교

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나) 海外僑胞社會의 團合을 위한 制度改善

南北韓 관계에 있어서 교포사회가 親韓, 親北으로 양분되지 않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기본적으로 교포사회가 민주, 자유, 복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생활을 하도록 계도하는 등 親北人士 및 團體에 대해서도 의연한 자세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在外國民 補助金制度 補完

교포사회의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정부는 한인회 등 주요 교포단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在外國民 補助金制度는 정부가 배후에서 동포들을 조정하는데 원용되었고 교포사회의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의 설립 등으로 교포사회 분열에 일조를 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보조금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포단체들이 교포사회에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조금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2) 平和統一諮問委員會의 制度 改善

평통자문위원회는 본국의 憲法機關으로서 해외동포가 본국의 헌법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평통해외자문위원이 진정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려면 우선 거주국

교민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라야 한다. 또한 평통은 통일지향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기능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은 道德性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통일지향적 인사가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지역대표성이 없는 위원 선출로 인한 잡음을 없애고 인선 및 운영 등 전반에 걸친 制度改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在外國民들을 대상으로 한 募金 中斷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모금을 강요하였으며 모금 실적으로 領事館의 실적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실명제로 정치자금의 압박을 느낀 일부 정치인들이 교포사회에 後援會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또한 교포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

(다) 統一環境 造成을 위한 僑胞役割 活性化

이질화된 민족사회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민족통일과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통일정책의 조언자로서,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자로서의 주변 4개국 교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변 4개국 교포들이 統一環境 造成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국내·국외적 역할을 살피기로 한다.

1) 南北韓 統一政策의 助言者 役割

해외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해외교포들은 民族分斷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남북한 국민들보다 더 한반도 통일을 절실히 바라며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批判的인 시각을 갖고 있다. 남측과 북측이 진정으로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포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교포들은 이러한 體制競爭에 교포들을 끌어들여 남쪽에선 「해외한민족 대표자회의」와 「한민족 체육대회」가 열리고, 북측에선 「범민족대회」를 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해외교포들 중에는 남에 와서는 북을 욕하고, 북에 가서는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남북한의 信賴造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여 온 점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포들은 남한이나 북한 그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해외교포로서 民族統一을 돕겠다는 자세로 한반도 내에 있는 정치단체나 정부에 조언자로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이러한 교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거 재일교포들은 그동안 교포사회가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지고 그 단체들의 핵심 멤버인 교포 1세들이 本國 指向的이어서 본국의 정치발전에 조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민단과 조총련의 통합 필요성이 교포 2·3세대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단체가 통합된다면 남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 및 통일방안에 중요한 助言者 역할을 할 것이다.

독립국가연합과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고 최근에는 남한정부와 국교를 맺어 이 지역 교포들의 南韓訪問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세기 동안의 대결로 축적된 불신과 경계심을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체제 차이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남북연합단계로의 이행과정 전에 보완되어야 할 문제 등 남북한의 統一政策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포들의 역할이 통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통일정책, 통일과정 및 통일미래상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하겠다.

미국교포들은 남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民主化鬭爭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의 여론화 및 새로운 통일정책의 제시 등으로 조국의 政治發展에 기여할 것이다.

2) 國際的 統一環境 造成者의 役割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현지 교포 각자가 홍보요원이 되어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投票權 행사나 政界進出을 통해서 조국통일에 필요한 거주국 여론 및

국제여론 조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가) 僑胞들과 居住國의 有力 人士들의 모임 結成 支援
 현지 교포 및 교포 言論媒體들이 해외 언론 및 방송에 적극 참여토록 하며 특히 젊은 교포 2세들이 현지 사회에 진출을 많이 했으므로 전문분야에서 연계망(Network)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미국 등의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위력이 크므로 僑胞의 權益이나, 한국의 통일환경 등에 관한 정책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방송 관계인사들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의 訪韓을 주선하고 이들을 통한 한국의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僑胞 政治人 育成

미국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교포 정치인의 수는 적지만, 교포 2~3세 중에는 영향력있는 실무자가 많다. 또한 교포들이 政治獻金을 통한 美정치인들과 활발한 교류로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二重國籍 문제가 적절히 해결된다면 투표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교포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 만하다.

재일교포들 역시 일본의 國際的 位相이 높아지고 최근에

와서 교포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공산당 및 몇몇 高位職에 재중 한국교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덕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장을 역임했고, 제2회 동계 아시안게임 중국선수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또 그는 1993년 8월 한국·중국·북한·구소련 同胞들을 불러 한민족체육대회를 장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國際的인 統一環境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統一을 위한 積金通帳 갖기 運動 展開

통일을 위하여 한민족 전체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민족 한사람마다 통일을 위한 積金通帳 갖기 運動을 전개하여 해외 교포에게도 통일의 임무를 부여한다.

4) 한인타운 建設

교포들이 마음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경제·문화의 중심지를 교포 밀집지역이나 남북한인접지역에 건설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文化交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南北聯合段階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단계로서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남북한 간의 直接交流가 활성화되는 시기이므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해외

교포들도 사안별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학술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화해·협력단계에서는 海外僑胞들이 주체가 되어 남북한을 초대하였다면,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된 각종행사에 교포들이 참석하여 함께 민족의 同質性 回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중국·독립국가연합의 교포 경제인들이 북한 국영기업의 공영화 및 사유화에 대하여 政策諮問을 할 수 있고 美·日의 교포기업들은 남한의 기업들과 함께 북한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고 상품시장 개척에 일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빈부격차 등 社會問題,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 등 남북한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교포들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3) 統一國家 段階

통일후 사회적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교포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同質性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소외감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의 再社會化 경험을 활용하여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교포 統一基金을 활용하여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펴고 교포 기업인들의 모국 人力 送出을 적극 지원한다. 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 출신 교포들의 출신지역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자본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에 僑胞 人力을 활용한다.

다. 民族의 未來를 위한 僑胞政策

21세기 민족공영을 위하여 모국과의 실질적인 紐帶를 강화하고, 해외교포들의 권익옹호 및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능동적·종합적·미래지향적인 방향과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僑胞政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1) 僑胞들과의 役割分擔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교포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僑胞政策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국경없는 사회(Boundless World)로 되어가고 있는 바, 우리의 「한민족 공동체」 형성도 이러한 世界的 趨勢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 후 남북한 인구 부양과 經濟成長을 위해 식량·에너지·비연료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늘어날 것이므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移民政策을 펴야 하며 한민족공동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국의 해외교포들이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단일 조직과 複合經營戰略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동북부나 북한, 러시아 지역에서 경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吉林·延邊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동포들의 노동력과 일본 등지의 동포들이 가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미국 및 한국의 자본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全擔機構가 필요하다.

(2) 經濟分野에서 本國과의 紐帶強化

경제공동체 형성, 시장개척 등의 경제분야에서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 經濟共同體 形成

냉전체제 붕괴와 공산권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과 일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기초로 이 지역에 걸친 經濟共同體(코리안 벨트)를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포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⁹⁾ 中國 東北 3省

9) 코리안벨트(Korean Belt)란 용어는 통일광복민족회의가 1993년 6월 12일 개최한 통일세미나에서 신철균교수가 사용한 것이다. 「중앙일보」, 1993년 8월 14일.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에의 진출 및 현재 참여 계획 중인 두만강 지역개발은 북한의 開放化를 가속화시켜 평화통일의 기반과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중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을 정도까지 經濟力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국과 교포 사회에 공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교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經濟 通商分野에서도 교포들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부는 중국과 일본이 갖지 못한 무기, 즉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僑胞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진출 시기를 놓치면 연해주의 나훗카 지역과 중·소 국경지대인 훈춘 아래 크나스키 일대에 日本·中國이 침투해 와 한민족 주도의 한태평양 경제블록 구축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市場開拓

교포 무역인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거주국의 실정에 밝은 교포들의 지원을 받는 한편, 교포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육성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新商品開發과 市場開拓에 僑胞人力 活用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축적이 필요한

상품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를 지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기존 상품의 高級化·高價化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때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교포로부터 자문받도록 한다.

현대는 소품종대량생산·대량소비로부터 다품종소량생산·개성소비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상품의 수명도 매우 짧다. 따라서 대기업에 의한 「綜合市場 管理」 전략은 중소기업에 의한 전문시장 개척 전략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현지 시장 개척에는 해당 국가의 經濟政策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소비자의 수요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수출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독자적 流通構造를 구축해야 하므로, 종전의 「수출 마케팅」 체제에서 「현지 마케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마케팅을 위한 신제품 개발, 광고·판매전략, 유통 시스템에 관한 戰略樹立에 문화적 배경에 따른 지역적·상품적 특성에 밝은 현지 교포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본국 상사의 해외 주재원이나 KOTRA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지 실정에 대한 專門性이 교포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2) 現地僑胞와 母國企業間, 僑胞間의 合作投資 活用

다국적 기업은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 대처수단일 뿐만 아니라 通商摩擦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지 상황에 대

한 정보 미숙 및 검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포 무역인들을 함께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¹⁰⁾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교포를 교역의 파트너로 삼아 현지 공장설립과 기업운영을 통하여 互惠的인 經濟關係를 수립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포들을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유능한 파트너나 보조자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당 지역의 학문·과학기술·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高級人力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포들의 위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3) 僑胞 貿易人을 통한 國產品 輸出 增大方案 摸索

본국상품 애용과 수출진흥을 거주국의 실정에 맞추어 전개하는데 교포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포들의 經濟活動 지원과 육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거 무역진흥공사(KOTRA)가 침체된 수출에 획기적인 새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을 활용하는 한민족 商圈構築 작업에 나섰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대만의 華商과 선진 각국에서 막강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계 상인조직 등과 같은 성격의 상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1982년 설립된 해외교포무역인협회는 정부에서 연간

10) Justin D. Kim과의 인터뷰.

5만달러씩 지원을 받아서 상공부에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54개국 64지회 2,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¹¹⁾

그러나 협회 예산의 대부분을 회장이 부담하는 관계로 협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회장에 따라 LA에 본부를 두고 있다가 다시 東京으로 본부를 옮기고, 1990년 12월 15일 한국 무역센터내에 본부를 두게 되었으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작 KOEX의 전시계획을 알리고 貿易情報를 위한 회보나 발행하는 정도였다.

한편 1993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교포 상공인들이 통합된 무역단체를 구성,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거래에서 상호간에 최우선 특혜를 주는 등 貿易 連帶를 형성하였다.¹²⁾ 세계한

-
- 11) 협회의 사업목적은 ① 모국상품구매운동 및 해외에서 모국상품 애용운동, ② 수출촉진세미나, ③ 산업정보 및 상품정보 교류, ④ 국내업체 해외시장 개척안내 및 투자알선, ⑤ 무역정보를 위한 회보발행, ⑥ 수출진흥문제연구소 운영, ⑦ 자체 수익사업, ⑧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⑨ 기타 수출진흥에 관련된 사업등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협회를 활성화 하고자 가입회원 확대작업에 착수하고 해외교포 무역인이 운영하는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대폭 확충하여 무역공사직원처럼 한국상품 홍보와 판촉을 담당할 「명예 KOTRA」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출진흥문제연구소」를 신설하여 마케팅정보수집, 해외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국제 원자재조달,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의 교육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모국상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81. 4(설립부터)~1993. 4까지 구매계약 총금액 \$2,609,539,434 ② 1990. 10. 1~1993. 4. 30까지 구매실적: 11회, 계약금액 \$509,539,343, 상담금액 \$533,931,200. 「해외교포무역인」, 제10호(서울: 해외한국교포무역인연합회, 1991. 1), pp. 23~26.
- 12) 교포상공인 2천여명은 이를 위해 대전 EXPO기간중인 오는 9월 1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세계한인상공인대회를 열고 세계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결성한다. 「세계일보」, 1993년 7월 26일, p. 2.

인상공인 총연합회는 미주·일본·구주 등 지역별로 韓人商工人聯合會를 두어 각국의 한인 상공인들이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거나 무역 거래를 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한인 상공인들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총연합회는 또 교포상공인 간의 협력체계가 원활해질 경우 교포들의 同種企業을 연합기업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의 현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겠다.

(3) 韓民族 高速情報通信網(Information Super Highway) 建設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첨단과학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고 우리 민족의 과학발전의 前進基地로서 해외 교포 과학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족의 과학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고속 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 사업이 관계기관, 본국 학자, 해외 한국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직에서 일하는 교포들, 특히 2·3세들의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에서도 在美科學者協會가 있으나 회원들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망 형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 한국과학자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연

결하는 Network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동포 과학자들간에 학술대회 등을 통한 활발한 情報交換 通路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각국이 자신들의 정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는 안기부 요원이 해외에 나가 情報를 수집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교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민족 정보 통신망 건설을 위해 교포단체와 모국의 교육·연구기관과의 姊妹結緣 등을 통해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최근 과학계의 흐름을 알려주고, 과학에의 꿈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 산업적 적용 등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교환하는 등 情報通信 網을 건설하는데 교포과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 과학재단이나 KIST 등에서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僑胞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4) 周邊 4個國의 僑胞指導者 育成

해외 교포지도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법률, 언론, 정치를 연구·분석함은 물론 2세 법률, 언론, 정치지망생과 관계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워크숍 개최

및 본국의 민간단체들과 연계된 研修 등을 통하여 역량있는 指導者로 기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교포들은 인구수에 비해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지지세력 확보나 법률적 대응 및 政治力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주국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한편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에 한인들이 많이 진출하기 위하여 情報·人選案內, 로비활동을 통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21세기는 한민족이 세계로 진출하여 民族福利를 취할 수 있는 교포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2. 國家別 僑胞政策

가. 美 國

153만의 재미교포는 통일환경 조성에 중대한 역할을 할 潛在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체계적 지원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1) 素養教育 補完·實施

매년 3만 2천명 정도의 미국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素養教育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미국사회의 법, 제도, 인종문제, 복지제도, 교육정책 등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재미 교포사회의 懸案問題인 한·흑갈등과 2세교육 문제 등은 사전교육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기센터 마련 등 自救策 支援

최근 범죄 등으로 인한 재미교포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한 위기센터 마련 등 자구책 방안을 후원한다. 워싱턴에는 가칭 韓·美安全協會가 설립될 예정인데 이러한 단체들이 교포사회마다 연락망을 가져 사후대책 뿐 아니라 범죄 등 위기에 사전대비하여 교포들의 희생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3) 二重言語 教師와 教育行政 專門家 養成

민족교육을 위해 이중언어교사와 교육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民族教育權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제 민족교육권은 소수민족의 권리이므로 한국어와 한민족교육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현지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 少數民族教育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안과 한인회, 한인교회, 지역사회, 행정기관의 지원을 활용하여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자질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고 教育資料 및 教育媒體의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

(4) 韓人 業種의 構造改編 支援

한인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 온 단순업종에서 탈피하고 제조업 중심의 전문업종으로 전환하여 미국 主流市場에 도전해야 한다. 또한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업운영·노무관리·경영진단 등에 技術支援을 해야 한다. 아직 한인업종 구조개편 등에 대하여 교포사회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지원과 기술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상품이 저가품 시장에서는 중국, 인도 등에 밀리고 고가품 시장에서는 일본, 이태리, 유럽 제품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포 무역인을 활용하여 比較優位에 있는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기존상품의 고급화, 高價化를 추구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교포 무역인도 살고 본국의 기업인도 살아남을 수 있다. 세미나나 경영교실을 통해 한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업종과 제조업을 소개하고, 美 主流社會 기업의 경영방식을 연구해 한인들이 주류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5) 韓民族 奉仕團 結成 支援

교포 한민족 봉사단을 결성해 한창 영어bum이 불고 있는 중국이나 독립국연합 교포지역에서 여름학교(Summer Camp)

나 奉仕活動을 하도록 지원한다. 모국의 학교와 자매결연 등으로 교환 방문, 민박 등을 통하여 조국을 배우게 하고 아울러 한국 학생들이 世界市民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韓人教授들의 連繫活動 支援

미국 대학에 있는 한인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외교포나 모국인들의 미국유학, 장학금 알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락망(Network)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7) 僑胞子女에게 여름학기나 研修 機會 提供

교포 2·3세의 모국과의 실질적 유대강화를 위해, 전시용·홍보용의 단기간 방문 등의 행사를 줄이고, 이들에게 계절학기 프로그램(Summer Program)이나 관계기관·모국기업의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8) 僑胞密集地域에 韓國學 講座 支援

한국학 강좌 설치에 국내 관련단체나 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교포 2·3세의 동화를 막고 민족적 긍지를 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교포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부터 韓國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9) 技術·情報·美國政策 관련 僑胞 專門家 養成 對策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본국 기술자

의 연수나 방문기회를 알선하는 Channel을 만든다. 미국의 輸入規制와 관련된 제반 제도는 판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에 被提訴企業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교포사회에서 전문가를 양성, 확보하고 미국의 반영된 제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³⁾

나. 日 本

재일 교포사회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등 정치적 제요인으로 인하여 民團과 朝總聯으로 분열·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민족사회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북한 간의 수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북한 수교가 재일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총련계 비북한 교포의 수용 등을 포함한 기존의 僑胞政策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1) 日·北韓 修交에 대비한 僑胞政策 再調整

조총련계 교포들이 남한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동시에 민단과의 관계 재정

13) 김남두, 「미국의 무역장벽」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 141.

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民國과 朝總聯의 統合 支援

그동안 민단은 中央執權的 행정체제를 가지고 한국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재일교포의 권익 옹호, 경제활동 지원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통한 일본내 교포들의 사회적 地位向上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민단은 남한 국적의 재일교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교포나 조총련계의 교포들은 소외되어 결국 재일교포 사회를 분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민단과 조총련의 統合 努力이 일고 있으므로 양 단체가 통합하여 교포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民族差別에 대한 共同對處 支援

일본은 다른 지역보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한 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교포, 학계 전문가, 정부 차원의 共同對處가 요구된다(취학, 취직, 공무원 임용, 연금 등 차별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대처). 특히 재일교포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각층의 인사 및 모국지향적이지 않고 일본사회에 빠르게 동화되어 가는 교포 3·4세와 한국의 관계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對話窓口를 확보하여 이들을 포용하는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少數民族 教育權 確保를 위한 對策 講究

그동안 민족교육은 민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이는 일본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는 모국어는 외국어같이 생소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자진해서 民族教育을 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프로그램에 財政的 支援을 더하고 교사수를 늘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민족교육을 받아 민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민족교육권 확보를 위한 外交的 努力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일교포들이 이러한 민족교육권을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교포사회의 홍보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¹⁴⁾

(5) 僑胞社會의 團合을 촉진시키는 각종 行事나 組織構成 支援

'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과 '97 니가노 동계올림픽 공동우원을 지원함으로써 교포사회의 단합을 촉진시키고 親北韓性向의 교포를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재일교포 경제인과 기술자들의 조직을 지원하여 세계한민족 경제인과 기술자

14) 세계인권선언, 古松市 실행위원의 「고송시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서 인권계발 작문모집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내의 단체들과 한국의 단체, 교포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5), p. 70.

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국의 「한국의 소리 방송」같은 僑胞放送이 설립되어 민족교육과 재일교포의 인권 옹호 및 권익신장에 활용하여야 한다.

(6) 韓國上品 競爭力 提高를 위한 僑胞活用方案 講究

일본시장은 상품의 제품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장이기에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상품개발 등에 在日僑胞들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KOTRA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으나 제품 개성이나 디자인에는 현지 교포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며 한국 상품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교포사회의 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¹⁵⁾ 특히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사자”는 운동을 벌이며 오사카에 모국상품 상설전시 직매장을 준공한 僑胞 商工人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 中 國

在中 韓人社會 특히 연변을 비롯한 한인 집중 거주지역이 한민족공동체로서 계속 건전하게 발전·유지되어가는 것은 한민족의 生存空間이나 文化空間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재중 한인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적

15) 각 연령층의 교포를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지인 취향에 맞게 제품에 특징 및 기능을 첨가한다든지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강인수, 「일본시장에서의 한국경쟁력 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1993), pp. 87~89.

극 추진하여 재중 한인사회와 한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킬 경우, 이는 재중한인사회 경제발전 전략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남한 經濟進出의 유력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東北亞 經濟圈 형성에서 한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거주지역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개혁과 적극적 개방정책에 의해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할 경우, 이것은 북한사회 변혁에도 중대한 迂迴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중한인사회의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북방지역의 한인사회에 대한 정책도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정책에서 탈피, 한민족의 생존공간과 문화공간의 확보라는 보다 長期的인 眼目에서 결정·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중 한인사회와의 건전한 연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토 회복이나 확장 및 영향력 증대와 같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사회·기술·문화 등 非政治的 領域에서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僑胞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

(1) 延邊 自治州에 대한 長期的인 投資政策 樹立

연변 자치주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정책에서 탈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유지해 온 민족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集中的 支援을 해야 하며, 공해 산업 등 교포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기존의 對中 投資企業은 단지 업적의 제고를 위한 근시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단기 업적에 치우치다 보니 값싼 중국의 勞動力 관리에만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현지 법인의 관리에 있어 현지화 노력에 교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한 이상 우리 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지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관습에 젖은 교포들을 활용하여 競爭優位를 확보해야 하겠다.

(2) 研究機關 設立

민간경제단체를 중심으로 研究機關을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종합경제협력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금의 조성, 추진기구의 구성 등 실질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對中·對北 經濟進出을 위한 僑胞活用

동북 3성에 남·북한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여 재중 한인

의 경제적 권익 보호와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안정된 시장의 확보를 위해 現地 投資 企業들이 교포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판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교포 도·소매상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적정 규모의 유통 매장을 현지 교포들과 合作하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바 우리 상품 이미지 고양에도 중국교포들을 활용하여야 하겠다. 재중 투자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이 情報不足에 기인한 것이므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토대로 중국의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국측과의 통로 마련에 교포인력을 활용하여야 하겠다.¹⁶⁾ 특히 두만강개발사업 추진시 在中僑胞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在中韓人社會의 教育, 文化, 研究活動 後援

학술교류, 도서교환, 학자교류, 전통문화자료센터 건립, 전통문화 전승기금마련, 연변 조선족 민족박물관 확충, 교원양성 지원, 역사 문물 및 민속 문물의 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한 延邊 한인사회가 개최하는 회의나 행사를 후원하여 남·북한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교류를 증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

16) 안종석, 「韓國企業의 對中投資 實態와 向後課題」 (서울: 지역정보센터, 1993), pp. 98~112.

사의 재훈련을 지원하고 민족문고를 설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족 역사교과서 편찬사업과 이에 따른 시청각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就業 및 出入國管理에 관한 政策 補完

한국 정부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시증 발급제도」를 보완하여 재중교포들의 國內就業을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재중교포들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입국비자 발급, 체류기간 연장, 국적 회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이 中國僑胞라는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입국시나 체류 연장 등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접촉할 때, 이들이 공산주의체제라는 우리와는 다른 법체계에서 살아 온 교포임을 감안하여 보호해 주어야 하겠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실시해 문민정부하에 봉사하는 친절한 모국인의 인상을 심어 주도록 行政指導를 하여야 하겠다.

(6) 技術教育 支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설립을 지원하여 교포들에게 技術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식 기술고등학교는 설립절차가 까다로우나 산업체 병설학교는 인가가 쉬우므로 낙후된 기술교육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經濟

協力에서 기술인력 배양 및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직접 투자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¹⁷⁾

라. 獨立國家聯合

舊蘇聯 時代に 동일 국적이었던 독립국가연합 주민들은 민족간 분류에 휩쓸리고 있으며 독립된 공화국의 지배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소수민족에서 極少數民族으로 변화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연합 교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1) 僑胞들의 權益保護를 위한 對策

독립국가연합 한인교포들의 권익과 생활향상의 도모, 그리고 모국과의 紐帶強化를 위하여 중앙아시아 교포밀집 거주국에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정부는 우리 교포들의 安全保護와 權利保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 두 국가와의 경제협력증진, 인적교류증대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시설과 같은 福祉機關의 설립을 통해 현지 교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개발 모형이 자신들의 경제개발에 가장 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經濟發展에 관

17) 최의철, 「중국교포사회와의 교류 및 지원방안」, p. 45.

한 자문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경제 자문관을 파견하여 경제발전에 깊이 관여하면서 우리 교포들을 경제기획팀에 활용하여 교포사회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民族文化 維持를 위한 支援 方案

독립국가연합 한인 교포에 대한 한글 교육을 크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포들 중 한국어를 아는 교포가 5% 미만 이기에 교포들의 한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教育院을 각 지역마다 설립해야 한다. 이로써 한글교육기관의 난립을 막고, 통일된 교육과정의 개설 및 교재 편찬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있는 한글교사들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수민족 중에서도 소수민족인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民族言語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 거주지역을 민족문화공간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조선극단'과 같은 독립국가연합 한인 교포 예술단체들이 구소연방해체 후 傳統文化 再生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전통 안무가를 순회 파견하는 등 국내후원자를 물색·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유능한 교사요원 및 지역연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긴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열악한 現地事情 및 국민적 關心의 不足 등을 고려하여, 교포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와 함께 한때 미국이 제3세계 각국에 대해 행했던 이른바 「평화봉사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현지에서 민족교육에 일정기간 봉사하는 인재에게 兵役義務 惠澤과 정부 차원에서의 財政的 支援을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요망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무역진흥공사나 전경련 등의 민간기업단체들과 협조하여 거의 불모지 상태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地域研究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중앙아시아 지역연구회」와 같은 학술연구단체를 결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經濟的 進出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들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교포밀집지역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 誘導方案 마련

정부는 기업이 가능한 한 교포밀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포 사업가들과의 合作投資 등도 적극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불려화되고 있는 國際的 趨勢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사회의 안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副次的 效果를 지닌 것이다. 다민족 국가 내의 소수민족인 한인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이같은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에 의해 현지 민족의 경제력향상과 함께 한인사회의 地位向上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와 진출을 한국정부가 적극 주선·지원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現地 國家의 정책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나아가 현지에서의 한국기업들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할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업가들의 투자 우선지역 및 투자분야 선정을 政府가 적극 중개·조정하는 역할도 꾸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농장 등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던 많은 교포들이 舊蘇 聯邦 해체 후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한인교포 2·3·4세들의 교육수준 역시 높으므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人的 資源을 활용하여야 하겠다.

(4)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에의 參與에 現地僑胞 活用

러시아의 민수전환 기업의 활동과 재무 상황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포인력을 활용하고 한국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법적 자문에 협조할 수 있는 支援 體制를 지역별로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5) 自治州 設立을 위한 韓國 企業 및 團體의 進出 支援

구소 한인들의 이주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인들의 연해주 자치주 건설에 대하여 러시아인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연해주 지역에는 社會間接施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곳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獨逸人들이 자치주 건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經濟支援을 원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대처능력에 따라 자치주 건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과거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기 전 한인들과 같이 살아본 지역의 노인들은 한인들과 經濟的 分業關係(한인들은 주로 농사나 어업 등)를 유지 했었기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한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 자신들과 경쟁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단체가 진출하여 僱傭을 창출하면 별 마찰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연해주 지역의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 사회가 안정되면 한인들이 자치주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沿海州 工團 조성 등을 통한 한인 공동체의 형성을 신속히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인교포의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經濟的 地位向上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교포들이 연해주로 오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支援 組織을 구성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어 기초적인 지원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콘테이너를 지원해 간이사무실이나 숙소로 활용하자는 案이 民間團體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해주 자치주 수립문제에 대해서 정부측과 민간 연구단체의 견해가 상반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實查研究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6) 사할린 同胞 母國訪問 支援 對策

현재 추진 중인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대륙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永住歸國 허가대상도 늘려서 연로하거나 무연고인 한인교포들이 모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養老院 등의 건립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일제의 사할린 거주 한인교포의 집단학살 사건과 강제 징용과 관련된 한인교포의 대일 損害賠償 請求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인사회 내 민족문화 및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인들, 특히 2·3세대의 모국방국 기회 및 모국에서의 研修教育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제

교육진흥원에서 이들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교육기간 및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부처 또는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가지 교류 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協議 調整이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교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뚜렷한 민족의식을 지닌 역량있는 소수의 한인들이 현지 한인사회 내에서 행할 수 있는 役割과 影響力은 이들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현지에서 한국민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요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교육받은 소수 한인들이' 갖는 의미는 보다 더 클 것이다.

(7) 僑胞 專門家와의 研究 協力體制 構築

우수한 한인교포들이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학자와의 研究 協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되고 있는 기밀문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8) 現地 宣敎活動에 대한 對策 樹立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선교활동이 교포들의 종교생활

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교파간 그리고 목회자 간의 過剩 宣敎活動으로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쟁적인 기독교 선교활동으로 인해 현지 종교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더 나아가 민족간의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危險性마저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 주민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인교포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僑胞社會의 團合을 위한 對策

탈이데올로기적 한인의식을 형성시키며 민족일체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소련과의 수교로 한인 사회에도 親南韓團體가 결성되면서 기존의 친북한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한인들의 화합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10) 獨立國家聯合 僑胞에 대한 關心 增大

在 독립국가연합 한인들의 삶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행했던 民族史의 희생자로서 독립국가연합에 흩어져 이민족들 사이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해 모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족의 一體性 회복과 국제화 추세에 따른 인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족사의 유산에 대한 現場體

驗과 함께 국제화의 추세를 체감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부 뿐 아니라 언론 단체 및 각종 민족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 한인들의 삶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11) 韓人社會에 대한 民間研究團體 次元的 實態調査 實施

중앙아시아 지역 및 러시아 연방에 산재해 있는 한인 사회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문화 재건 및 民族意識 回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기획과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지 韓人社會의 지역적 분포, 인구구성 내용, 한인단체 조직과 운영, 사회문화적 인식, 민족의식 수준, 모국에 대한 기대 내용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직접 점검해 보는 것은 당면한 支援課題의 효율성 증대 및 향후의 장기적 민족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가장 긴요한 정책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多民族國家인 현지 국가들이 민족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조사는 자칫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懸案들에 대한 해결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 연

구단체가 정부와의 협조 하에 이같은 현지 한인사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中央아시아 各國과의 經濟交流 및 文化交流 活性化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간의 다양한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다같이 資源 富國이란 점에서, 또한 향후 통일한국의 대륙과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橋頭堡로서의 지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긴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카자흐스탄 간, 한·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상품 교류전, 민족문화 교류전, 스포츠 교류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相互交流를 검토해 볼 만하다.

第 V 章 結 論

현정부의 「3단계 3기조」統一政策은 남북한이 서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平和統一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交流와 協力を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 및 협력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교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 4개국의 우리 교포들이 남북한 교류와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살펴 보았다.

海外僑胞는 남북한의 높은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킬 수 있다. 주변 4개국의 교포들이 남북한을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대상도 고위 정책결정자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체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媒介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해외교포 중 미·일 교포들의 경제적 지원과 기술이전·시장개척 등은 남북한 간의 지나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民族經濟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중·독립국가연합 교포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

제로 전환할 때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국민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 統一過程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 통일 후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이민 1세대의 희생적인 教育熱로 해외교포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해 있는 실정이므로 거주국에서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독립국가연합과 일본의 韓人團體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통합만 이룬다면 남북한 통일정책에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정책에도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환태평양권에 민족적 공간을 교포들이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치열해질 地球村 時代의 기술·정보·경제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주변 4개국에 조성해 놓고 있다. 즉, 해외교포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받쳐줄 民族의 資産이다. 이러한 힘을 주변 4개국의 교포들은 정부의 도움없이 거의 자력으로 키워 왔다.

移民 혹은 강제징용 등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한 교포들 중 미국교포들을 제외한 일본·중국·독립국연합 교포들은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現地에 영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해외 교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교포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冷戰體制 하에서 분단국인 우리 정부는 교포들

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교포들(특히 일본거주 교포들)을 대남전략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積極的 攻勢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급급하여, 일본 최대의 소수민족인 재일교포들을 차별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공산권을 제외한 미국 등 기타 지역에 대한 僑胞政策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교포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反政府 勢力을 감시·통제하려는 노력에 더욱 바빴다. 따라서 교포사회는 초보적인 자력유지 단계에 놓여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儒敎思想으로 고향을 등진 사람을 차별하고 교포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부족하여, 해외 교포들은 대부분 잊혀진 존재거나 우리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교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귀소본능으로 祖國愛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포들의 태도는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海外僑胞들을 그냥 놔두어도 조국이 필요로 하면 도와주리라 생각할 정도로 교포들의 모국 사랑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 왔다. 그래서 해외 교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종합적인 僑胞政策 없이 교포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교포들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어렵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僑胞社會가 모국지향적인 1세 중심의 사회에서 2세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현지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살아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없다면, 이들이 모두 거주국의 시민으로 동화되어 힘들게 구축한 民族의 空間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갖고 부모 세대와 같은 조국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과거에는 다수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의 民族權을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민족 동질성을 이룩하려고 노력해 온 것과는 달리 지금은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적 유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民族集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외교포 수가 급증하고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僑胞政策의 轉換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포사회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자치주는 해체될 위기에 있으며, 독립국가연합의 교포들도 분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한다면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도약관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이 경제개발 등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회가 체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였기에 이를 우리 민족의 生存空間 확보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연변자치주가 해체되지 않도록 經濟的 支援을 하고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연해주자치주 설립을 확보한다면 통일 이후 우리는 황금의 Korean Belt를 이 지역에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는 종합적인 계획, 일관된 推進主體와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포 사회의 변화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동서간의 이념대립이 종식되어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으며 國際社會는 국경없는 일일생활권이 이룩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사의 새로운 추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고 한민족의 생존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백만 해외동포의 和合과 한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는 일이다. 해외교포는 우리가 가진 훌륭한 민족적 자산이기에 앞으로의 교포정책은 민족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僑胞政策은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적합하고 현재의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僑民廳같은 기구가 신설되어,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교포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교포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신명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에게 名譽市民證制度를 적용시켜 소속감을 부여해 주어야 하겠다. 이처럼 교포사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포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함께 교포사회와 본국 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특히, 교포사회의 政治力과 經濟力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되는 법과 제

도 등의 정비를 해야겠다.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포정책에는 우선 정부의 轉向的인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머지않아 투자의 몇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국과 교포사회와의 관계는 불가분이며 相互補完的이라는 것은 주변 4개국의 교포사회 분석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많은 교포들이 二重 正體性을 지니고 있고, 現地永住性이 강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이들을 무조건 우리 중심으로 조직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교민들을 거주국의 시민으로 간주하고 외면한다면, 이 또한 교포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게 되고 우리의 民族的 資産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 극단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포정책의 딜레마였다. 그러나 이제 UN을 중심으로 인권선언 등 少數民族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統治權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교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포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교포를 한민족공동체의 실질적 일원으로 인식하고 교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교포정책의 설정에서 교포들

을 居住國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점에 국한하지 말고, 한민족으로서 정체감을 갖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4개국들이 少數民族의 고유 문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동화나 다중문화 시책을 발전시켜 國際的 協力體制를 제고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외교포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본국 국민과의 일체감과 실질적인 조국애를 함양하는 길을 밝히는 것은 國力의 해외 신장은 물론 우리의 평화적 민족통일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수세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民族統一 차원에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남북한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교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僑胞政策은 분단된 조국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교포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과거의 분열·대립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團合과 自矜心을 불러일으킬 때이다.

또한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교포사회가 南北關係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교포들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교포 각자가 홍보 요원이 되어 한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투표권 행사나 정계 진출을 통해서 祖國統一에 필요한 거주국 여론 및 국제여론 조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교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의 결여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교민들이 국적있는 祖國意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연 조국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이 참된 조국애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국민은 피부로 통하는 祖國愛 심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교포들이 조국에 대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민족의 文化空間을 확보하고 21세기 민족공영을 위하여 모국과의 실질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해외 교포들의 권익옹호 및 민족복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능동적·종합적·未來指向的인 방향과 통일과 미래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교포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정책방향 하에서, 海外僑胞들이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포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다. 과거의 근시안적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國家經營에도 도움이 되는 발전적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 行 本

- 강인수. 「日本市場에서의 韓國競爭力 分析」. 서울 : 대외경제
정책연구소, 1993.
- 고성재. 「韓國移民史 研究」. 서울 : 장문각, 1973.
-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 고려사람」. 서울 : 이론과 실천, 1989.
- 교육부. 「교육백서」. 서울 : 교육부, 1993.
- 통일원. 「韓民族共同體 形成의 摸索」. 서울 : 통일원, 1990.
- 김남두. 「미국의 무역장벽」.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 김덕형. 「북한의 민족대단결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 남북
문제연구소, 1993.
- 김동화.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서울 : 느티나무, 1991.
- 김상현. 「在日韓國人」. 서울 : 한민족, 1988.
- 김승화. 「소비에트 韓人史 概觀」. 알마아타, 1965.
- 김영모 편. 「중국조선족사회연구」.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2.
- 김오동. 「在外國民 保護方案」.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88.
- 김월화. 「한국과 소련」. 서울 : 학문사, 1990.
-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 림 연 외. 「서울바람」. 서울 : 박물관, 1992.
- 문홍호.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서울 : 民族統一研
究院, 1993.

- 미쓰베이 찌모피예비치, 이준성 역.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서울 : 역사비평사, 1990.
- 민관식. 「在日韓國人」. 서울 :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
- 民族統一研究院. 「1993년도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두복. 「中國內 韓人社會에 대한 研究」.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3.
- 법무부. 「사할린교포의 현황과 법적 지위」. 서울 : 법무부, 1986.
- 손태근. 「在美韓國人」. 서울 : 한민족, 1988.
- 안중석.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와 向後課題」. 서울 :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연변당사학회 편찬. 「연변40년기사 1949-1989」. 연변 : 연변인
민출판사, 1989.
- 연변대학 조선학회. 「연변대학 제2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
회」. 연변 : 연변대학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 1992.
- 오오누마 야스아키.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 서울 : 청계연
구소, 1993.
- 외무부. 「海外同胞現況」. 서울 : 외무부, 1993.
- 유석렬. 「南北韓關係論」. 서울 : 정음사, 1987.
- 이광규 외. 「在蘇韓人」. 서울 : 집문당, 1993.
- 이종훈. 「교민정책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현안분석 제 58호」.
서울 : 국회도서관, 1993.

- 이채진. 「중국안의 조선족」. 서울 : 청계연구소, 1988.
- 전현준 외. 「北韓의 對南動向分析」. 서울 : 民族統一研究院, 1993.
- 조국사 편. 「수령님과 해외동포」. 東京 : 조국사, 1992.
- 최명 외. 「延邊韓人社會研究」. 서울 : 통일원, 1990.
- 최영희. 「한민족의 해외이주」. 서울 : 한국문제문화협회, 1984.
- 최의철. 「중국교포사회와의 교류및 지원방안」.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89.
- 최창래 · 주성화. 「연변인구통계 : 자료회편」. 연변 : 연변대학출판사, 1990.
- 평화문제연구소. 「미국동포들이 보는 조국」. 서울 : 한미교육개발원, 1992.
- 현규환. 「韓國流移民史(上)」. 서울 : 흥사단, 1975.
- 한상복 외.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Bennett, A. LeRoy. *International Organiza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1991.
- Bryce-Laporte, R. et al.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New Brunswick, N. J. : Transaction Book, 1980.
- Huh, Won Moo and Kim Kwang Chung.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Cranbury, N. J. :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4.

- Heberer, Thomas.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r Assimilation*. Armonk : An East Gate Book M. E. Sharpe Inc., 1989.
- Kuznets, Simon et al. *Economic Growth*. Durhan : Duke University Press, 1955.
- Kim, Illsoo. *New Urban Immigrant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Kim, Won Young(Warren). *Koreans in America*. Seoul : Po Chin Chai, 1971.
- Lee, Chong Sik.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1961.
- Mitchell, Richard Hanks.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Rodgen Swearingen and Langer Paul. *Red Flag in Japan : Interational Communism in Action 1919-1951*.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2.
- Yi, Yu-gan. *A Fifty-year History of the Koreans in Japan*. Tokyo : Shinkibussan Kabushikigaisha Shuppanbu, 1960.

2. 論 文

- 고현주.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조선족.”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4.
- 기일경. “교포정책 중국요녕성의 박씨촌과 박씨거민.” 「교포정책 자료」, 제43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1993. 12.
- 김광세·박양춘. “韓國朝鮮族 人口發展, 人口構成及其特徵.” 「朝鮮族 研究論總(二)」. 연길 : 연변대학민족연구소, 1989
- 김광역. “연해주 이주 움직임 현지교민 궁지에 빠드릴 수도.” 「전망」. 서울 : 대륙연구소, 1993. 6.
- 김병호. “중국 조선족 인구발전과 분포변화의 추세.” 「동아연구」. 서울 : 서강대동아연구소, 1992. 12.
- 김연수. “사할린 同胞의 移住史.” 「전망」. 서울 : 대륙연구소, 1990. 4.
- 김유근. “재일동포의 이상적인 문화운동.” 「교포정책자료」, 제42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9.
- 김호순. “해륙풍에 실린 조선족의 눈물 : 중국한인사회를 뒤흔든 방한열풍 취재기.” 「세계와 나」, 제18호. 서울 : 세계일보, 1991. 4.
- 김 환. “재일한국인 자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교포정책 자료」, 제42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9.
- 남궁달화. “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중국, 북한의 국민정신교육비교연구.” 「中共延邊韓人 自治州 教科書 分析」.

- 서울 : 국토통일원, 1984.
- 박병운. “남북화해·교류합의서 발효를 맞이하여 남북의 교류·통일은 재일동포부터.”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8.
- 박찬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 해외동포 사회를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유도 방안.”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8.
- 백경남. “조총련의 노선과 활동.” 「안보」, 서울 : 동국대학교, 1990. 6.
- 심혜숙. “중국 조선족 유입과 분포.” 「북한학보」, 제16집. 서울 : 북한연구소, 1992.
- 이광규. “재소한인탐방기.” 「교포정책자료」, 제43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12.
- 이중훈. “동북아지역의 교포현황과 정책과제.” 「東北亞 經濟圈과 韓民族」, 서울 : 경실련, 1993.
- 이창하. “북한의 교민정책과 대외선전활동.” 「새물결」, 서울 : 자유평론사, 1988. 2.
- 임용순. “해외교포의 통합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교포정책자료」, 제37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1. 6.
- 장태한. “흑·백 갈등의 표적될 수 없다.”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7.
- 정대균. “변화하는 재일교포사회.” 「日本評論」, 제4호. 서울 : 사회과학연구소, 1991. 9.

- 정상룡. “북한 통일기구 단체 및 해외친북조직.” 「통일로」, 제48호.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993. 6.
- 정태수. “러시아의 재소 한인 정책과 소련 한족의 민족문화 권.” 「교포정책자료」, 제40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2. 3.
- 劑後修. “조선족 인민들 속에서.” 「연변당사 자료통신」, 제1집. 연변 : 1987.
- 조성일. “중국대지에 뿌리내린 배달민족의 전통문화.”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7.
- _____. “중국조선족의 이중언어생활과 교육.” 「교포정책자료」, 제43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12.
- 조인제. “中國속의 韓人流移民略史.” 「교포정책자료」, 제21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4.
- 함정호. “사할린 잔류동포의 실정 - 사할린교포의 현황과 법적 지위 -.” 「법무자료」, 제73집. 서울 : 법무부, 1986.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정책 간담회.”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2.
- 허진·이브라디미르. “소련속의 한인들 비극의 재생.” 「안전보장」, 제230호. 서울 : 시사, 1990. 2.
- 현규환. “재소 한국인의 사적고찰.” 「교포정책자료」, 제13집.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2.
- 홍준수. “한인회의 역할.” 「해외동포」, 서울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93. 5.

- Houchins, Lee and Chang-su.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 1974.
- Kazuro, Hanihara.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Emmigrant to Japan."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vol. 95. no. 3. 1987.
- Kim, Bolc-Lim.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53. 1979.
- Kim, Dong-Soo. "How they fared in American homes : A fallow-up study ot adopted Korean Children." *Children Today* 6. 1977.
- Kim, Bong Hee. "The Koreans in Hawaii." *Social Science* 9. 1934.
- Tad Szule. "Inside South Korea's C.I.A." *New York Times Magaziue*. March 6, 1977.

3. 其 他

- 김, 게르만. "고난의 재생." 「레닌기치」, 1989. 4. 14.
- "중국조선족-吉林省 新屯마을." 「한국일보」, 1992. 8. 30.
- "중국조선족-2중정체성." 「한국일보」, 1992. 9. 5.
- "중국조선족-달라지는 농촌." 「한국일보」, 1992. 9. 19.
- "중국조선족-조선어 순결화." 「한국일보」, 1992. 10. 31.

- “중국조선족－한국나들이.” 「한국일보」, 1992. 12. 12.
- “중국조선족－자치의 한계.” 「한국일보」, 1993. 1. 16.
- “중국조선족－북한과의 교류.” 「한국일보」, 1993. 2. 6.
- “발굴비사, 한·러관계 1세기.” 「한국일보」, 1992. 11. 1
- “한·러 근대사비사.” 「동아일보」, 1993. 1. 20.
- 「서울신문」, 1992. 10. 16.
- 「세계일보」, 1993. 6. 15.
- 「세계일보」, 1993. 8. 12.
- 「세계일보」, 1993. 8. 24.
- 「시사저널」, 1993. 5. 27.
- “연변, 어깨펴는 조선족.” 「동아일보」, 1992. 8. 31.
- “일본의 한국인.” 「동아일보」, 1985. 12. 1.
- “중부미주편.” 「중앙일보」, 1991. 10. 5.
- 「한국일보」, 1992. 10. 10.
- 「한국일보」, 1993. 2. 6.
- 「한국일보」, 1992. 9. 19.
- LA Times, 1992. 4. 29.
- Newsweek. 1993. 5. 3.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巒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민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的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研究報告書 93-2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